

자격의 경제적 효과 (I)

김상호 박종성 김상진



기본연구	2010-33
보안등급	일반과제

자격의 경제적 효과 (I)

김상호 박종성 김상진

머 리 말

2010년 7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고용문제가 증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학벌주의사회, 학력과 인, 청년실업, 인력수급 불일치, 숙련 불일치 등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들이다. 학벌주의, 고용, 숙련 등의 문제에 있어서 자격제도의 개편·개선 등이 거론되는 것은 자격이 학력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신호·선별기능 및 숙련축적 기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적절하거나, 잘못 활용된 ‘자격’은 정보잡음, 분배적 위험, 역 선택, 그레샴의 법칙, 경제적 지대 추구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격과 관련한 역 기능의 핵심은 자격이 가지는 ‘배제 기능’이다. 이러한 배제기능은 직업규제로 작용되어 노동공급자의 경제적 지대를 보장하게하고, 부정적인 산출을 통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자격의 신설 및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격(면허)이 가지는 이러한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자격(면허)부여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막연한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많은 자격(면허)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 신설과정을 살펴보면 직무분석이나 수요조사, 그리고 자격 신설 타당성 검토 등의 기본적인 연구 및 절차 없이 새로운 자격(면허)이 신설되고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자격(면허)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정책입안이 정당화 되었으나 자격(면허)의 운영과정과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자격(면허) 신설은 궁극적으로 경쟁의 제한을 통해 노동 공급자의 집단 이익을 보호하려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비자 후생 및 노동·교육시장의 연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자격증과 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과 공공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검정·

관리주체의 다원성과 자료접근의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처 국가자격(상당수가 서비스자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상호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박종성 박사, 김상진 박사, 신정섭 위촉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가협의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많은 전문가와 자격의 경제적 효과(Ⅰ)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을 주신 연구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4

제3절 자격 연구의 관점 및 범위 · 6

1. 연구 절차 및 방법 · 12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자격관련 제 이론 · 15

1. 공적자격(주로 면허)관련 제 이론 · 16
2. 사적자격(자격증)관련 제 이론 · 22

제2절 선행연구 · 25

1. 국내 선행연구의 고찰 · 25
2. 외국 선행연구의 고찰 · 30

제3절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을 통한 시사점 · 35

제3장 자격(면허)종목의 특성 및 분석체계: 부처 국가자격

제1절 개요(자격종목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 · 41

ii 목차

제2절 법규제성과 국가자격 유형 · 43

제3절 검정체계와 자격의 경제적 효과 · 47

1. 면허 · 47
2. 자격증 · 54
3. 부처 국가자격 유형별 검정체계의 특성 비교 · 57

제4절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체계 및 시사점 · 58

제4장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주체별 분석의 시도)

제1절 자격(면허)의 효과와 직업규제 · 63

1. 개요 · 63
2. 자격(면허)과 직업규제 · 64

제2절 노동공급자 측면의 효과 · 68

제3절 노동수요자 측면의 효과 · 73

1. 자격취득자의 실질부가가치 · 73
2. 자격(면허)과 서비스 가격 · 77

제5장 자격종목별 경제적 효과(사례연구: 사회복지, 보육, 사서)

제1절 개요 · 81

제2절 국가자격 취득자조사 · 83

제3절 전문가조사 및 소비자조사 분석결과 · 104

제4절 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및 시사점 · 122

1. 자격(면허)취득자의 경제적 효과 · 122

2. 자격(면허) 수요자의 경제적 효과 · 127
3. 자격종목별 경제적 효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 · 12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131

1. 자격(면허)제도의 경제적 효과 · 131
2. 사례연구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의 경제적 효과 · 132

제2절 정책제언 · 133

SUMMARY · 137

부록 · 143

참고문헌 · 203

〈표목차〉

- <표 2-1> 국내 자격(면허)관련 주요연구 · 28
- <표 2-2> 국외 자격(면허)관련 주요연구 · 31
- <표 2-3> 수급관점별 · 기능별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 · 39

- <표 3-1> 자격의 운영주체별 현황 · 43
- <표 3-2> 법규제성에 따른 부처 국가자격의 구분 · 44
- <표 3-3> 연도별 면허 · 자격종목 신설 · 45
- <표 3-4> 전문면허 검정체계 · 49
- <표 3-5> 운전 · 운송면허 검정체계 · 51
- <표 3-6> 국가면허 검정체계 · 52
- <표 3-7> 면허성 자격증 검정체계 · 55
- <표 3-8> 국가자격증 검정체계 · 56
- <표 3-9> 부처 국가자격의 유형별 검정체계 비교 · 58
- <표 3-10>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틀(평가대상 및 체계) · 61

- <표 4-1> 주요국가의 법 · 회계 · 건축 · 엔지니어 관련 직업 규제지표 · 67
- <표 4-2> OECD 주요국가의 진입 · 영업규제 비교 · 68
- <표 4-3> 자격취득자의 소득효과 · 69
- <표 4-4> 한 · 일 · 미 직업별 종사자 및 소득 비교 · 71
- <표 4-5> 자격취득자의 실질부가가치 · 75

- <표 5-1> 부처 국가자격의 효과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 83
- <표 5-2> 자격의 경제적 효과 취득자조사 응답자 특성 · 84
- <표 5-3> 취득자격과 전공계열과의 관계 · 85

- <표 5-4> 자격별 평균 업무기간 및 평균임금 · 86
- <표 5-5> 자격·면허 취득자의 취득 동기 · 87
- <표 5-6> 취득자격과 직업(직무)내용의 관련성 · 88
- <표 5-7> 취득자격의 성격 · 89
- <표 5-8> 자격 취득에 대한 수험기간 및 취득비용 · 90
- <표 5-9>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참여여부와 교육일수 · 91
- <표 5-10> 자격취득 수험과정을 통한 직무수행력 향상 정도 · 92
- <표 5-11> 자격취득에 가장 도움이 된 학습 · 93
- <표 5-12> 자격의 고용효과와 임금효과 · 94
- <표 5-13> 취득자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95
- <표 5-14> 자격취득이 현업에 미치는 혜택(도움) · 96
- <표 5-15> 고용변화 발생 시 취득자격·면허를 활용한 이·전직 의향 · 97
- <표 5-16> 자격취득자의 노력·능력대비 대우 수혜 정도 · 98
- <표 5-17> 자격·면허 취득과정의 산업현장 직무내용 반영 정도 · 99
- <표 5-18> 취득 국가자격 및 면허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 · 100
- <표 5-19> 자격·면허 취득자의 배타적 직무수행 타당성 · 101
- <표 5-20> 현업에서 비자격(무면허)자의 유사직무 수행 정도 · 101
- <표 5-21> 자격·면허 취득자의 경제활동 비종사자의 수 · 102
- <표 5-22> 취득 자격·면허분야의 공급 인력규모 · 103
- <표 5-23> 자격의 경제적 효과 서비스 수요자·전문가조사 응답자특성 · 105
- <표 5-24> 자격·면허취득자 제공의 서비스 경험(직무교육 외 수행) · 107
- <표 5-25> 자격·면허의 전문성 인증에 대한 의견 · 108
- <표 5-26> 자격·면허의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의견 · 109
- <표 5-27> 자격·면허 취득자 서비스의 접근용이 정도 · 110
- <표 5-28> 자격·면허 직무전문성 대비 종사자의 소득 적절성 · 111
- <표 5-29> 자격·면허 취득자의 서비스가격 수준 · 112
- <표 5-30> 자격·면허 취득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 113

- <표 5-31> 서비스 수요자·전문가조사 비교분석·113
- <표 5-32> 자격취득자의 노력·능력대비 대우 수혜 정도(전문가 조사)·115
- <표 5-33> 자격·면허취득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116
- <표 5-34> 자격·면허 취득과정의 산업현장 직무내용 반영(전문가 조사)·117
- <표 5-35> 자격·면허의 직업 전문성을 고려한 취득 난이도·118
- <표 5-36> 취득 국가자격(면허)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전문가 조사)·119
- <표 5-37> 자격·면허 취득자의 배타적 직무수행 타당성(전문가조사)·120
- <표 5-38> 취득 자격·면허분야의 공급 인력규모(전문가조사)·121
- <표 5-39> 국가자격·면허 제도의 긍정적 운영 정도·122
- <표 5-40> 사회복지사·보육교사·사서 직업의 한·미·일 직무 비교·124
- <표 5-41> 사회복지사·보육교사·사서 직업의 국가 간 소득비교·125
- <표 5-42>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의 소득효과·126

- [부표 1] 한·일 부처 국가자격 비교·145
- [부표 2] 사회복지사 1급(성향점수 매칭)·146
- [부표 3] 사회복지사 2급(성향점수 매칭)·147
- [부표 4] 보육교사 1급(성향점수 매칭)·148
- [부표 5] 보육교사 2급(성향점수 매칭)·149
- [부표 6] 사서 1급·2급(성향점수 매칭)·150
- [부표 7] 분석 결과·151
- [부표 8] 부처별 국가자격 정보·153

[그림목차]

- [그림 1-1] 주체별 시기별 자격효과(효용) 분류 · 8
- [그림 1-2] 주체별 기능별 자격효과 분류 · 9
- [그림 1-3] 직업 면허와 소비자 후생손실 · 10
- [그림 1-4] 주체별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류 · 11
- [그림 1-5] 연구절차 및 방법 · 13

- [그림 2-1] 규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 19
- [그림 2-2] 직업규제가 순 질(net quality)에 미치는 영향(연구모형) · 36

- [그림 3-1] 능력과 자질에 대한 기준 증가의 효과 · 60

- [그림 4-1] 산업별 자격취득자 고용비율(규제 정도) · 66
- [그림 4-2] 자격 취득자와 비취득자의 월평균 로그임금분포 · 70
- [그림 4-3] 국가자격 취득자와 비취득자의 월평균 로그임금분포 · 70
- [그림 4-4] 법무 관련 생산자물가지수와 법조시험 합격자 추세(2005년 기준) · 78
- [그림 4-5] 회계 관련 생산자물가지수와 관련시험 합격자 추세(2005년 기준) · 78
- [그림 4-6] 소비자물가 총지수와 주요 서비스지수 추세(2005년 기준) · 79

- [그림 5-1]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I) 전문가·수요자 조사 평균분석 · 114

【요약】

I.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자격(면허)은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을 완화하고, 숙련향상과 축적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자격은 학력주의 해소 및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그리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동임 외(2007), 한국경제경영연구원(2008), 이동임 외(2009), 어수봉 외(2010)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효용성(경제적 효과)을 평가하였다.

한편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국가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2006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살펴보면, 전체취업자 가운데 취득자격과 관련한 취업자 비율은 15.2%이다. 자격유형별 구성을 보면, 부처 국가자격이 9.3%이며, 국가기술자격이 3.3%, 기타 2.7%이다). 이제까지 부처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성에 관련된 연구가 미흡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다원화된 검정주관 및 검정체제로 인하여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 하는 데 필요한 기초통계자료(합격자 수, 응시자 수 등)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자격증의 경우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비교집단(Compar-

ative group) 을 구성하기가 쉽지만, 부처 국가자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직무(업)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집단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면허는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서비스관련 자격종목이고 노동수요가 일반 국민, 즉 소비자이므로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넷째, 국가기술자격의 경우에는 등급체계, 응시자격 등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명칭, 등급체계, 응시자격 등이 다양하므로 일관된 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자격종목의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째, 자격제도라는 큰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격제도(특히, 부처 국가자격)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한 자격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실용적 측면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부처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 측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부처 국가자격의 특수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처 국가자격에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격(면허)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모델제시를 통하여 효과·효율적인 자격·면허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하위목적들을 가진다.

- ①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효과측정의 체계(틀)를 제시하고

자 한다. 효과측정의 체계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여기서 다차원적 접근이란, 다양한 관점에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② 노동수요자 측면(특히, 소비자 차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자격(면허)의 효과에 관련된 소비자 측면은 책임주체의 부재로 인한 무관심과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효과측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격(면허)의 설립 및 입법취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자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③ 취득자 측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부처별 국가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성과 가운데 성과측정이 분명한 취득자의 소득성과(earnings performance, 이하 상동)와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미시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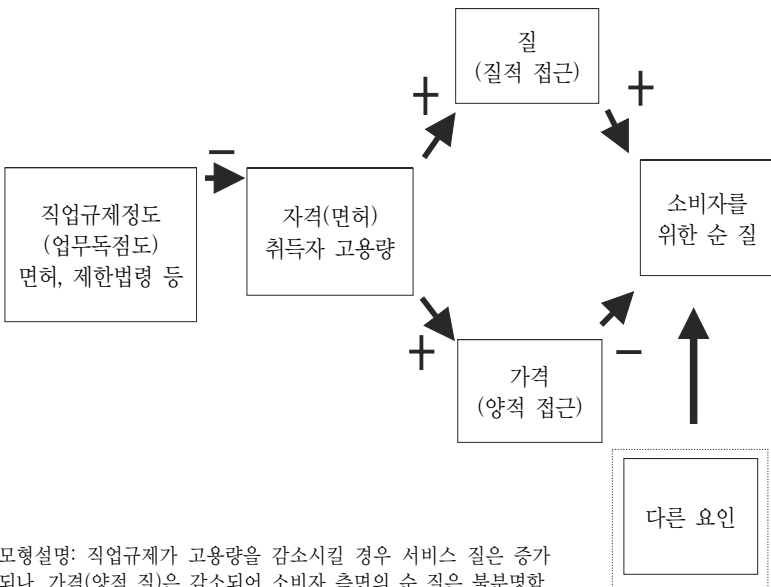
④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하여 개별 부처 국가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격(종목)의 효용성 평가를 통하여 검정체계상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모형 및 관점별 분석체계(틀)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노동공급자 측면의 소득효과·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자격종목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연구이다. 반면, 미국의 선행연구들은 노동수요자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면허가 노동공급자 간의 경쟁을 제한(restricting competition)하여 노동공급이 감소되고,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순 질(net quality to consumer)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논문과 일부 소비자 순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 또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임금 및 고용, 서비스 질과 관련한 부분적 이슈(issue)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면허가 가지는 역기능(직업규제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익이론과 공공선택이론에 기초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그림 1]의 메커니즘 속에서 궁극적 소비자 순질(net quality to consumer)이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를 추정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다. 이 연구는 아래에 제시된 분석모형(그림)에 대한 거시적 증명과 미시적 증명(사례연구)을 시도하였다.

[그림 1] 직업규제(면허제도)가 순 질(net quality)에 주는 영향 (연구모형)



모형설명: 직업규제가 고용량을 감소시킬 경우 서비스 질은 증가되나, 가격(양적 질)은 감소되어 소비자 측면의 순 질은 불분명함.

자료: Kleiner(2006: 49)의 모형상의 용어 일부 수정

앞서 제시된 이론적 접근에 따르면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는 엄격의 정도(직업 진입규제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과도하게 높은 양적 진입규제가 실시된다면 자격(면허)의 순기능은 감소하고, 부정적 결과(adverse outcome)가 증가할 것이다. 반면 자격(면허)이 적절한 양적·질적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자격이 가지는 고유 순기능인 품질인증(quality assurance)의 신호·선별기제로 활용되어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는 개별 종목마다 응시자격, 검정체계 등이 다르고 그 효과성도 다르므로, 개별 자격종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본 모델은 앞서 제시된 이론적 모형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표 1>과 같은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자격의 경제적 효과의 분석틀 : 평가대상 및 체계

구분	주체	관심 영역	지표	대상 자격종목
노동 공급자	취득자	고용 효과 소득 효과 기타 효과	순고용 효과 순임금 효과	모든 직업자격
노동 수요자	기업 (전문가)	인력수급 (양적 영역) 생산성 (질적 영역)	인력의 접근성 (법규제성 정도) 산출/투입 1인당 노동생산성	모든 직업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증 -국가면허, 전문면허 -면허성 자격
	소비자	소비자 접근성 (양적 영역) 소비자 만족도 (질적 영역)	서비스 이용 가능성 서비스가격 적절성 서비스질의 만족도	모든 직업자격** -서비스관련 자격 -전문면허, 국가면허 -면허성 자격 일부

- 주: 1. 자격취득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을 자격종목별로 측정하기는 현실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자격검정(체계)의 적절성을 대리변수로 활용해야 함. 이는 자격검정이 적절하거나 효과적일 경우 취득자는 미 취득자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함.
2. *은 제조관련 자격증(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증)에 특히 적합함. 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을 초음파비파괴검사, 부처 국가자격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등이 이에 해당함.
3. **은 서비스관련 면허(성) 자격(국가기술자격 포함)에 특히 적합함. 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증의 미용사, 이용사, 피부미용사, 부처 국가자격을 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함.

Ⅲ. 주요 결과

1. 자격(면허)제도의 경제적 효과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 유인체제(incentive system)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뿌리 깊은 학문숭상과 학벌주의가 존재하는 경우 효과적인 자격(면허)제도의 운영은 자원배분 및 활용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 즉, 근로자의 감추어진 행동을 차단하고, 학력보다 현장 중심의 능력이 중시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격(면허)제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원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전문면허의 경우 고용·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증가된 소득은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가설이 지지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전 전문면허(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노동공급량이 많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서비스 자격증이 증가하지만, 합격정원이 대폭 증가된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의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둘째, 전반적인 자격취득자의 임금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격취득자 비율증가가 경제전반의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 산업별 자격취득자 비율과 1인당 실질부가가치 창출과의 관계성은 불명확하다. 즉, 적절한 직업규제는 시장에 긍정적이거나, 과도한 직업규제는 시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추론된다. 예를 들어 면허로서 노동공급이 엄격히 제한되거나 직업규제성이 높은 운수업, 기타공공

및 개인수리업 등의 경우 높은 자격(면허)부여가 국민총생산(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과 같이 자격증이 많은 산업의 경우에는 자격취득자의 증가가 국민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사례연구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의 경제적 효과

사례연구에 선정된 사회복지사 1-3급, 보육교사 1-3급, 정사서 1-2급, 준사서는 대부분 교육과 연계된 무시험 부처 국가자격이다. 이러한 자격종목들은 경쟁을 제한하는 직업진입장벽(occupational barrier of entry)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 및 제시된 모형으로 볼 때, 노동공급자(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지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지 않을 것이며, 수요자의 양적 서비스 접근성도 좋을 것이다.

앞서 자격취득자조사, 수요자·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문사항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 자격종목의 경우 자격(면허)취득자의 고용·소득효과는 없거나 낮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선행연구 및 제시된 모형과 같이 서비스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양적 접근성의 만족도도 높았다.

둘째, 양적 접근성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서비스(질의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조사, 전문가조사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양적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질적 수준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공급을 제한할 수 없는 형태의 자격종목은 기존 자격취득자의 만족도(임금, 고용, 근로조건) 등은 감소한 반면, 소비자 만족

도는 높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그 효과가 파악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가 노동공급자(자격취득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위험한 접근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IV. 정책제언

이 연구는 자격취득자조사, 전문가조사,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1-3급, 보육교사 1-3급, 사서 1-2급, 준사서 자격종목의 경제적 효과 및 제도상의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전문가회의, 문헌검토를 통하여 자격종목개선방향을 논의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무시험검증의 경우 소비자의 양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노동공급자의 신호기능과 숙련저축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위등급의 경우 분야별 세분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자격이 가진 신호·선별기능 및 가치저장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서의 경우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 기술변화 등에 적응하기 위하여 주제별 사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검정(예: 포트폴리오 심사, 구두테스트 등)을 통하여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육교사 1급, 정사서 1급과 같은 근속에 따른 자동적 승급의 경우 단기간에 자격취득자를 공급하기가 쉽지만, 서비스 질적 질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노동공급이 보장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완장치(보수교육강화, 심사강화 등) 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서 질적 강화란, 보육의 경우 아동보호의 관점이 아닌 교육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서의 경우 기술진보에 전문·세분화된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서비스 질의 괴리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면허제도는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public interest)적 목적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을 제한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업무 독점적 직종면허(변호사, 변리사, 의사, 회계사 등)는 노동공급자의 경제적 지대를 발생 시키며, 산업발전을 위한 국민총생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격증(certification)은 품질인증(quality assurance)이라는 순기능을 통하여 국민총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면허신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신설된 면허의 경우 체계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통하여 소비자의 양적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직업규제는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규제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불과 100년 전, 반상제도로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하였으며, 지금도 인도는 카스트제도의 잔재로 신분에 따른 직업규제가 이루어진다. 잘못된 제도 하에서는 폰 노이만도 약국점원이 될 수 있으며, 장영실도 역사적 기록에서 사라질 수 있다.

지금도 우리는 잘못된 직업규제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잠재된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면허부여를 고려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과 함께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인간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면허제도는 인간을 갈등(직무영역 분쟁, 독점적 지대 추구)하게 한다. 만약 새로운 면

히 신설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면허 신설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면허신설의 경우 체계적인 인력수급 계획과 함께 소비자의 양적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처 국가자격신설 등은 보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격·면허관리위원회(신설)가 판단하여야 한다.

제1장 서론

김상호

제1절 연구배경

2010년 7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에 관련된 고용문제가 증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학벌주의 사회, 학력과잉, 청년실업, 인력수급 불일치, 숙련불일치 등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들이다. 제기된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격제도에 대한 개편·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강순희 외, 2003; 이동임, 2005; 김상호, 2010). 학벌주의, 고용, 숙련 등의 문제에 있어서 자격제도(qualification system)의 개편·개선 등이 거론되는 것은 자격이 학력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신호·선별기능, 숙련축적 기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적절하거나, 잘못 활용된 ‘자격’은 정보잡음(information noise), 분배적 위험(distributive risk), 역 선택(adverse selection),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경제적 지대 추구(rental seeking)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격과 관련한 역기능(negative function)의 핵심은 자격이 가지

는 ‘배제 기능’이다. 이러한 배제기능은 직업규제(occupational regulation)로 작용하여 노동공급자의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보장하고, 부정적인 산출(adverse outcome)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welfare)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자격의 신설 및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격(면허)이 가지는 이러한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자격(면허)부여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막연한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서 수많은 자격(면허)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 신설과정을 살펴보면, 직무분석, 수요조사, 자격 신설 타당성 검토 등의 기본적인 절차·연구조차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격(면허)이 신설·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자격(면허)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입안인이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자격(면허)의 운영과정 및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자격(면허) 신설은 궁극적으로 경쟁의 제한을 통한 노동공급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신뢰할 만한 근거와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¹⁾. 이는 자격(특히 면허)이 가지는 합리적인 제약의 정도(degree of restriction)를 측정하기 어렵고, 자격(면허) 및 면허가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자격(면허)이 가지는 다차원적인 특성(multidimensional)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측정·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격(면허)의 다차원적 경제적 효과의 측정·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자격(면허)은 자기이익(self-interest)을 위하여 신설·운영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소비자 후생 및 노동·교육시장의 연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자격증과 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대중적 국민과 공공에 많은 영향을

1) 기존의 자격효과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격취득자라는 평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모형 설정오류(specification error), 분석된 자격종목 제시 부재(비록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할지라도 분석된 자격종목을 제시해야 함.) 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미치고 있지만 검정·관리주체의 다원성과 자료접근의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처 국가자격(상당수가 서비스자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자격(면허)은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을 완화하고, 숙련향상과 축적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자격은 학력주의 해소 및 평생학습사회의 구현, 그리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동임 외(2007), 한국경제경영연구원(2008), 이동임 외(2009), 어수봉 외(2010)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효용성(경제적 효과)을 평가하였다(공급자 및 질적 질 접근).

한편,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국가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2006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취득자격과 관련한 취업자 비율은 15.2%이다. 자격유형별 구성을 보면, 부처 국가자격이 9.3%이며, 국가기술자격이 3.3%, 기타가 2.7%이다.). 이제까지 부처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성에 관련된 연구가 미흡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다원화된 검정주관 및 검정체제로 인하여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통계자료(합격자 수,

응시자 수 등)²⁾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자격증의 경우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비교집단(comparative group)을 구성하기가 쉽지만 부처 국가자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직무(업)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집단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면허는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서비스관련 자격종목이고 노동수요가 일반 국민, 즉 소비자이므로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넷째, 국가기술자격의 경우에는 등급체계, 응시자격 등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명칭, 등급체계, 응시자격 등이 다양하므로 일관된 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자격종목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자격제도라는 큰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격제도(특히, 부처 국가자격)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한 자격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실용적 측면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부처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 측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³⁾. 비록 부처 국가자격의 특수성이 매우

2)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자격연구 및 검증·운영관리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를 통하여 연구 및 정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만,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분권화된 검증·관리체계 및 시행기관의 관리소홀 및 폐쇄적 운영 등으로 인하여, 연구 및 정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3) 지금까지 부처 국가자격 종목에 대한 사례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노동공급자의 관점 또는 협소한 관점에서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자격연구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국민경제적 관점)에 따른 개별 부처국가자격의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동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별 국가자격의 효과분석에 대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처 국가자격에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자격(면허)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경제적 효과측정의 모델제시를 통하여 효과·효율적인 자격·면허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용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하위목적을 가진다.

①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효과측정의 체계(틀)를 제시하고자 한다. 효과측정의 체계는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차원적 접근이란 다양한 관점에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바라보는 것이다. 비록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자격(면허)의 모든 특성에 하나의 틀로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효과측정의 기본 골격/framework) 제시는 필요하다.

② 노동수요자 측면(특히, 소비자 차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자격(면허)의 효과에 관련된 소비자 측면은 책임 주체의 부재로 인한 무관심과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 효과측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격(면허)의 설립 및 입법취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자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③ 취득자 측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부처별 국가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성과 가운데 성과측정이 분명한 취득자의 소득성과(earnings performance, 이하 상동)와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미시적인 방법이다.

④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하여 개별 부처 국가자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격(종목)의 효용성 평가를 통하여 검정체계상의 문제 등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자격 연구의 관점 및 범위

먼저, 자격연구의 관점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격이라는 개념⁴⁾에 범주를 한정지을 필요가 있다. 자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자격은 직업위세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일’이란 전문분야로서의 직무유형(skill type)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필요한 조건’이란 그 직무유형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직무수준(skill level)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격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직무유형에 대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직무수준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지역별 시대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직무유형 및 직무수준에 대한 조건을 직무표준(skill standard)으로 정하여 자격부여(certificates)를 부여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시험(test)에 기초하여 자격증(certification) 및 면허(license)를 부여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의 자격(qualification)은 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된 직무능력표준(national skills standard)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격증과 면허(certification and license)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는 엄격히 말해서 ‘자격증과 면허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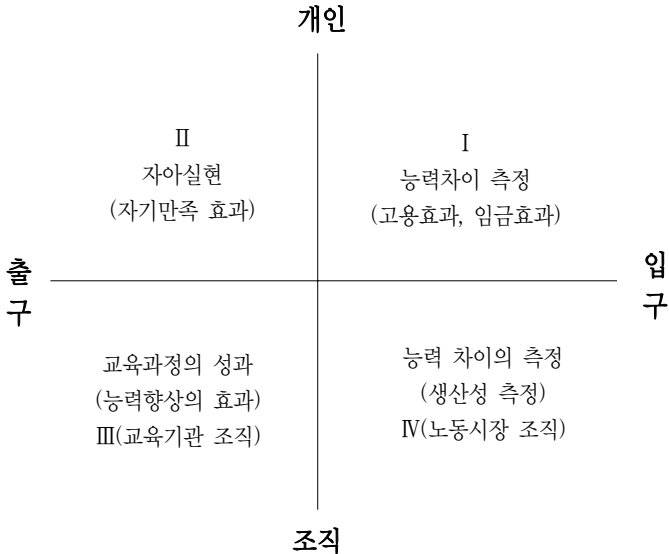
4) 자격(qualification)의 개념은 국가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CEDEFOP(2009)의 경우, 자격은 해당 직업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교육훈련의 성과(시험통과, 수료 및 졸업)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자격의 개념은 자격증(certification)과 면허(license)로서 통용되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등에서는 국가직무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에 따른 직무표준(skills standard)에 기초한 교육과 연계된 능력인정서(certificates of competence)로 간주된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격(qualification)이라는 용어는 자격증, 면허, 학위(diploma), 직무표준 등과 구분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자격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자격증과 면허의 경제적 효과는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그 효과(효용성)⁶⁾가 달라질 수 있다. 阿形 健司(2010)는 자격의 효과를 크게 개인측면 및, 기업(조직)측면으로 나누었으며, 입구로서의 자격효과와 출구로서 자격효과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입구로서의 자격효과는 능력 및 품질의 증명서로서의 자격 효과를 말한다. 반면 출구로서의 자격효과는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로서 얼마나 교육생의 능력을 신장시켰는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인정받는 단기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있어서 교육과정 안의 자격 교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자격의 주체별, 시기별 경제적 효과의 관심사안 및 효과측정의 대상을 분류하면,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출구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이므로 교육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자격의 효과는 경제 외적 효과가 다루어진다. 따라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는 입구로서의 직업자격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입구로서의 직업자격의 경제적 효과는 개인측면에서 볼 때 고용·임금효과가 주된 관심사이며, 조직측면에서 볼 때 생산성의 측정이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임금효과가 높을 경우 생산성은 높을 것인가? 이는 자격이 정확하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자격이 가진 신호기능·선별기능의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잘못된 검정체계가 활용된다면(예: 과거 측량기능사의 경우 현장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평판 등이 출제기준에 포함됨.), 자격취득자의 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자격(면허)자체가 시장에 불완전한 정보로 작용할 경우에는 마비된 손(palsied hand)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 자격(면허)의 검정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자격에 관련된 개념적 범주 및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필자는 자격에 대한 개념적 범주를 협의로 해석하고 있으나, 일부 학자의 경우 출제기준 또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구 KSS 및 NOS를 2010년 명칭 통합)가 있으므로 자격의 범주를 광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6) 효용과 효과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효용은 시작 및 과정 중심적이며, 효과는 결과 중심적이다. 따라서 효용보다는 효과가 좀 더 광의의 범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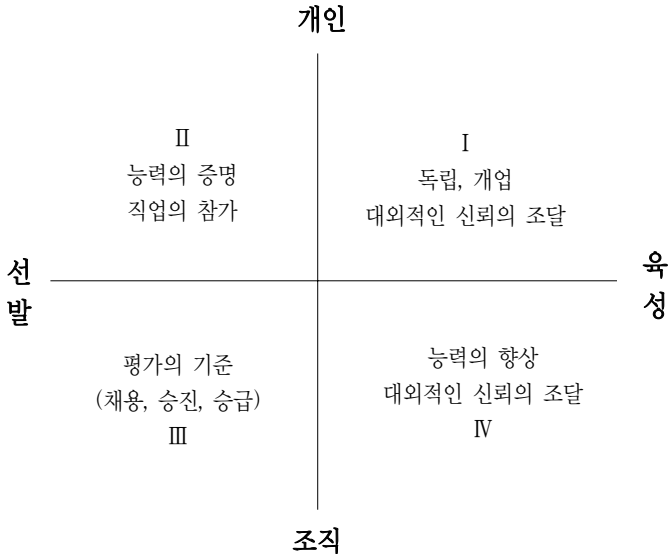
[그림 1-1] 주체별 시기별 자격효과(효용) 분류



자료: 阿形 健司(2010). 『職業資格の効用をどう捉えるか』. 日本労働研究雑誌. 特集: プロフェッショナルの労働市場 No.594: p22

阿形 健司(2010)는 일본의 자격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자격의 효과에 대한 관심 영역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부분은 II, III, IV(I의 일부 영역)의 영역이며, 이 부분을 자격의 ‘수단적 효용’으로 보았다. 수단적 효용은 자격 취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수단적 활용이 목적이다. 반면 I의 영역은 ‘표출적 효용’으로서 개인이 자격취득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출적 효용은 자격취득자체가 목적이며, 이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효용을 말한다. 이 부분의 경우 경제적 효용성을 측정하기 어렵고, 학문적인 의미도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의 초점은 수단적 효용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림 1-2] 주체별 기능별 자격효과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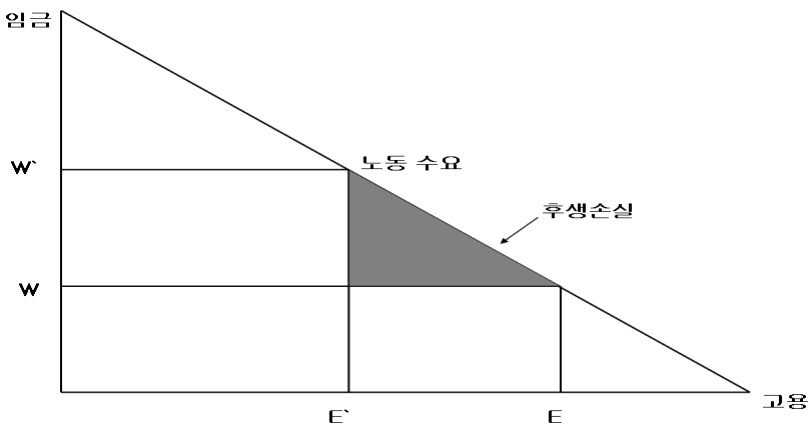


자료: 阿形 健司(2010). 『職業資格の効用をどう捉えるか』. 日本労働研究雑誌. 特集: プロフェッショナルの労働市場 No.594: p22

자격의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일본 및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행연구는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의 수월성, 자료의 접근가능성 등의 이유로 개인 및 조직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소비자라는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자격제도(특히, 면허)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소비자 관점의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 관점의 경우 제공되는 자격유형에 따라 소비자 관점의 경중이 달라진다. 국가기술 자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기업이므로, 생산성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서비스분야가 많은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므로, 소비자의 관점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동일한 국가자격이라 하더라도 자격증보다 면허의 소비자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면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즉, 서비스의 대체재가 없을 경우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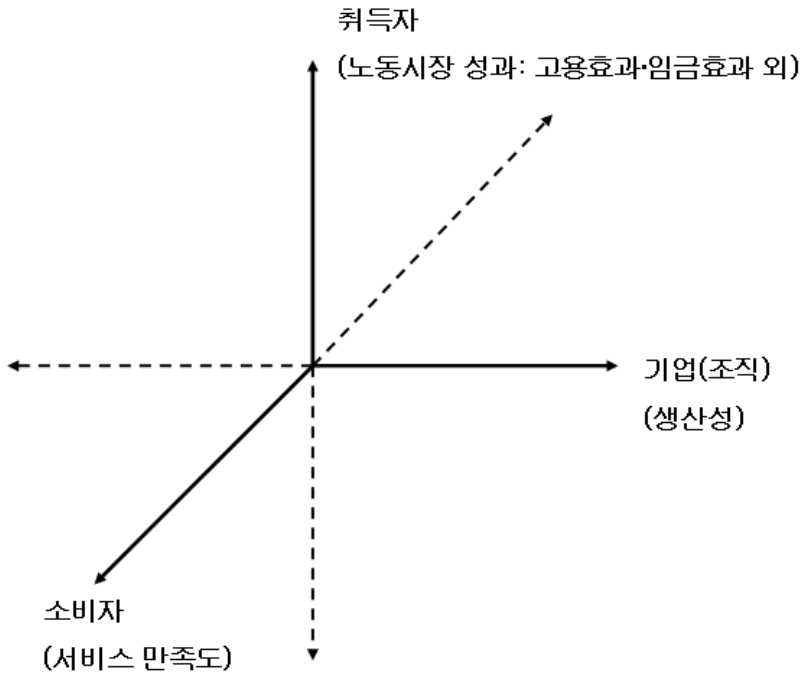
비자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고영선 외, 2009; Kleiner, 2006). 면허의 경우 노동공급의 제한으로 질적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양적 서비스 감소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감소되고, 서비스가격이 상승할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 및 후생은 감소한다. [그림 1-3]은 면허의 도입이 사회에 잠재적인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가져준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기초적인 모형이다(Blanchflower&Freeman, 1992). 즉, 면허의 경우 서비스 고용량은 감소($E \rightarrow E'$)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이 증가($W \rightarrow W'$)되면서 서비스가격이 상승한다. 서비스가격의 상승은 해당 서비스의 질 낮은 서비스로의 대체 또는 자급자족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다. 이처럼 직업규제가 실시되며, 직업종사자의 편익($W \rightarrow W'$ 사이의 사각구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소비자의 후생(음영 삼각 구간)은 감소될 수 있다. 면허도입의 전반적 효과는 직업규제에 의해 감소되며, 이는 서비스 향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나 사회전반적인 서비스 산출물과 고용량을 감소시킨다(Kleiner, 2006: 114). 따라서 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측면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3] 직업 면허와 소비자 후생손실



소비자측면의 관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면허제도에 대한 관심 부족, 자료의 접근성 제한, 연구의 어려움 등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크게 노동공급자인 취득자 측면, 노동수요자인 기업(조직) 측면, 소비자 측면의 3가지 측면에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으로 파악하였다⁷⁾.

[그림 1-4] 주체별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류



7)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경우에는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각 차원 간의 결합과정 속에서 그 효과가 서로 상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취득자의 과도한 소득 효과는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다차원 접근에 의한 연구는 각 종목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의 책임하에 질 관리 차원의 모니터링과 효과측정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연구 절차 및 방법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관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자격제도(특히, 국가자격제도)의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국가자격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편의상 자격제도의 관점을 거시적 연구라고 하고, 개별 자격 종목의 연구를 미시적 연구라고 함.). 이 연구에서는 거시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의 증명과 미시적 분석을 통한 효과성의 증명,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하고자 한다. 다만, 미시적 연구의 경우 많은 비용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논점을 가진다. 이는 면허와 자격증은 접근하는 이론도 다를 뿐만 아니라, 면허의 경제적 효과와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구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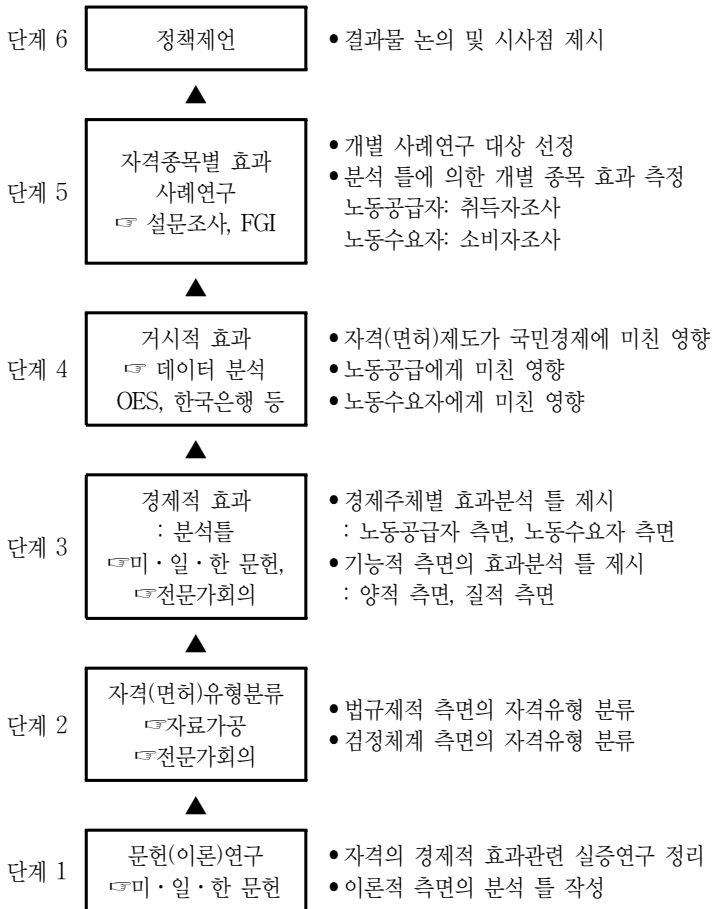
논점 1. 우리나라 면허는 직업규제로서 국민경제(노동공급자 측면, 노동수요자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논점 2. 우리나라 자격증은 능력인증의 신호·선별기제로서 국민경제(노동공급자 측면, 노동수요자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시된 두 가지의 논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거시적 분석이란, 기존의 문헌 및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격(면허)제도가 서비스 가격에 미친 영향, 또는 국민총생산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반면 미시적 분석이란, 개별 종목차원에서 자격(면허)이 자격취득자의 소득 및 고용에 미친 영향, 서비스 만족도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밖에 개별 자격검정체계의 적절성 등은 설문조사(취득자조사, 전문가조사,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단계별로 사용된 연구절차 및 방법은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연구절차 및 방법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김상호

제1절 자격관련 제 이론⁸⁾

자격관련 제 이론은 크게 대상 자격이 가지는 직업규제의 정도(면허 여부 등), 공공성 정도 등에 따라 공적자격에 적용할 이론과 사적자격에 적용할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격과 면허를 엄격히 구분할 수 없고,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은 직업규제적인 면허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면허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비록 절대적 업무독점의 면허일지라도 품질보증(quality ensuring)의 기능을 가지므로 사적자격 관련 이론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면허)관련 이론에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자격(면허)이 정치적 영역, 법제도적 영역, 조직적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Descy & Tessaring, 2004). 따라서 자격(면허)관련 제 이론을 하나의 이론으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자격관련

8) 자격관련 제 이론의 경우 일관된 또는 명쾌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또한 경제학의 하위분야로서 이론을 명확하게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김상호(2010)관련 제 이론 부분에 기대어 작성되었다. 향후 지속적 보완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은 다양한 학문영역의 이론을 살펴본 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⁹⁾.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론들을 정리한 것이다.

1. 공적자격¹⁰⁾(주로 면허)관련 제 이론

1) 공익이론¹¹⁾과 자격

공익이론은 시장실패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불완전 경쟁 등으로 인하여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불완전 경쟁, 공공재의 존재,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들 수 있다. 공익이론 관점에서는 발생한 시장실패의 문제를 각종 규제(예: 면허, 자격증, 등록 등을 통한 직업규제)를 통하여 전체 소비자의 공익(public interest)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비자 규제요구(demand for regulation)의 근본적 원인은 공공이익에 있다.

그러나 직업규제(occupational regulation)는 노동공급자 간의 불완전 경쟁을 만들어 시장실패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의 이유를 들어 직업규제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의 문제이다. 만약 직업규제가 없다면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하여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전염병에 걸린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 전염되어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

9) Kleiner(2000)는 면허관련 연구주제가 노동경제학, 법학, 그리고 산업조직의 교차지점에 놓여 있으므로 경제학의 하위 분야에 쉽게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10) 공적자격과 사적자격에 대한 구분은 입법권자의 선택이다. 흔히 공적자격의 경우 면허, 면허성 자격증이 이에 포함된다. 그 이유는 법규제성의 엄격의 정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다르기 때문이다.

11) 고영선 외(2009). “전문자격사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참고 및 정리, 그리고 인용하였다.

대인 사이에 무책임한 거래를 알선·중재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는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 관련된 문제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는 진료의 품질과 가격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과 가격을 의사에게 알릴 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공급자 유도수요(supplier-induced demand)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전에 개별 자격사의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 자격사의 평균적인 품질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품질을 예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할 의사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고품질의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여 서비스의 평균적인 품질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이 지불하려는 가격은 더욱 낮아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레몬마켓(lemon market)이 형성되고, 저질의 서비스가 홍수를 이루며(Akerlof, 1970), 이로 인해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대칭적 정보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역(逆)선택을 막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고 가격을 높은 상태에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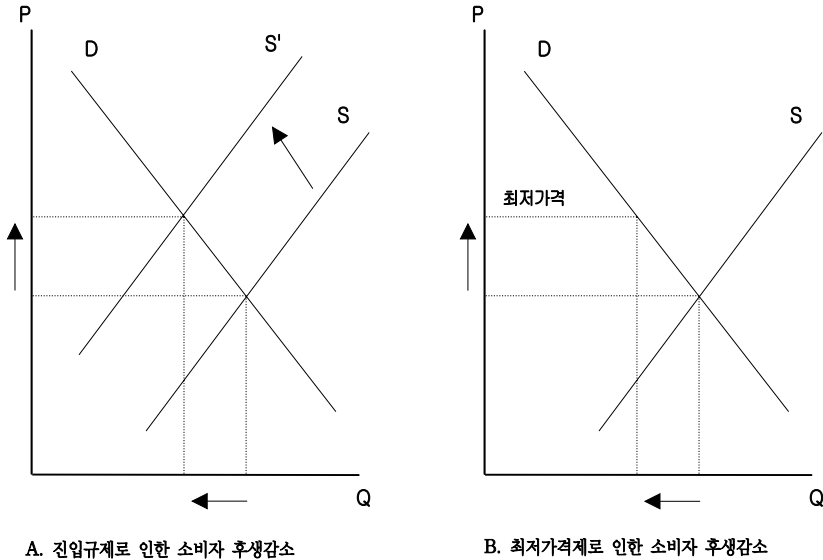
셋째, 진단(diagnostician)과 치료(treatment)의 이중적 역할이다(Cox & Foster, 1990). 전문서비스는 진단과 치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진단자의 과잉진료나 과잉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사가 작은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될 것을 고가의 장치로 교체하여도 이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진단과 치료자의 동일 수행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면허규제(licensing regulation)의 정당성은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면허를 통한 직업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면허증이 비록 전문직의 질적 향상에 목적이 있지만, 시장에서 지속적인

왜곡(예: 도덕적 해이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면허에 의한 규제가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며, 비록 서비스가격 상승의 결과로서 전문직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적 접근성이 감소되어 평균적인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Carroll & Gaston, 1981; Kleiner & Kudrle, 2000)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자격증(certification)과 같은 간접적 직업규제 시행을 통하여 면허제도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굳이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면허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2-1]과 같다. 규제가 제공하는 일차적인 효과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우선 진입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급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임으로써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높이고 공급물량을 줄이게 된다. 이는 [그림 2-1]의 A와 같이 공급곡선이 S에서 S'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더 적은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가격규제 역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림 2-1]의 B와 같이 공급자 간의 가격경쟁을 금지하는 최저가격제가 실시될 경우, 가격경쟁으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증가분이 최저가격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광고규제, 영업조직에 대한 규제 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규제에서 나타나듯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공급자들이 혁신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림 2-1] 규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A. 진입규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감소

B. 최저가격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감소

공익이론에서는 이러한 규제(예: 면허를 통한 직업규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규칙적인 소비와 무임승차(*free rider*) 문제를 제기한다. 불규칙적인 소비(예: 특정 의료서비스 등)의 경우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업규제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 제정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누군가가 대신 하기를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공익이론에서는 소비자들이 시장실패로 야기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는 최소한의 서비스 질(예를 들어 최초 의료시술 시 최소 의무교육을 통한 경험이 있는 자)을 보장받고 싶어 한다. 정책결정자는 이런 시민단체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요자는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며,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감소하게 된다.

2) 공공선택이론¹²⁾과 자격

Buchanan을 대표로 하는 공공선택¹³⁾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이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경제학의 분야로 개인주의, 경제인간, 정치적 교환을 전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득표를 극대화하려는 정치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관료, 그리고 지대를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공공선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선택이론에서 볼 때 개별 경제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의 문제에서 이익집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 이익집단(예: 직업, 지역 등)은 그 집단 구성원의 후생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이익집단은 경합을 통하여 이익 및 후생을 증대시키려 노력하는 한편 때로는 규제(예: 직업규제 등)를 통한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이윤증대는 이익집단(예: 직업협회 등)의 평균소득 증가라는 혜택을 주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가격 상승 등을 통하여 소비자잉여가 감소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소병희, 1996; 고영선 외, 2009; Kleiner, 2006). 만약 직업규제 또는 면허제도, 각종 자격취득자 우대·활용 법령 등의 규제나 특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독점권이 허용되고 부여된다면 이는 이익집단이 다른 이익집단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받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은 공공연하게 부의 이전을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예를 들어 공익적 목적이 높은 공공재(public goods)의 경우에는 면허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힘과 정보가 부족하며 개인의 노

12) 이 부분은 소병희(1996), '공공선택론의 이해와 정책분야의 응용'을 참고·정리 및 인용하였다.

13) 공공선택이란, 사회의 모든 성원이 공유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 즉 비시장적 의사결정 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시민=투표자, 정치가 및 관료 등 참가자의 선택행동의 연구를 말한다(신해용, 1994:5).

력을 통해 공공성 여부 및 면허신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따라서 특정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self-interest)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한 법을 통과시켜 정부로부터 어떤 권리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국민의 평균학력이 낮고, 정보가 폐쇄된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3) 포획이론과 자격

포획이론(capture)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기업(개별 면허사업자)들이 자기이익(self-interest)을 위하여 규제(면허부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Moore, 1981). 즉, 정부(government)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사로잡혀, 공익이 아닌 사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익집단이 로비(lobby)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진입 규제(entry barrier)를 만들어 시장의 공급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서비스 가격은 상승하고, 면허취득자들은 높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집단(예: 면허추진협회)은 규제가 공공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입법자에게 주기 위한 시도로 입법자들이 고려할 만한 재원을 지출하거나, 각종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다. 직업규제의 포획이론은 이익집단의 규제 요구가 그들 자신을 경쟁과 소득감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구하는 반응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진입제한이 고려된 규제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증가시킬 것이다. 만약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높은 서비스 가격은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의 높은 소득을 이끌 것이다. 즉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규제를 통하여 보호받으려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규제를 위하여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의 핵심은 규제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규제하는 사람들을 ‘포획’해서 이용한다는 것이다.

2. 사적자격(자격증)관련 제 이론

1) 자격과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이론은 인간을 투자에 의하여 그 경제가치 내지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본다는 것이다(Becker, 1962). 즉, 투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인적자본이 축적되면 그만큼 인간의 자본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 때문에 인적자본투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생산 또는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에 소요되는 지출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실물자본(physical capital)과 같이 인간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투자도 유사하게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그것으로부터 자본수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인적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자격증 취득의 과정 및 노력은 인적자본이 축적 또는 증가된다는 가정이다(박기성, 1997). 자격취득을 통해 증가된 인적자본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 또는 소득의 향상될 것이다.

인적자본의 투자대상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정규교육(formal education) 또는 학교교육(schooling)이다.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이 되는 인적자본투자로서 투자대상 중 가장 큰 인적자본의 형성과 투자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둘째,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OJT)이다. 현장훈련은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작업의 수행을 통하여 획득하는 기술훈련을 말한다. Mincer(1962)는 현장훈련에 의하여 축적되는 인적자본의 양은 정규교육을 통하여 형성되는 인적자본의 약 절반 정도에 이르며, 이후 투자수익률에 있어서도 현장훈련이 정규교육의 투자수익률보다 낮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이주(migration)이다. 이주는 인적자본을 축적한 개인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투입되는 비용이 인적자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넷째, 건강(health)¹⁴⁾이다. 건강하면 노동투입에 대한 시간을 일정수준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본 투자로 간주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information)이다. 노동시장의 경우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일정한 정보탐색이 필요하며 탐색비용의 지출과 기타 노동시장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이후 취업이나 이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앞의 다섯 가지 투자대상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인적자본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자격취득 과정 및 노력은 인적자본투자의 대상을 위의 다섯 가지 투자대상과 함께 비정형 학습(in-formal learning) 또는 무정형(non-formal learning)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볼 수 있다.

2) 직업탐색이론과 자격

직업탐색이론은 Stigler(1961, 1971)에 의해 비롯되어 여러 학자에 의해 연구, 발전되어 왔다. 기본원리는 구직자가 기업에 의해 제시된 임금(offering wage)이 자신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보다 높으면 그 제의를 받아들여 일을 하고, 낮을 경우에는 계속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구직자의 탐색기간이 증가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과 탐색비용(search cost)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설명하는 것이 직업탐색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역시 노동력을 고용하고자 할 때, 주어진 직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원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정보, 즉 타고난 능력, 근로의욕, 숙련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구직자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러한 채용과정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더욱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비용을

14) Grossman, Michael, The Demand for Health: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2.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직자들의 학력, 경력, 자격증, 연령, 성별 등과 같은 노동특성(labor characteristics)을 채용기준으로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격증이 고용주들의 탐색 및 채용비용을 감소시키며, 구직자 역시 탐색기간을 단축시켜 탐색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증빙수단인 자격 및 면허는 양자 간 원활한 일자리매칭(job matching)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자격증은 학력이 가진 신호에 대한 보완재적 기능을 수행한다(이상준, 2006). 반면 면허는 자격증(certification)과 비교하여 볼 때 시에 채용에 있어서 보완적 기능보다는 직업진입(채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사항이 자격증과 면허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3) 선별 및 신호이론과 자격

신호이론은 고용주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잠재적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인적자본이론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과연 교육훈련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교육훈련이 근로자들의 선천적인 생산성을 보여 주거나 또는 신호(signal)를 나타내 줄 뿐,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교육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호(signaling)하는 역할을 하고, 고용주는 이러한 신호를 채용이나 승진 시 근로자를 선별(screen)하는 기제로 이용한다는 것이 선별가설이론이다.

따라서 선별 및 신호이론의 관점에서 자격취득 역시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선별 도구의 역할만 할 것이다. 자격취득이 자신의 능력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라는 것

은 자격보유자는 미보유자와 비교하여 능력이 높으므로 자격취득 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능력의 차이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의 고찰

국내 자격(면허)관련 선행연구는 임금 및 고용관련 이슈(issue)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자격이 가지는 순기능을 인적자본이론과 신호이론에 기초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의 주요 특징은 아래의 <표 2-1>과 같다. 이들 연구 결과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⁵⁾. ① 연구결과마다 그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연구결과마다 자격 효과가 다른 것은 설정오류(specification error) 및 분석에 포함된 자격·면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¹⁶⁾. ②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인적자본이론 및 신호·선별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자격증에 대한 연구가 많다. ③ 2009년 이후 직업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자격이 가지는 배제기능, 즉 직업규제에 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각 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자격 연구는 대부분 인적자본이론과 신호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들은 주로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하거나 모든 종류의 자격증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이동임·김

15) 요약된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상호(2010: 24-26)를 참고하기 바란다.

16) 일본의 경우도 자격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연구자마다 다른 경우가 나타난다. 阿形 健司(2010)는 그 이유를 연구에 포함된 자격종목의 비중차이에서 원인을 찾았다.

덕기, 2001; 이병희, 2003; 김안국·강순희, 2004). 이동임·김덕기(2001)는 한국노동패널(1999)을 활용하여 로짓(logit) 분석 및 선택편의 모형 등을 통하여 자격의 임금효과 및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격소지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무만족도 및 이직성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자격의 임금프리미엄이 6.6~7.7% 정도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상준(2006)은 국가 기술자격 가운데 기능사 2급을 대상으로 자격증이 임금,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준실험적 방법을 통하여 5.1~15.1%의 임금효과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¹⁷⁾ 박종성·이무춘(2005)은 환경분야 자격취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효과를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임금 및 전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권혜자 외(2009)는 자격증 취득의 취업효과는 미취득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며, 상위 30위권에 속하는 대졸자가 4.0%의 취업효과를 보인 반면 비상위권 대학 졸업자는 2.4%로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안국·강순희(2004)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및 고정효과·임의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자격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격의 임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자격의 취득과정에서 얻어지는 직업능력이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병희 외(2004)는 Heckman의 2단계 추정법(two step method)과 서열프로빗(order probit)을 활용하여 자격의 임금효과와 노동이동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격의 임금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노동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¹⁸⁾ 이동임·김상호(2005)는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전기 및 기계분야 자격종목을 중심으로 비교집단분

17) 이상준(2006)은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임금효과는 4.4%인데 반하여 한 직장에서 근속함으로써 얻는 정(+)의 임금효과는 10.2%이므로 자격증 취득자의 노동이동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8) 이병희(2004)는 현장중심의 자격 또는 기업 특수적 자격증의 경우 오히려 근속기간을 늘릴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 특수적 자격이 아닐지라도 직장이동을 통한 소득상승효과보다 근속효과가 크다면 자격취득자는 직장이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석을 통한 자격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자격취득자의 동일분야 활용여부가 통제된 가운데 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고, 산업기사등급 이하는 임금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사 이상의 경우 임금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고영선 외(2009)는 우리나라는 각 분야별로 전문자격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으며,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취약하고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적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호(2009)는 국가기술자격의 우대·활용법령의 직업규제 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 법령들이 합격률과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직업규제적인 우대·활용법령들이 합격률을 낮추어 노동공급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천수(2010)는 국가자격 취득이 대학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을 높이지만, 구직탐색기간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김상호(2010a)는 성향점수 매칭을 통하여 인구·사회적 특성을 통제된 가운데 노동공급이 엄격히 제한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지대추구(rent seeking)가 발생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와 같이 노동공급이 초과된 경우 독점적 이윤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표 2-1> 국내 자격(면허)관련 주요연구

연구자	자료	대상	방법	결과
김상호 (2010)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06)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PSM 분석 및 OL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중개사와 같이 초과 노동공급이 발생된 전문면허의 경우, 직업규제로 인한 면허 취득의 소득 프리미엄은 낮음. • 노동공급이 제한되고 직무 영역의 포괄성이 높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높은 소득프리미엄이 발생됨.
박천수 (2010)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OMS, 2006)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제자격	이항로짓 분석 및 2단계추정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졸업생 가운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국가자격 보유는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나 구직활동으로부터 탈출을 늦춤. • 민간자격 보유는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구직대열에서 이탈을 촉진함. • 국제자격 보유는 취업제고에 효과가 없으나 미약한 임금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고영선 외 (2009)	OECD 규제지수, 각 부문 법률	법률, 회계·세무, 보건의료 서비스, 기타 등의 전문분야 자격(면허)	현상분석 및 법률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별 전문자격사의 수가 절대 부족함. • 일괄서비스 도입, 전문자격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증가, 자격의 사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함. • 해결책으로 사전적 규제의 대폭 완화 및 사후적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함.
김상호 (2009)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586 종목에 대한 합격률 및 응시자 수, 586종목관련 법령	국가기술자격	다중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 우대·활용법령들이 직업 규제가 되고 있음. • 자격의 초과수요는 합격률과 부(-)의 관계를 보임. • 자격 우대·활용법령의 유형 중 직 무권한부여 및 선임·임용에서 합격률과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임.
권혜자 외 (2009)	임금구조 기본통계 (OES),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OMS)	국가기술자격	OLS 분석 및 로짓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자격 소지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가자격 취득의 임금프리미엄은 감소함. • 자격중 취득의 취업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격 미취득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상위 30위권에 속하는 대졸자는 자격중 취득이 4.0%의 취업효과를 보인 반면, 비상위권 대학 졸업자는 2.4%로 나타남.

<표 계속>

연구자	자료	대상	방법	결과
정동일 (2009)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국가 기술자격종목 변천 일람표' (1974~2004)	국가기술자격	사건 사례수 분석 및 무작위 효과 음이항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부터 2004년까지 존재했던 1500여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종단적 분석 실시한 결과, 응시자에 비해 자격의 수가 많은 분야나 기존의 자격들이 응시자들을 대거 흡수하는 분야에서는 자격의 추가적인 도입이 억제됨. • 이러한 생태학적 효과는 자격의 전문성이 약한 등급에서 크게 나타남.
김현수 외 (2008)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민간자격	실태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격 국가공인 후, 취득자의 취업촉진에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임금·승진 등의 효과는 없음. • 경제 외적 효과에 있어 심리적 만족은 있으나, 직무수행능력 향상, 전문성 향상에 대한 효과는 없음.
이상준 (2006)	임금구조 기본통계	기능사 2급 자격(등급)	PSM 분석 및 OL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9.9%의 구간에서 자격의 임금효과가 존재 •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임금에서 유리한 분포를 가지고 있음. • 자격취득자가 오히려 근속기간이 길어짐. 이는 근속효과가 크기 때문임.
이동임 외 (2005)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기계·전자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	반복적 층화 매칭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자의 동일분야 취업률이 분야별로 차이가 있음. • 분야와 등급에 따라 자격의 임금 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음.
박종성 (2004)	환경산업 기업체 설문조사	환경분야 자격·면허	단순상관 분석 및 요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은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자격은 직무수행에 대한 인력의 전문성, 기업가치, 직무배치 활용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침.
이병희 (2004)	임금구조 기본 조사 한국노동패널 외	국가기술자격 중심으로	Heckman 선택 편의 교정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동패널자료의 경우 -2.5~4.1%(임금구조기본조사의 경우, 임금효과 감소추세) • 금융산업의 경우 노동이동에 음(-)의 영향
김안국 외 (2004)	한국노동패널 (1998-2000)	전체자격	R/M F/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의 임금효과는 존재하지 않음.

<표 계속>

연구자	자료	대상	방법	결과
강순희 외 (2003)	실태조사 (12,450), 한국 사업체 패널	국가 기술 자격	실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의 교육훈련과 현장에서의 직무 연계를 강화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적절한 영역 설정 •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선도 기능의 강화 등을 제시
이동임 (2001)	한국노동 패널 (1999)	전체 자격	로지트 분석 및 Heckman 선택편의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소지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무만족도 및 이직성향이 높음. • 자격의 임금효과는 6.6%-7.7%임.
서창교 외 (2000)	실태조사 (1000개 업체)	국가기술자격	실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이 낮을수록, 근속년수가 짧을수록, 그리고 직무 일치도가 높을수록 임금효과가 큼.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순으로, 건축, 환경, 통신 순으로 임금효과가 높게 나타남.

주: 1.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2. OLS(Ordinary Least Squares)

2. 외국 선행연구의 고찰

자격과 관련한 국외 실증연구(미국)의 많은 수는 직업규제로서의 면허와 관련된 연구이다. 특히, 미국의 선행연구는 직업과 면허에 대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면허의 효과를 직업규제(occupational regulation)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먼저, Angrist & Guryan(2008), Kleiner(2000), Freeman(1975), Andersona, Halcoussisa, Johnston, M.D.b & Lowenberg(2000), Carroll and Gaston(1981), Muzondo & Pazderka(1980) 등의 연구는 부정적 관점에서 면허가 종사자의 임금을 높인다고 보았다.

Friedman(1962), Benham(1975), Anderson et al.(2000), Carroll & Gaston(1981), Kwoka(1984), Shepard(1978), Kleiner & Kudrle(2000), Kleiner(2006), Summers(2007) 등의 연구는 면허를 통한 직업규제가 서비스가격을 상승시키나, 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부정적 관점을 보였다.

반면, Akerlof(1970), Holen(1978)는 인증제도가 서비스 질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역의 산출(adverse outcomes)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Shapiro(1986)는 면허가 서비스 품질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의 주요연구결과는 <표 2-2>와 같다.

阿形 健司(1998)는 남성의 경우, 자격소지가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없으나, 여성의 경우 수입을 높인다고 설명하였으며, 阿形 健司(2010)는 자격 취득이 고용 및 소득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2-2> 국외 자격(면허)관련 주요연구

연구자	자료	대상	방법	결과
西村 公子 外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생 노동성의 취업 형태의 다양화에 관한 종합조사(2008-2009년)자료 • 일본 표준 직업분류 	자격 · 면허	Web 면허 자격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과 자격을 관계 지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함. • 노동시장의 자격 효용을 검토함. • 개개의 자격에 대해 동일 기준의 취득, 효용,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阿形 健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층과 사회이동(SSM) 일본조사 데이터 (2005년) 	직업 자격	다중회귀분석 &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취득이 임금효과, 고용효과 간의 관계성이 모호. 즉,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효용은 불분명(전체자격 분석). • 일부 여성 전문직 형 자격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도출됨.
阿形 健司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층과 사회이동(SSM) 일본조사 데이터 (1995년) 	직업 자격	다중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경우 자격취득의 임금효과가 없으나, 여성의 경우 많은 계층에서 임금효과가 발생됨.
Angrist & Guryan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수요와 부족 조사 (Teacher Demand and Shortage Survey; TD- SS) • 1987-88, 1999-2000 학교, 직업 조사(Schools And Staffing Survey; SASS) 	교육, 교사	고정효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자격요구에 의해 교사의 임금이 상승함. • 하지만 질적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않음.

<표 계속>

연구자	자료	대상	방법	결과
Summers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L(미노동부)의 CareerOneStop 자료와 CareerInfoNet 자료, • 미국의 직업면허법령, • 직업면허조사(Occupational Licensing Survey) 	직업면허전체	법령분석, 현상분석 및 이론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각 주별로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을 조사함. • 주정부는 평균적으로 92개의 직종에 대해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음. • 규제는 경쟁제한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도 낳는다.
FTC Declaratory Ruling Concerning the Sale of Contact Lenses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별 법무상 집단소송자료, 스탠포드 국제 연구소(SLI) 조사자료 	안경사	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상승과 기능이 떨어지는 콘택트렌즈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판매자들에게 대해서는 새로운 수익 창출을 도와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Anderson, Halcoussis, Johnston, and Lowenberg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이사회의 1995년도 의사수입 및 면허 수입 데이터 등 • 미국통계국의 1994~1996년 소득 및 노인의료보험 데이터 등 	의사와 대체 의료사	OL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는 주(州)에서 대체 의학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높은 소득을 얻음.
Kleiner & Kudrle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각주의1960~1994년까지의 치과의료 관련 법령과 서비스의 가격 • 미국 공군 신병의 인구학적 정보와 치아 건강관련 정보 	치과 의료	토빗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규제는 서비스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규제의 강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Kleiner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미국의 인구조사 	치과 의사, 변호사 등	임금차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부여의 효과는 고임금 직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면허부여가 고임금 직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이미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임금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Richard J. & Cebula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이미지와 변호사 광고 지출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 	법	다중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광고의 증가는 법 관련 전문직에 대한 대중의 선망을 증가시킴.
Kleiner & Petree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노조, 자격법, 학생기록(1972-1982), 전미교육협회(NEA) 자료 	교사	고정효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는 교사 임금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학생 성과(시험점수)에도 불확실한 영향을 미침.

<표 계속>

연구자	자료	대상	방법	결과
Schroeter, Smith & Cox (1987)	• 1981~1982년 미국 17개 주 요도시에서 수집된 개업 변호사의 무작위 표본조사 데이터	법	2SL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광고는 공급자들의 경쟁을 가중시킨. • 전문 서비스(변호사) 시장에서 광고는 제약이 낮아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함.
Shapiro (1986)	• 가격 관련 정부 제공 자료인 전문 인적자원 투자규모 데이터	면허 직종	전문 서비스 시장의 균형분석	• 면허의 혜택으로 일부 소비자는 서비스에 대해 품질이 높다고 평가함.
John E. & Kwoka, Jr. (1984)	• 연방통상위원회(FTC, 1980)에서 검안사에 대해 조사한 시장 실험 데이터	검안사	GL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가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검안사 직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함. • 그 결과 광고를 하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은 실제로 부(-)의 효과가 나타난 반면 광고를 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제품 가격은 떨어지고 품질은 좋아진 것으로 분석됨.
Cox, DeSerpa & Candy (1982)	• 미국 애리조나주(州) 피닉스 주변 개업 변호사 설문조사 데이터(1978년 여름)	법	가설 검증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피닉스 시장의 일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간과한 일부 서비스에 높은 비용이 청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요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변호사 비용을 측정 한 결과 일반적 수준에서 요금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답이 도출됨.
Kleiner, Gay and Greene (1982)	• 1970년 인구 통계조사자료 및 개별 국가 법령에 근거한 회계사, 건축사 등의 14개 자격취득자 데이터	14개 면허 직종	연립방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관련 법의 주(州)간 이동장벽에 따른 영향으로 노동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초래함. • 전반적인 보증시스템으로 면허가 확인된 개업자들의 총 진입을 60% 이상 증가시킴.
Carroll and Gaston (1981)	• 1970년 인구 통계조사자료 (Census Data, 1970)	7개 면허 직종	3SLS 분석	• 면허를 통한 노동공급 제한이 해당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켜 면허 취득자의 소득은 증가시켰으나 해당 서비스의 순질(net quality)은 개선되지 않음.

<표 계속>

연구자	자료	대상	방법	결과
Sidney & Gaston (1981)	• 1970~1974년도의 전기기술자 수, 전기관련 사망자 수 등	전기 기술자 등	3SL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적 면허인가는 해당 면허를 가진 사람 수와 음(-)의 관계가 있음. •규제적 면허인가는 서비스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
Muzondo & Pazderka (1980)	•주(州) 면허 법 및 1971년 캐나다 인구조사 원본 샘플 데이터와 집계 표(캐나다 통계청, 1975)	건축과 20개 법안	회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광고와 요금 경쟁에 제한을 주는 것은 전문가 소득에 매우 유리함.
Pashigian (1980)	• 1970년 미국의 인구통계조사 자료	면허 직종	로짓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의 가장 명백한 효과는 면허직종 구성원의 주(州)간 이동성이 감소한다는 것임. •면허의 상호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주(州)간 이동성을 더욱 감소시킴.
Thornton (1979)	• 1969~1973년(알래스카와 하와이 제외) 48개 국가의 cross - section 데이터	이발 서비스	OL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발 면허는 개인영업자의 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Holen (1978)	•보험통계데이터 및 치과의 사협회(1966~1969)자료 등	치과 서비스	수요 공급 모형 분석 & 회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는 치료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Shepard (1978)	•각종 거시통계 자료집 및 조사자료 (1970) •주별 치과서비스 가격 총치발생물과의 관계	치과 서비스	회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를 시행하게 되면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전체 의사들의 수는 줄고 치료가격은 증가하여 그 결과 치과치료 양적 접근성이 감소하여 치아 건강이 악화됨을 실증하였음.
Benham (1975)	•미국검안협회(AOA, 1969) 회원자료 •미국 보건, 교육, 복지국 자료(1969년) •미국 건강 통계 센터 자료 (1971년) 등	검안사	OLS 분석 & GL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안서비스에 대한 강한 규제는 서비스 가격과 서비스 수요의 빈도 수에 큰 영향을 미침. •강한 규제로 서비스 가격은 10~20% 높게 책정되며, 개인의 안경 수요 비율을 현격하게 낮춤.
Freeman (1975)	• 1968~1971년 미국의 로스쿨 등록률, 법률가의 소득, 변호사의 수와 봉급 등	법률 노동 시장	축차 모형 분석 & 회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쿨의 등록률과 법학과정을 마친 학생의 수는 법률가의 임금에 영향을 미침. •젊은 법률가의 임금은 로스쿨 졸업생의 수와 음(-)의 관계를 가짐. •노동공급자의 적응적 기대로 법률노동시장은 3년에서 4년의 간격으로 변동을 겪음.

<표 계속>

연구자	자료	대상	방법	결과
Benham (1972)	• 보건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한 국립센터에 의해 제공된 데이터(PHS승인번호: S00080)	검안사	회귀분석	• 조사 결과 제품가격은 실질적으로 광고를 허용할 때 낮아지는 것으로 도출됨.
Akerlof (1970)	• 1956년 건강보험통계	자동차 시장 의료 보험	이론 분석 & 현상 분석	• 면허의 인가는 서비스 또는 상품의 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시킴.
Friedman (1962)	• 미국의 1933년 이후의 내과 의사 수의 추이 등	의료 서비스 등	현상 분석	• 면허와 서비스는 부의 관계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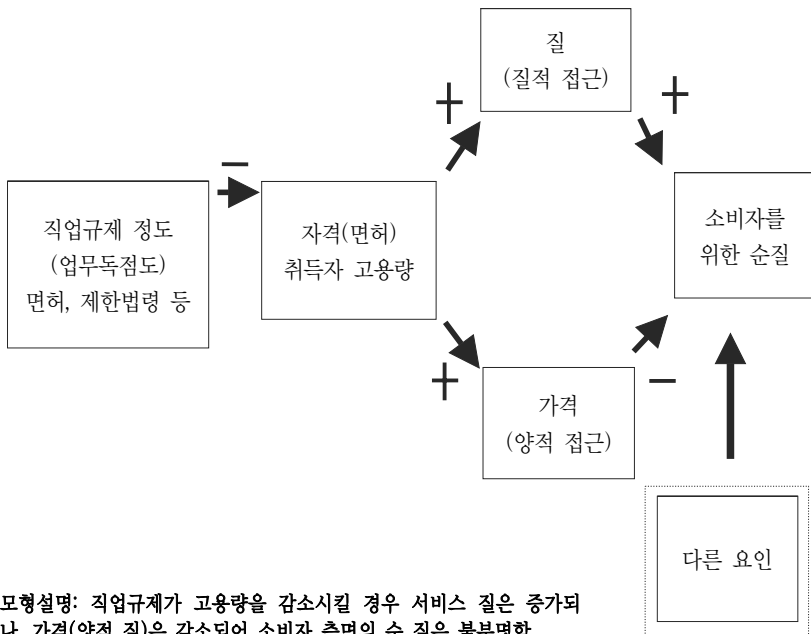
주: 1. 2SLS(Two Stage Least Squares)
2. 3SLS(Three Stage Least Squares)
3.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제3절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을 통한 시사점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노동공급자 측면의 소득효과·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자격종목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연구이다. 반면, 미국의 선행연구들은 노동수요자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 면허가 노동공급자 간의 경쟁을 제한(restricting competition)하여 노동공급이 감소되고,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순 질(net quality to consumer)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논문과 일부 소비자 순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 또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임금 및 고용, 서비스 질과 관련한 부분적 이슈(issue)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면허가 가지는 역기능(직업규제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익이론과 공공선택이론에 기초하여 실증분석하고 있

다. 이들 선행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림 2-2]와 같다. 즉, [그림 2-2]의 메커니즘 속에서 궁극적 소비자 순질(net quality to consumer)이 양(+)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를 추정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다.

[그림 2-2] 직업규제가 순 질(net quality)에 미치는 영향(연구모형)



자료: Kleiner(2006: 49)의 모형 상의 용어 일부 수정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는 자격(면허)의 효과를 크게 취득자측면, 소비자측면, 기업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들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는 자료의 한계, 다차원 복잡성 등의 문제로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간접적 또는 부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는 Kleiner(2006)가 제시한 모형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즉, 자격(면허)은 배제의 정도에 따라 신규 노동력의 진입규제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직업규제의 엄격한 정도에 따라 자격취득자(직업 고용량)의 질과 양이 결정된다. 만약, 엄격한 자격(면허)

요건을 강요할 경우, 그 해 취득자의 업무능력(competence)은 증가할 것이다. 반면 좀 더 낮은 기준의 자격(면허)요건이 부여될 경우 자격취득자의 평균 질은 감소하나 더 많은 취득자(합격자)를 만들 것이다(Holen, 1978). 따라서 자격(면허)부여의 규제 정도는 이중성을 가진다. 즉, 양적 접근성이 늘어나고, 질적 접근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질적 접근성이 개선되면 양적 접근성이 감소한다. 즉, 수요자측면(소비자, 기업)에서 볼 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서비스 가격은 증가한다. 반면 양적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자격(면허)의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한다(Kleiner, 2006). 결국 수요자측면에서 볼 때 양적 접근성과 질적 접근성의 황금비율 속에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는 양적 접근성과 질적 접근성 사이에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Kleiner, 2006; 阿形健司, 2010).¹⁹⁾

지금까지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국외 선행연구는 양적 질이 질적 질보다 우선된다는 것이다. 양적 접근성이 보장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자가 서비스, 서비스 포기 등의 부정적 결과(adverse outcome)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시된 [그림 2-2]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표 2-3>은 수급관점별(수요자, 공급자), 기능별(양적 기능, 질적 기능) 경제적 효과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자격(면허)의 연구가 가지는 다차원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data)의 작성 및 실현가능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노동공급자 측면의 연구이며, 소득효과·고용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노

19) 阿形 健司(2009)는 ‘職業資格の効用をどう捉えるか’의 최종 제언에서 품질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자격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격제도에 있어서 노동공급을 제한하는 면허제도와 노동공급의 제한성이 낮은 자격증 제도 가운데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동수요자 측면의 연구는 주로 소비자 측면에서 개별 사례연구를 진행하거나 일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생산성 간접추정이며, 면허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면허서비스의 주요 수요자는 개별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경우, 기업체 측면의 연구는 부처 국가자격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추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는 면허의 경우 입직의 필수요건이므로, 면허가 없는 근로자와 상대비교를 통한 생산성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2-3>은 노동공급자(자격취득자) 및 노동수요자(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양적·질적 접근으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 지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각종 시도 및 이론들을 각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자격취득자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수요자측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격의 질적 접근에 측정의 초점을 맞춘 나머지 양적 접근은 철저히 연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자격의 경제적 효과(I)]는 수급관점별·기능별 소비자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 틀(framework)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 평가지표를 직·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²⁰⁾

20)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하나의 틀로서 모든 자격종목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곤혹스럽고 어려운 작업이다. 후속 연구는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한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표 2-3> 수급관점별·기능별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

구분	대상	취득자	기업	소비자
양 적 접 근	측정 지표	합격률(노동공급 제한) 합격자 수/응시자 수	인력수급(구인배율) 발급 자격·면허 비교	서비스의 소비자 접근성
	솔루 션	상당수 공개자료 상당수 부처협조	자격수요조사 전문가조사(대체)	인구당 종사자 수 서비스직무의 적절성
	관련 선행 연구 예시	대부분 사례연구 • Summers(2007) • Freeman(1975) • Thornton(1979) • Pashigian(1980) • Kleiner, Gay, & Greene(1982) • Shepard(1978) • Sidney & Gaston(1981)	자격 생태적 관점의 이론 연구 • 정동일(2009)	특정 종목 사례연구. 서비스 가격 변화 연구 • Kleiner & Kudrle (2000) • Carroll & Gaston (1981) • Benham(1972, 1975) • Schroeter, Smith, & Cox(1987)
질 적 접 근	측정 지표	소득·고용효과(개인 노동 생산성의 대리지표)	기업 생산성	서비스 질의 측정
	솔루 션	Before After 일부가능 대부분 설문조사	기업체조사 전문가조사(대체)	소비자 만족도조사 물가지수 일부 활용가능 가격적정성 조사
	관련 선행 연구 예시	다양한 방법 활용, 결과는 연구자마다 다름. • 김상호(2010, 2009) • 박천수(2010) • 권혜자 외(2009) • 김현수 외(2008) • 이상준(2006) • 이동임 외(2005, 2001) • 이병희(2004) • 서창교 외(2000) • Angrist & Guryan (2008) • Kleiner(2000) • Anderson, Halcoussis, Johnston & Lowenberg (2000) • Muzondo & Pazderka (1980) • 阿形 健司(1998, 2010)	기업체 인사담당자조사를 통한 간접추정 • 박종성(2004) • 이동임 외(2007) • 이동임 외(2009)	특정 종목 사례, 간접적 추정 • Friedman(1962) • Akerlof(1970) • Holen(1978) • Shapiro(1986) • Kleiner & Kudrle (2000) • FTC Declaratory Ruling Concerning the Sale of Contact Lenses(2002) • Cox, DeSerpa & Candy(1982)

제 3 장

자격(면허)종목의 특성 및 분석체계: 부처 국가자격

박종성

제1절 개요(자격종목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

2010년 9월 기준으로 현재 개별법의 부처 국가자격은 132개,²¹⁾ 556개, 민간자격이 1,354(등록자격)개, 사업 내 자격은 85개로 파악된다(<표 3-1> 참조).²²⁾ 이는 일본의 경우 국가자격 종목 수가 206개(국가시험 자격, 2008)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국가자격(부처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부처 국가자격 가운데 자격종목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이며, 이들 두 부처는 주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 등이 자격을 검정·관리하나, 대부분의 부처 국가자격은 부처의 몇몇 전담인력이 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

21) 개별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자격종목수를 하나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1~3급을 하나의 종목으로 간주한다. 반면,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등급구분에 따라 자격종목을 구분하여 집계한다. 예를 들어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를 별개의 종목으로 구분하여, 통계 집계 및 관리에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일원화된 집계기준에 따라 자격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2) 자격의 경우 자격검정·관리가 분산되어 있으며, 매년 신설·변경·통합·폐지가 발생되므로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부처 국가자격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격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럼 분권화된 관리체계는 자격검정의 객관성을 감소시키고, 국가차원의 일원화된 체계적 관리를 저해한다.²³⁾

자격의 경제적 효과는 각 종목 및 종목별 등급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자격종목 및 등급마다 응시자격, 검정방법(실기, 필기 등), 검정과목 등의 검정체계가 다르며, 자격종목마다 법적 우대·활용법령 등의 법규 제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의 측정은 특성이 유사한 자격종목군으로 묶어 분석하거나 개별 자격종목에 대한 연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별 자격종목의 효과 측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복잡성 때문이다. 이는 자격(면허)이 가지는 다차원 측면(multidimensional)과 검정체계 및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모든 자격종목에 대하여 각 차원별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만약 측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적절하게 결합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Moore, 1981).

따라서 모든 종목에 대한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연구결과마다 그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설정오류(specification error)가 발생하게 된다. 즉, 정확한 자격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자격종목(유사 종목군)에 대한 연구로 접근해야만 자격의 순수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분석 틀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자격종목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자격종목의 검정체계상의 특성, 서비스 재화상의 특성, 법규제적 특성 등을 구분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분류상의 틀(frame)이 필요하다. 아울러 종목특성이 파악되어야 이론적 접근의 대상(자격 종목)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특성별 효과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

23) 정부는 2007년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를 위하여 검정능력이 미흡하거나, 자체적 검정을 희망하지 않는 부처 국가자격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검정을 위탁하였으나, 검정과정만을 위탁했을 뿐, 사후관리, 관리책임 등은 주관부처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 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자격의 법규제적 측면의 유형과 점정체계상의 유형을 구분한 후, 자격의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분석체계(frame of analysis)를 만들하고자하는 하나의 시도이다.²⁴⁾

<표 3-1> 자격의 운영주체별 현황

구 분	개수	관련법	관계부처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개별법상 국가자격	132	개별법령	22개 부·처·청· 위원회 (67개 기관)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등
	국가 기술자격	556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17개 부처 (7개 기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등
민간 자격	공인 민간자격	87	자격기본법 (교육과학기술부)	11개 부·처·청· 위원회 (46개 기관)	TEPS, 한자능력급수, 병원행 정사 등
	민간자격	1,354	자격기본법 (교육과학기술부)	481개 기관	결혼상담사, 병원코디네이터 등
	사업내 자격	85	고용보험법 (노동부)	노동부 (44개 사업체)	방재관리사, 배관조립사 등

제2절 법규제성과 국가자격 유형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업무독점적인 직종형 면허 또는 직무형 면허가 많으며,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자격증의 형태가 많다. 면허와 자격증은 궁극적으로 법적 규제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 및 정의

24) 자격종목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분석체계(자격종목 분류체계)를 전체 자격종목에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체계는 효과적인 모형의 통제 수단이며, 자격종목 평가의 기초 인프라이다. 만약 이러한 분류체계가 잘못된다면, 체중이 서로 다른 권투선수를 경합시키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 없다. 참고로 2009년 국가시험 자격 가이드(2008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자격은 업무독점(97개), 명칭독점(39개), 의무배치(68개)로 나타난다(자세한 비교는 [부표 1] 참조).

면허와 자격증은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다르며, 기능 및 효과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와 자격증을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정의와 기준이 없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면허는 직무수행에 대한 규제적인 엄격의 정도(degree of severity)의 차이이다(Moore, 1981). 여기서 엄격의 정도는 ‘우대·활용법령을 통한 규제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가?’하는 질적인 문제와 ‘우대·활용법령이 얼마나 많은가?’하는 양적인 문제를 포함한 양자이다.

이 절은 우리나라 개별법상의 국가자격 종목현황을 파악한 후, 김현수 외(2007)의 부록상의 우대·활용법령을 분석하여, 직업규제의 유형 및 강도에 따른 유형적 구분을 실시하였다. 김현수 외(2008)는 국가자격의 법령상 활용유형에 따라 12가지 기능으로 압축하였다. 이 연구에 더하여 박종성(2008)은 국가기술자격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격(면허)이 가지는 배타적 업무독점의 정도에 따라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3-2> 법규제성에 따른 부처 국가자격의 구분

자격 분류 코드 및 정의		개수	
면 허	전문면허(전문자격사)	업무독점이 매우 높음.	17
	운전·운송면허	업무독점이 높음.	24
	국가면허	업무독점이 다소 높음.	45
자 격	면허성자격증	업무독점이 다소 있음.	25
	국가자격증	업무독점이 거의 없음.	15
기타 자격증		6	

주: 기타 자격증: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구명정수,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 영림기술자, 수산질병관리사 등
 자료: 1. 『자격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2005-14

2.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표 3-3>은 연도별 자격·면허의 신설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과거에는 면허의 신설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자격증의 신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연도별 면허·자격종목 신설

구분	1960년대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경영 회계 사무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기술지도사** 보세사*	물류관리사** 주택관리사*	
금융 보험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환지사	공인중개사	보험중개사 감정평가사	
법률 경찰 소방 교도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보건 의료	의사 전문 의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의료관리자	치과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한약업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조산사 한약조제사	한약사 의지·보조기 기사*
사회 복지 종교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문화재수리 기술자* 문화재수리 기능자*			무대예술전문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전 운송		자동차운전면허 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조종사 운행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기관사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강사 화물차운송종사자

<표 계속>

구분	1960년대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후
운전 운송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항해사				
영업 판매 서비스					경매사 경비지도사**	유통관리사**
환경 안전 관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서비스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 지도자*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		경륜선수심판	경전선수심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건설		건축사				
기계 가공 정비		항공공장정비사 항공정비사				철도차량운전면허
화학 에너지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원자로조정	원자로조정 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		
정보 통신		무선통신사* 이마추어무선기사** 통신사				
식품 가공			주조사**			
농림 해양 수산	농산물 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주: 1. 분류 기준은 KRIVET 자격분류기준(2005) 임
 2. *는 면허성 자격증을 의미하며 **는 국가자격증을 의미함.
 3.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격분야(음식서비스, 재료, 섬유 및 의복, 전기·전자, 인쇄·목재·가구·금은 세가공)는 제외하였음.
 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평생교육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자격분야, 보건의료(안마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상담사) 자격분야, 사회복지 및 종교(보육교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분야는 일정과정 이수 및 경력에 따라 자격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5. 한약업사의 경우 1981년 자격제도가 폐지되었음,
 자료: 국가자격 실태조사(200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3절 검정체계와 자격의 경제적 효과

자격(면허)의 검정체계는 자격의 효과를 통제하는 핵심수단이다. 올바른 자격(면허)은 직무수행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직무유형(skills type)과 그 직무수준(skills level)을 검정할 수 있는 등급체계와 검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검정체계가 잘못되면 긍정적인 자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즉, 잘못된 검정 체계는 시장기능을 보완하지 못하는 마비된 손(palsied hand)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정체계와 경제적 효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실용적인 연구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별 종목마다 각기 다른 특성 및 다양한 검정체계가 존재하므로 하나의 연구 속에서 이들 모든 종목에 대한 검정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음은 자격취득 시 요구되는 사항을 개별 자격종목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는 <표 3-4>~<표 3-8>에 나타나 있으며, 표의 구성은 특정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특정학과 교육이수 여부와 각종 요구사항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요구사항에는 최저학력, 경력, 필기시험·실기시험 시행 여부, 시험 전형에 면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였으며, 실무 수습이 필요한 자격에 대하여는 표주로 표기하였다.

1. 면 허

1) 전문면허

업무에 대한 배타적 독점이 가장 큰 면허분야를 전문면허(전문자격사)라고 정의하였으며, 전문면허의 경우 공인노무사~건축사에 이르기까지 총

17개의 종류로 구성되었다. 전문면허의 경우,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의 정도가 매우 높다. 규제의 방법에는 교육과 연계된 진입규제 또는 어려운 시험 검정을 통한 진입규제, 연수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전문면허의 경우, 직업의 역사가 길다는 특징과 함께 면허취득자(licensed practitioners)의 수행 업무영역이 넓다.²⁵⁾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전문면허를 ‘직종면허’라 부르기도 한다.

전문면허의 경우 자격을 취득 하는 데 요구되는 사항은 특정학과 교육이수여부와 검정체계(최저학력, 경력, 필기·실기시험, 실무수습)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표 3-4>참조). 먼저 특정학과 교육이수와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면허는 의사(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건축사, 정교사이며 이는 대학교 이상의 특정학과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반해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보험계리인,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의 경우에는 특정학과 교육이수 및 학력과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다(상세 사항은 <표 3-4>참조).

교육연계성이 높은 면허의 경우, 사실상 졸업증서(diploma)가 면허취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자격종목들은 교육의 성과가 자격취득의 효과와 연계될 것이다.

25) 수행 업무가 포괄적이라는 것은 직업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4> 전문면허 검정체계

자격증명	특정학과 교육이수	요구사항					
		최저학력	경력	필기	실기	면제사항	교육연계성
공인노무사	×	×	×	○	면접	○	하
공인회계사	×	×	×	○	×	○	하
관세사	×	×	×	○	×	○	하
세무사	×	×	×	○	×	○	하
보험계리사*	×	×	×	○	×	○	하
감정평가사*	×	×	×	○	×	○	하
정교사	○	○	×	×	×	×	상
변리사	×	×	×	○	×	○	하
변호사*	○	○	×	○	면접	×	중
법무사	×	×	×	○	구술	○	하
의사	○	○	×	○	×	×	상
전문의	○	○	○	○	실기·구술	○	상
치과의사	○	○	×	○	×	×	상
한 의사	○	○	×	○	×	×	상
약사	○	○	×	○	×	×	상
수의사	○	○	×	○	○	×	상
건축사	○	○	×	○	○	○	중

주: 1. 변호사의 경우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의 경우 학력제한, 최저학력요건 없음.

2. *는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요하는 자격임.

자료: 1. 『자격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2005-14

2.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2) 운전·운송면허

운전·운송분야를 별도로 분류한 것은 해당 면허의 취득자 수가 많고, 면허부여의 취지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며, 직무특성으로 볼 때, 손기술과 관련한 면허이기 때문이다. 손기술과 관련한 직무의 경우, 훈련을 통한 숙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부분 최저학력에 대한 요구가 없다. 최저학력요구가 없다는 것은 면허취득자의 노동시장성고가 학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을 의미한다. 반면, 숙련형성(skills formation)은 숙달에서 발생하므로 경력요건이 많으며, 최초 진입규제가 지식(knowledge)에 기초한 필기시험보다 실기 검정(test)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직무 분야의 경우, 직업규제는 운전·운송(driving and operating)에 필요한 최소 요구경험의 강화를 통하여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므로, 국가별 표준화가 쉬운 직무이다.

운전·운송면허의 경우, 감정사에서 항공정비사에 이르기까지 총 24개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표 3-5>는 국가면허의 검정체계가 가지는 특성과 교육과의 연계성을 요약한 것이다. 먼저 특정학과 교육이수와 최저학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면허는 없다. 다만, 화물운송종사자격은 최저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기관사, 항공사, 도선사,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특정학과 교육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전·운송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특정학과 교육이수 및 학력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자격과 달리 운전·운송의 경우 대부분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자동차운전강사, 자동차운전면허, 철도차량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만이 경력과 무관하게 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운송면허에서 필기·실기 시험은 거의 전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기시험에 한해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택시운전자격, 항해사만이 실기시험을 대신해 구술고사 및 면접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은 필기·실기 검정 없이 경력만으로 자격이 인정된다.

<표 3-5> 운전·운송면허 검정체계

자격증명	특정학과 교육이수	요구사항					교육연계성
		최저학력	경력	필기	실기	면제사항	
감정사	×	×	×	○	구술	×	하
검량사	×	×	×	○	구술	×	하
검수사	×	×	×	○	구술	×	하
자동차운전강사*	×	×	×	○	○	×	하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	○	○	○	×	하
자동차운전면허	×	×	×	○	○	○	하
화물운송종사자격	×	○	○	×	×	×	하
택시운전자격	×	×	○	○	면접시험	○	하
사업용조종사	×	×	○	○	○	○	중
운송용조종사	×	×	○	○	○	○	중
자가용조종사	×	×	○	○	○	○	중
운항관리사	×	×	○	○	○	○	중
항공교통관제사	×	×	○	○	○	○	중
항공기관사	○	×	○	○	○	○	중
항공사	○	×	○	○	○	○	중
기관사	×	×	○	○	○	○	하
도선사	○	×	○	○	○	×	중
소형선박조종사	×	×	○	○	○	○	하
운항사	×	×	○	○	○	○	하
항해사	×	×	○	○	면접	○	하
철도차량운전면허1)*	○	×	×	○	○	○	중
동력수상레저기구조 정면허	×	×	×	○	○	○	하
항공공장정비사	×	×	○	○	○	○	중
항공정비사	×	×	○	○	○	○	중

주: 1. 철도차량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그리고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자/철도운영기관에 취업 후, 면허별로 150~400시간 또는 1,500~10,000km 이상 구간 운전실무수습

2. *는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요하는 자격임.

자료: 1. 『자격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2005-14

2.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3) 국가면허

국가면허는 특정한 직무에 관련된 면허를 말하다. 앞서 전문면허가 직종 면허라면 국가면허는 직무면허이다. 따라서 국가면허는 업무독점의 정도가 낮으며, 직업분화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국가면허의 경우 보험중개사에서 농산물검사원에 이르기까지 총 45개로 구성된다. 구성된 면허의 직종을 살펴보면 크게 보건의료분야, 교육훈련분야, 위험물관리분야 등이 많다.

<표 3-6>은 국가면허의 검정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교육과의 연계성을 요약한 것이다. 포함된 면허의 대부분은 학력에 관련된 요건이다. 따라서 국가면허의 노동시장성과는 교육과의 연계성이 높다. 국가면허는 전문면허와 비교했을 때 수행하는 직무능력(job competence)의 자율성(autonomy), 복잡도(complexity), 영향력(influence)이 낮으며, 직무영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따라서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대학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이러한 검정체계의 특성은 직업진입규제를 낮추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가면허의 경우 전문면허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가 크지 않다.

<표 3-6> 국가면허 검정체계

자격증명	특정학과 교육이수	요구사항					교육연계성
		최저학력	경력	필기	실기	면제사항	
보험중개사	×	×	×	○	×	×	하
손해사정사*	×	×	×	○	×	○	하
공인중개사*	×	×	×	○	×	×	하
환지사	×	×	×	○	○	○	하
준교사	○	○	×	○	구술	○	상
보건교사	○	○	×	×	×	×	상
사서교사	○	○	×	×	×	×	상

<표 계속>

자격증명	특정학과 교육이수	요구사항					교육연계성
		최저학력	경력	필기	실기	면제사항	
실기교사	○	○	×	○	×	○	상
전문상담교사	○	○	×	×	×	×	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	○	×	×	×	중
보건교육사	○	○	○	×	×	×	상
영양교사	○	○	○	×	×	×	상
한약사	○	○	×	○	×	×	상
한약업사	×	○	○	○	○	×	하
한약조제사	○	○	×	○	○	×	상
간호사	○	○	×	○	×	×	상
간호조무사	○	○	○	○	○	×	중
물리치료사	○	○	×	○	○	×	상
방사선사	○	○	×	○	○	×	상
응급구조사	○	○	×	○	○	×	중
임상병리사	○	○	×	○	○	×	상
작업치료사	○	○	×	○	○	×	상
치과기공사	○	○	×	○	○	×	상
치과위생사	○	○	×	○	○	×	상
안경사	○	○	×	○	○	○	상
안마사*	○	○	○	×	×	×	중
영양사	○	○	×	○	×	×	상
의료관리자	×	×	×	○	○	○	하
조산사	○	○	○	○	×	×	상
보육교사	○	○	×	×	×	×	중
경매사	×	×	×	○	○	×	하
산업안전지도사	×	×	×	○	면접	○	하
산업위생지도사	×	×	×	○	면접	○	하
경륜선수·심판**	-	-	-	-	-	-	-
경정선수·심판**	-	-	-	-	-	-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1)*	×	○	○	○	×	○	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1)*	×	○	○	○	×	○	중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1)*	×	○	○	○	×	○	상

<표 계속>

자격증명	특정학과 교육이수	요구사항					교육연계성
		최저학력	경력	필기	실기	면제사항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1)	×	○	○	○	○	○	상
원자로조종사면허1)	×	○	○	○	○	○	중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1)	×	○	○	○	×	○	상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1)	×	○	○	○	×	×	중
통신사	×	×	○	×	면접	○	하
농산물품질관리사	×	×	×	○	○	×	하
농산물검사원	×	×	○	○	○	×	하

주: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이공계학과 졸업자

2. *는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요하는 자격임.

3. **는 공개된 정보에 접근하여 검정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처리하였음.

자료: 1. 『자격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2005-14

2.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2. 자격증

1) 면허성 자격증

면허성 자격증이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무의 독점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입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유사직 무수행이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면허성 자격증이 신설되며, 주로 의무배치를 규정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면허성 자격증은 보세사에서 가축인공수정사에 이르기까지 총 25개로 구성된다. <표 3-7>은 면허성 자격증의 검정체계상의 요구요건 및 교육연계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면허성 자격증의 경우 특정학과 또는 학점을 이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면허성 자격증 또한 보건의료, 교육 등의 직무분야에서 많이 발견된다. 면허성 자격증의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규제가 높지 않으며, 해당 직무종사자들의 경제적 지대가 높지 않다.

<표 3-7> 면허성 자격증 검정체계

자격증명	특정학과 교육이수	요구사항					
		최저학력	경력	필기	실기	면제사항	교육연계성
보세사1)	○	×	○	○	×	×	중
주택관리사2)	×	×	○	○	×	○	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	○	×	○	중
평생교육사	○	○	○	×	×	×	중
정신보건간호사*	○	○	○	×	×	×	상
의지·보조기기사	○	○	×	○	○	×	중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	○	×	×	×	상
위생사	○	○	○	○	○	×	상
의무기록사	○	○	×	○	○	×	상
사회복지사	○	○	×	△	×	×	상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	○	×	×	×	상
청소년상담사*	○	○	○	○	면접	×	상
청소년지도사	○	○	○	○	면접	×	상
무대예술전문인	○	○	○	○	○	○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	×	×	○	면접	○	하
문화재수리기능자	×	×	×	○	○	×	하
사서	○	○	○	×	×	×	상
소방시설관리사	×	×	○	○	×	○	하
소방안전교육사	○	○	×	○	×	×	상
교통안전관리자	×	×	×	○	면접	○	하
경기지도자*	×	○	○	○	○	○	중
생활체육지도자	○	×	×	○	×	○	중
산림토목기술자	×	○	○	×	×	×	중
무선통신사	×	×	×	○	○	○	하
가축인공수정사	○	×	×	○	○	○	중

주: 1. 보세사: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나 대한주택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7년 이상 경과한 사람

3. *는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요하는 자격임.

자료: 1. 『자격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2005-14

2.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2) 국가자격증

국가자격증은 배타적 독점력이 거의 없으며, 공공성 또한 낮은 직무분야이다. 따라서 시장기능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는 자격종목이다.

국가자격증의 경우 경영지도사에서 주조사에 이르기까지 총 15개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자격증의 경우 자격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특정학과 교육이수 여부와 각종 검정체계상의 요구사항들을 요약·정리하였다.

국가자격증의 경우 대부분 최종학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교육과의 연계성도 낮다. 대부분 필기시험에 의해 검정이 이루어지므로 기능적 측면도 낮다. 따라서 이 종목군의 자격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는 법규성에 따른 효과라기보다 시장기능에 의해 나타난 효과일 것이다.

<표 3-8> 국가자격증 검정체계

자격증명	특정학과 교육이수	요구사항					교육연계성
		최저학력	경력	필기	실기	면제사항	
경영지도사	×	×	×	○	×	○	하
기술지도사	×	×	×	○	×	○	하
행정사	×	×	×	○	×	○	하
물류관리사	×	×	×	○	×	○	하
한국어교원1)	○	○	×	×	×	×	상
박물관·미술관학예사	○	○	○	○	×	×	상
유통관리사	×	×	×	○	면접	×	하
경비지도사*	×	×	×	○	×	○	하
국내여행안내사	×	×	×	○	면접	○	하
관광통역안내사	×	×	×	○	면접	○	하
호텔경영사	×	×	○	○	면접	○	하
호텔관리사	×	○	×	○	면접	○	중
호텔서비스사	×	×	×	○	면접	○	하
아마추어무선기사	×	×	×	○	○	○	하
주조사	×	×	×	○	×	○	하

주: 1.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는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요하는 자격임.

자료: 1. 『자격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료 2005-14

2.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3) 기타 자격증

마지막으로 기타 자격증(부정기 시행)은 사실상 부처 국가자격으로 검정·유지의 필요성이 낮은 자격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으로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구명정수,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 영림기술자, 수산질병관리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자격시험 전형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무시험 전형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즉, 가맹사업거래상담사와 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 시험전형이 1년에 한번 시행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필기시험과 일정시간의 실무수습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산질병관리사의 경우에는 특정학과 교육이수 및 최저학력이 요구되며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수준이 있는 사람에 한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밖에 구명정수와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도 특정학과 교육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부정기 시행 국가자격의 경우 경력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3. 부처 국가자격 유형별 검정체계의 특성 비교

부처 국가자격의 검정체계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가면허 및 면허성 자격증의 경우 교육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의 연계성이 높은 경우, 높은 직접적 진입비용(학자금 등)이 발생되며, 수행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교육훈련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자격(면허)의 노동시장공급과 노동시장수요 간의 시간차(time lag)가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인력수급의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의 연계성이 높은 자격종목의 경우 교육의 성과와 노동시장성과 간의 관련성이 높으며, 인력수급 계획이 중요하다.

반면 전문면허의 경우 교육과의 연계성은 높지 않으나, 필기시험 등의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의 연계성이 낮은 전문면허의 경우 주로 업

격한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통하여 선발된다. 선발 시 총량적 규제가 없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달리 전문면허의 대부분은 선발단계에서 정원을 정한다. 따라서 전문면허의 인력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정해지기보다 수급계획에 의하여 정해진다.

<표 3-9> 부처 국가자격의 유형별 검정체계 비교

(단위: %)

자격증	교육 연계성			요구사항					
	상	중	하	최저 학력	경력	필기	실기	실무 수습	면제 사항
전문면허	41.2	11.8	47.1	52.9	5.9	94.1	35.3	17.6	58.8
운전·운송면허	0.0	45.8	54.2	4.2	70.8	95.8	95.8	12.5	70.8
국가면허	53.5	18.6	27.9	55.8	37.2	79.1	51.2	14.0	34.9
면허성자격증	40.0	36.0	24.0	64.0	60.0	76.0	48.0	20.0	40.0
국가자격증	13.3	6.7	80.0	20.0	13.3	93.3	46.7	20.0	80.0
기타자격증	20.0	40.0	40.0	20.0	60.0	40.0	0.0	20.0	0.0

- 주: 1. 교육 연계성 “상”: 자격 취득요건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소유자인 경우
 2. 교육 연계성 “중”: 자격 취득요건이 관련부처 장관 지정의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일정기간의 경력을 소유한 사람 등
 3. 교육 연계성 “하”: 자격 취득요건이 만〇세 이상인 사람으로 학력 제한이 없는 경우

제4절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체계 및 시사점

앞서 제1장에서는 노동공급자와 노동수요자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동수요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가지는 직업·산업적 특성에 따라 기업(조직)측면과 소비자측면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국가 기술자격과 같이 다기능·기술과 관련한 자격증의 경우 수요의 핵심주체는 기업이지만, 면허의 경우 개인 서비스가 많으며, 직종·업종 특성상 자

영업자 또는 고용주가 많다. 그리고 서비스가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국민이 최종소비자가 된다. 따라서 면허의 경우 노동수요는 소비자 측면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체계는 아래 <표 3-1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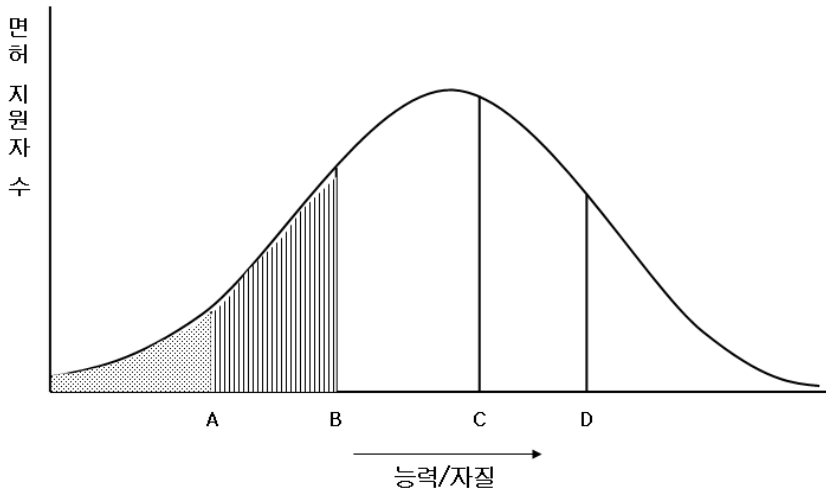
Holen(1978)은 엄격한 자격(면허)부여가 직무수행자의 직업능력(competence)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잠재적 질을 반영한 지원자의 역량에 대한 가설적인 분포는 [그림 3-1]과 같다. 가령 B점은 A점보다 더 높은 역량 수준(level of competence)을 나타낸다. 직업진입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B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게 되면, A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보다 부정적 산출(adverse outcome)이 더 적게 될 수 있다. A점까지 능력을 요구한 경우의 어두운 영역은 면허시험(제도) 실패를 의미한다. B점까지의 능력을 요구한 경우, 빗금친 사선의 영역은 추가된 실패영역이 된다. 만약 부정적인 결과가 더욱 엄격한 면허제도로 감소한다면 종사인원 제한은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되므로, 소비자 이익이 발생된다. 만약 엄격한 면허부여(tougher licensure)가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득은 발생되지 않는다.

반면, Kleiner(2006)는 양적 서비스 접근의 제한이 앞서 제시한 Holen(1978)의 주장처럼 질적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 제한된 양적 서비스로 인하여 서비스 가격이 증가할 경우, 질 낮은 서비스로의 대체되거나 자가 서비스 등이 발생되어 부정적인 결과가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직 종사자의 질과 관련한 항목 제한의 증가 영향과 관련된 내용은 [그림 3-1]과 같다. 합격률이 감소하거나 교육적인 요구사항이 늘어나면, 해당 직업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평균 질은 증가한다. 요구사항의 증가는 A 수준에서 B 수준까지 최소한의 역량을 증가시킨다. 면허 취득의 결과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평균 질은 C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A

와 D, 그리고 B도 이러한 종 모양의 곡선을 따라 이동한다. 추정된 질의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의 이용은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소비자들 간에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Holen(1978)과 같다.

하지만, 더 높은 서비스 가격은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줄어드는 만큼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줄어들게 한다. 그 결과, 해당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면허 취득 비용보다 서비스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엄격한 면허제도의 실시가 더 높은 소비자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림 3-1] 능력과 자질에 대한 기준 증가의 효과



출처: Holen(1978)

앞서 제시된 이론적 접근에 따르면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는 엄격의 정도(직업 진입규제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과도하게 높은 양적 진입규제가 실시된다면 자격(면허)의 순기능은 감소하고, 부정적 결과(adverse outcome)가 증가할 것이다. 반면 자격(면허)이 적

절한 양적·질적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자격이 가지는 고유 순기능인 품질 인증(quality assurance)의 신호·선별기제로 활용되어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는 개별 종목마다 응시자격, 검정체계 등이 다르고, 그 효과성도 다르므로, 개별 자격종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본 모델은 앞서 제시된 이론적 모형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표 3-10>와 같은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10>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틀(평가대상 및 체계)

구분	주체	관심 영역	지표	대상 자격종목
노동공급	취득자	고용 효과 소득 효과 기타 효과	순고용 효과 순임금 효과	모든 직업자격
노동수요자	기업 (전문가)	인력수급 (양적 영역) 생산성 (질적 영역)	인력의 접근성 (법규제성 정도) 산출/투입 1인당 노동생산성	모든 직업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증 -국가면허, 전문면허 -면허성 자격
	소비자	소비자 접근성 (양적 영역) 소비자 만족도 (질적 영역)	서비스 이용 가능성 서비스가격 적절성 서비스질의 만족도	모든 직업자격** -서비스관련 자격 -전문면허, 국가면허 -면허성 자격 일부

- 주: 1. 자격취득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을 자격종목별로 측정하기는 현실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자격검정(체계)의 적절성을 대리변수로 활용해야 함. 이는 자격검정이 적절하거나 효과적인 경우 취득자는 미 취득자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함.
2. *은 제조관련 자격종(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종)에 특히 적합함. 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의 초음파비파괴검사, 부처 국가자격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등이 이에 해당함.
3. **은 서비스관련 면허(성) 자격(국가기술자격 포함)에 특히 적합함. 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종의 미용사, 이용사, 피부미용사, 부처 국가자격의 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함.

제 4 장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주체별 분석의 시도)

김상호

제1절 자격(면허)의 효과와 직업규제

1. 개요

앞서 우리는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크게 노동공급자 측면(자격취득자 측면)과 노동수요자측면(기업, 소비자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이 장은 자격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앞서 제기한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자격의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성과(performance of labor market)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자격취득자의 고용효과, 임금효과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고용효과 및 임금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자료에의 접근과, 이론 및 모형설정이 쉽기 때문이다. 일부 노동수요자측면의 선행연구(이동임 외, 2005; 이동임 외, 2008)는 개별 종목에 대한 기업체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인 생산성 측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 측면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 측면의 경제적 효과의 경우 질적인 측면의 서비스 만족도라는 편익(benefits)을 산출하기 어려우며, 양적인 측면의 소비자 접근성 또한 계량적 지표로 산출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 면허와 관련하여 양적 접근성은 1년간 인구 1인당 치과 방문 횟수 등을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1,000여 종목이 넘는 자격증 및 면허에 대하여 양적 접근성 지표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러한 자료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질’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 및 사례연구는 서비스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서비스 가격이 높을 경우 소비자 접근성이 감소하며, 서비스 가격이 낮을 경우 소비자의 접근성이 증가된다. 따라서 자격취득자에 대한 노동공급량의 적절성은 해당 서비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추론될 수 있다. 따라서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산출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직업규제로 인한 고용 감소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는 면허를 통하여 직업규제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수요만큼 충분한 면허가 발급(양적 접근성이 보장)되어 부정적인 산출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규제는 적절한 수준인가? 이는 산업·직종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며, 국가마다 경제구조, 법률제도와 문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직업규제(occupational regulation)가 소비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공공성(publicness)에 기초하고 있으나, 공공성의 개념은 시대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윤수재 외, 2008).

2. 자격(면허)과 직업규제

자본주의 자유시장의 경쟁 논리에서 보면, 자격 및 면허는 모두 직업규제의 수단이다. 자격(면허)을 협의로 해석할 경우, 면허는 절대적 직업규제의 수단이지만 자격(certification)은 제한된 직업규제의 수단이다. 즉,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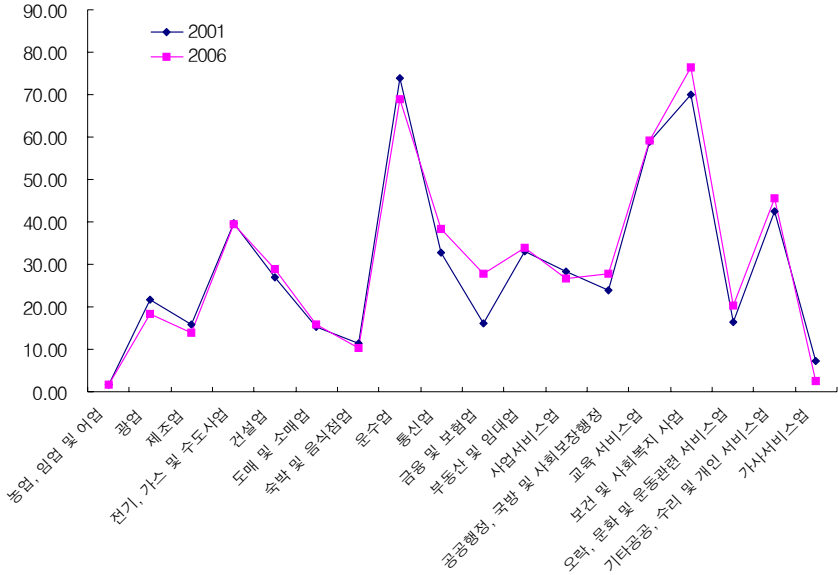
증과 인증서, 등록 역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직업규제의 수단에 포함되지만 진입장벽(barrier of entry)의 제한 정도(degree of restriction)는 낮다. 따라서 어떠한 직업에 진입규제가 발생된다면, 종사자 모두는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면 자격증은 면허보다는 완화된 형태의 직업규제이다. 예를 들어, 면허처럼 엄격한 법적 강제력과 업무독점권은 없을지라도, 각종 법령상의 제한 또한 우대·활용법령이 존재할 경우 사실상 규제적 기능을 가진다. 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법규제성에 따른 우대·활용법령을 신설할 수 있으며, 실제 우대·활용법령이 존재한다. 반면 자율민간자격[흔히 순수 민간자격으로 표현²⁶⁾]의 경우 법령, 시행규칙상의 우대·활용법령을 만들 수 없지만, 검정기관의 기업체 로비 등을 통하여 정관 등의 형태에서 가산점부여 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규제는 업무 독점 전문면허부터 자율민간자격까지 제한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의 직업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직업(무)종사자 가운데 자격(면허)의 취득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직무의 규제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직업규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26) 흔히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 순수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순수민간자격은 정보잡음(information noise)이 발생될 수 있는 용어이다. '순수'의 사전적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의 섞임이 없음 또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NAVER 국어사전)'이다. 그러나 실제 많은 민간자격 검정·운영기관이 허위·과장광고가 소비자보호원에 수없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순수 민간자격이라는 표현은 일반국민에게 잘못된 의미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자율 민간자격' 또는 '공인 외 민간자격'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1] 산업별 자격취득자 고용비율(규제 정도)

(단위: %)



그렇다면 우리나라 직업규제의 정도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어떨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직업을 분석 할 수는 없지만, OECD 국제규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법률, 회계, 엔지니어, 건축 등 4개 분야의 국가 간 직업규제성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직업규제는 전체 회원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영업규제는 낮은 편에 속한다(<표 4-1> 참조). 특히, 전문면허 배타적 독점권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표 4-1> 주요국가의 법·회계·건축·엔지니어 관련 직업 규제지표

항목		호주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면허	배타적 독점권 수	법	9	8	10	10	7	0	0	1
		회계	4	5	12	12	3	2	5	2
		건축	0	2	3	9	6	0	0	0
		엔지니어	2	3	0	10	6	1	0	0
필수 교육 수준	최소 교육 연한	법	4	4	0	0	8	5	0	7
		회계	4.5	4	0	0	8	4	3	4
		건축	5	4	0	3	10	0	0	5
		엔지니어	0	4	4	4	10	5	0	5
	연수 기간	법	1	2	0	2	0	5	1	0
		회계	0	3	0	1	0	3	5	2
		건축	2	2	0	5	0	0	0	3
		엔지니어	0	2	4	0	0	0	0	4
	자격 시험 존재	법	×	○	○	○	×	○	×	○
		회계	○	○	○	○	×	○	○	○
		건축	○	○	○	○	×	×	×	○
		엔지니어	×	×	○	○	×	×	×	○
합당제 와 경제적 수요심 사제도	기업유형 규제	법	×	×	×	×	×	×	×	○
		회계	×	×	×	×	×	×	×	×
		건축	×	×	×	×	×	×	×	×
		엔지니어	×	×	×	×	×	×	×	×
기업 형태의 규제	기업의 법적형태 제한	법	×	×	△	×	×	×	×	×
		회계	×	×	△	△	×	×	△	×
		건축	×	×	×	×	×	×	×	×
		엔지니어	×	×	×	×	×	×	×	×
가격 또는 수수료 규제	가격 및 요율 규제	법	×	△	×	×	△	×	×	×
		회계	×	×	×	×	×	×	×	×
		건축	×	△	×	△	×	×	×	×
		엔지니어	×	×	×	×	×	×	×	×
광고의 규제	광고 또는 마케팅 규제	법	○	○	○	○	○	×	○	○
		회계	○	×	×	×	○	×	×	○
		건축	×	○	×	×	○	×	×	○
		엔지니어	×	×	○	×	×	×	×	○
직업 간의 협력	직업 간 동업규제	법	△	△	△	○	△	○	○	○
		회계	○	△	△	○	△	△	○	○
		건축	○	△	○	○	○	○	○	○
		엔지니어	○	○	○	○	○	○	○	○

자료: The OECD International Regulation Database, 2008.

<표 4-2> OECD 주요국가의 진입·영업규제 비교

구분	진입 규제				영업 규제				전체			
	회계사	건축사	기술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호주	3.5	0.0	1.2	3.1	0.6	0.0	0.0	1.2	2.1	0.0	0.6	2.1
캐나다	4.1	3.9	4.1	3.9	2.8	2.3	1.5	1.9	3.4	3.1	2.8	2.9
프랑스	4.1	3.5	0.0	4.0	1.5	1.9	0.0	1.5	2.8	2.7	0.0	2.8
독일	4.0	2.6	2.6	3.7	0.8	3.4	1.9	3.4	2.4	3.0	2.3	3.6
이탈리아	3.8	3.6	3.6	3.9	3.3	2.6	2.2	2.6	3.6	3.1	2.9	3.2
일본	2.9	2.3	0.0	2.9	1.5	0.0	0.6	1.6	2.2	1.1	0.3	2.2
한국	3.1	4.2	3.4	3.2	0.9	0.7	0.7	1.4	2.0	2.4	2.1	2.3
영국	4.2	0.0	0.0	0.0	0.9	0.0	0.0	0.6	2.5	0.0	0.0	0.3
미국	2.6	0.0	0.0	3.1	0.6	0.6	0.6	0.6	1.6	0.3	0.3	1.9
전체평균	3.6	2.5	2.1	3.4	1.3	0.9	0.7	2.0	2.4	1.7	1.4	2.7

자료: OECD(2008년)

제2절 노동공급자 측면의 효과

노동공급자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임금효과이다. 대부분의 국가자격이 면허인 것을 감안한다면, 법규제성이 높은 면허의 경우 입직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정확한 고용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자격증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간의 비교(실험적 비교, 준실험적 비교, 단순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금효과를 추정한다.

2006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활용하여 간략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후, 각 집단별 임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현재 하는 일과 관련한 직무관련 경력은 10.0년이며, 자격증이 없는 집단의 경우 11.9년으로 나타났다. 총 근로기간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15.2년이며, 없는 경우는 15.7년으로 나타났다. 주당근로시간은 자격증이 있는 집단이 52.4시간, 없는 집단은 51.9시

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격증이 있는 경우 41세, 없는 경우는 44.7세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각각 226만원과 194만원으로 나타나 자격증이 있는 집단의 소득이 높았다.

반면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임금효과가 발생되나, 자격취득자보다 대략 16만원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부처 국가자격 취득자가 운전면허와 같은 부처 국가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4-3> 자격취득자의 소득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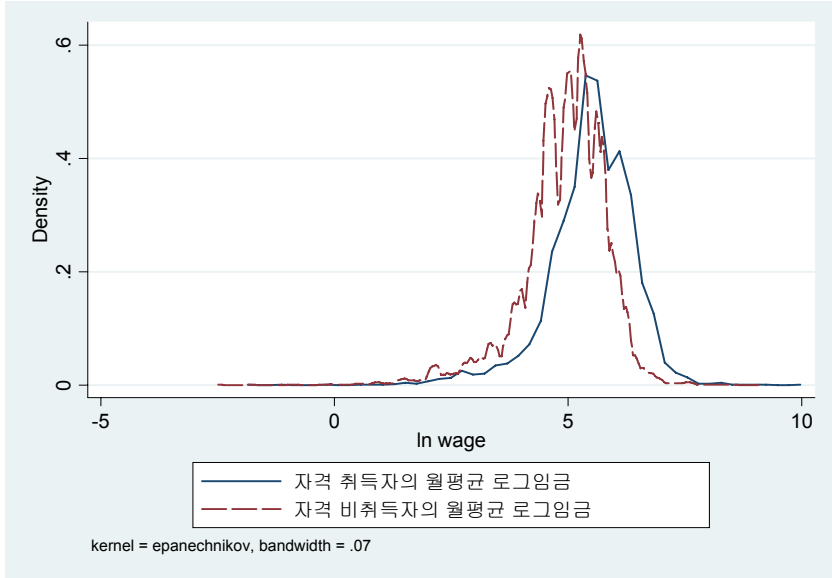
(단위: 년, 시간, 만원, 세)

구분	자격취득자			국가자격취득자			자격 미 취득자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연령	23,221	40.25	10.37	11,852	41.65	10.88	76,908	44.72	12.89
교육년수	23,168	13.70	2.47	11,821	13.36	2.58	74,241	12.50	2.72
주당근로시간	23,219	51.44	16.24	11,851	53.40	16.72	76,905	51.94	17.68
현재 직무경력	23,127	10.25	8.63	11,808	9.74	8.72	76,493	11.94	12.67
총 근로경력	23,067	14.65	9.76	11,775	15.71	10.30	76,101	15.66	12.38
월평균소득	22,254	233.85	192.69	11,297	217.60	211.24	67,429	194.06	19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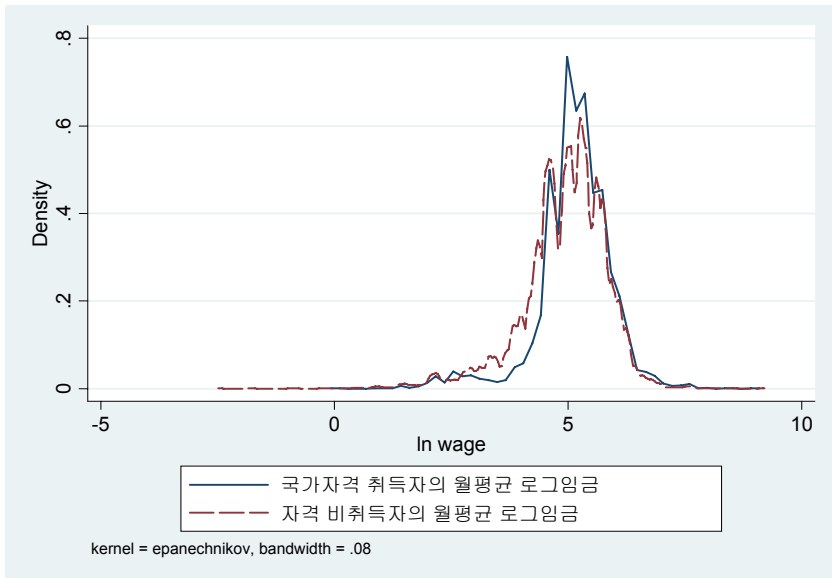
자료: OES 원자료(2006)

[그림 4-2]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활용하여 자격취득자와 자격미취득자의 로그임금(log wage)을 지리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은 자격취득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자격취득자의 임금분포(wage spread)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펼쳐져 있으며 우측으로 놓여 있다. 이를 국가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밀도는 높으나 다소 중첩된 분포를 나타낸다. 국가자격 취득자의 분포가 자격 미취득자의 분포와 중첩되게 나타나는 이유는 많은 국가자격이 운전·운송관련 면허이기 때문이다([그림 4-3] 참조).

[그림 4-2] 자격 취득자와 비취득자의 월평균 로그임금분포



[그림 4-3] 국가자격 취득자와 비취득자의 월평균 로그임금분포



<표 4-4>는 우리나라 부처 국가자격관련 직업 가운데 한국, 일본, 미국의 공통적인 소득 및 종사자 수를 구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비교이다.²⁷⁾ 그 결과 한국의 전문면허 직업(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치과의사)²⁸⁾의 경우 월 492만 원, 일본의 경우 월 59만 엔, 미국의 경우 월 6,919 달러로 나타났다. 국가 간 국민소득 및 근로자평균임금, 비교년도(2008)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 자료로 볼 때, 한국의 전문면허는 경쟁제한을 통한 경제적 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전문면허에 관한 최근의 고영선 외(2009), 김상호(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지만 전문면허를 제외한 다른 직업(대부분 면허 또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미국 및 일본에 비해 크게 낮다²⁹⁾. 따라서 종사자의 평균학력이 높은 전문면허 외 부처 국가자격 면허 또는 면허성자격의 경우 경제적 지대추구(economic rental seeking)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4-4> 한·일·미 직업별 종사자 및 소득 비교

(단위: 천 명, 만 원, 만 엔, 달러)

한국 (2008년: 연 소득)			일본 (2008~2009년: 연 소득)			미국 (2009년: 연소득)		
직업	종사자	소득	직업	종사자	소득	직업	종사자	소득
회계사 (공인회계사)	16.2	4,890.0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72	1,036.61	Accountants and Auditors	1,291	62,055
감정평가전문가 (감정평가사)	5.2	5,462.4	부동산감정사 (부동산감정사*)	240	663.61	Real Estate Appraisers	92	50,485
변호사 (변호사)	11.5	7,472.4	변호사 (변호사*)	22	680.37	Lawyers	759	119,150
법무사 (법무사)	8.2	4,538.4	사법서사 (사법서사*)	21	482.18*	Judiciary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51	40,590

<표 계속>

- 27) 국가마다 산업규모, 종사자의 직무영역이 다르며, 해당 직업의 법규제성 정도가 다르므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 28) 건축사의 경우 대부분 건축공학기술자이며, 직업분류상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면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29) 한국, 일본, 미국의 경우 직업별 종사자의 직무범위가 다르며, 각 국가의 소득 및 종사자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많은 다양한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일정부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2008년: 연 소득)			일본 (2008~2009년: 연 소득)			미국 (2009년: 연소득)		
직업	종사자	소득	직업	종사자	소득	직업	종사자	소득
치과의사 (치과의사)	13.1	7,196.4	치과의사 (치과의사*)	91	724.25*	Dentists	142	142,870
종사자 수 합 평균 소득	54.2	5,911.9	종사자 수 합 평균 소득	446	717.40	종사자 수 합 평균 소득	2,335	83,030
간호사 (간호사)	158.7	2,577.6	간호부 (간호부*)	1,107	460.57*	Nurses	754	40,035
수의사 (수의사)	6.6	3,720.0	수의사 (수의사*)	21	563.16*	Veterinarians	60	82,740
방사선사 (방사선사)	16.9	2,946.0	진료방사선기사 (진료방사선기사*)	44	493.76*	Radiologic Technologists and Technicians	215	52,860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4.3	3,358.8	구급구명사 (구급구명사*)	147	514.58*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Paramedics	211	28,243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24.7	2,035.2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84	327.72*	Dental Hygienists	174	67,105
영양사 (영양사)	35.1	2,091.6	영양사 (영양사)	103	341.75*	Dietitians and Nutritionists	60	51,425
보육교사 (보육교사)	155.0	1,562.4	보육사 (보육사)	419	328.44	Child Care Workers	1,302	18,298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56.6	2,160.0	사회복지시설 개호직원 (사회복지사)	235	374.87*	Social Workers	642	41,560
택시운전원 (택시운전자격)	287.8	1,713.6	택시운전자 (운전면허)	1,733	279.73	Taxi Drivers and Chauffeurs	232	22,285
경비원 (경비지도사)	249.7	1,236.0	경비원	335	298.1	Security Guards	1,077	24,625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건축사)	142.4	3,600.0	건축시공관리 기술자 (건축사*)	233	551.86	Architects	141	72,675
종사자 수 합 평균 소득	1,137.8	2,454.6	종사자 수 합 평균 소득	4,461	412.2	종사자 수 합 평균 소득	4,868	45,622
총 종사자 수 총 평균 소득	1,192.0	3,535.1	총 종사자 수 총 평균 소득	4,907	507.6	총 종사자 수 총 평균 소득	7,203	57,323

주: 1. 직업란 *는 업무독점을 의미함.

2. 소득란 *는 我が国における職業に.する資格の分析 -Web 免許資格調査から- (第2 分冊) . 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121-2. 참고하여 계산함.

3.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Paramedics, Child Care Workers는 시간당 임금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함(주당 40시간, 4주, 12개월).

자료: 1.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08

2.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10-2011

3. Career Matrix, <http://cmx.hrsys.net/TOP/>

제3절 노동수요자 측면의 효과

1. 자격취득자의 실질부가가치

자격보유비율(직업규제 정도)과 실질부가가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상의 실질부가가치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결합하였다. 이 자료상에 활용된 종사자 수, 임금, 자격보유비율 등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활용하였다³⁰⁾.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는 652,397,888백만 원이며, 이 가운데 자격취득자가 창출한 GDP는 178,914,618백만 원(자격취득자 27.42%)으로 추계된다. 2006년 기준의 경우 총 GDP는 815,680,162백만 원이며, 자격취득자가 만들어 낸 GDP는 231,465,009백만 원(28.38%)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6년간(2006년 기준) 자격취득자가 만들어 낸 GDP는 2001년 기준으로 52,550,391백만 원만큼 증가하였다. 자격취득자 비율이 6년 동안 0.96%p 증가하는 동안, 실질부가가치는 25.03%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자격취득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비율은 29.37%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전반적인 자격취득자의 임금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격취득자 비율증가가 경제전반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 산업별 자격취득자 비율과 1인당실질 부가가치 창출과의 관계성은 불명확하다. 즉, 적절한 직업규제는 시장에 긍정적이나, 과도한 직업규제는 시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추론된다. <표 4-5>를 바탕으로 산업별 자격보유비율과 1인당 실질부가가치 비율의 증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보유비율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업, 운수업,

30)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다소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표본규모가 다수의 결합자료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교육·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면허의 비율이 높다. 많은 수가 직업규제가 높은 산업으로 업무독점 면허이다. 이들 산업은 교육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에서 자격취득자 비율이 증가될 경우 1인당 부가가치가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산업과 운수업은 그렇지 않았다. 반면,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과 같이 자격증(certification) 비율이 높은 산업의 경우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자격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별로 어떠한 순기능을 가진 자격종목이 많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이는 초기 [그림 2-2]의 모형과 같이 자격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인지 부정적 효과를 가질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른 요인이 각 산업 및 직종 특성마다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좀 더 명확한 것은 포함된 자격종목의 변동 내용 및 자격활용률 등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³¹⁾.

31) 이 연구에서 자격과 GDP에 관련된 해석은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격과 GDP의 관계는 포함된 자격종목, 활용된 자료의 좀 더 엄격한 통제, 기간에 따른 국내의 경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정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표 4-5〉 자격취득자의 실질부가가치

산업 대분류	년도	실질 부가가치	평균 월 임금		1인당 실질부가 가치	자격 취득자 비율	1인당 실질부가 가치	자격 취득자 비율	산입 대분류	년도	실질 부가가치	평균 월 임금		1인당 실질부가 가치	자격 취득자 비율
			전체	자격 취득자								전체	자격 취득자		
농업, 임업 및 어업	2001	24,988,482	82.65	147.74	2,094,000	11.93	392,319.2	1.57	2001	57,679,906	138.00	168.68	136.04	18,993,983.0	32.93
	2006	26,240,242	84.58	211.68	1,967,508	13.34	682,742.4	2.64	2006	64,603,946	172.57	227.96	131.47	21,777,980.2	33.71
	증감율	5.01	2.34	43.28	-6.04	11.76	76.6	1.07p	증감율	12.00	25.05	35.14	-3.36	14.66	0.79p
광업	2001	1,871,833	176.10	148.25	18,000	103.99	403,754.4	21.57	2001	31,422,017	177.10	190.47	24.78	8,914,426.2	28.37
	2006	1,991,930	222.70	229.00	19,200	103.75	366,913.5	18.42	2006	39,720,838	197.73	282.23	23.24	10,605,463.7	26.70
	증감율	6.42	26.46	54.47	6.67	-0.23	-9.12	-3.15p	증감율	26.41	11.65	48.18	-6.23	18.97	-1.67p
제조업	2001	164,266,206	164.50	163.89	4,257,000	38.39	23,167,606.6	15.93	2001	43,823,431	184.90	163.86	61.46	10,455,711.7	23.95
	2006	230,892,597	209.09	251.27	4,182,718	55.20	32,348,052.8	14.01	2006	50,520,787	235.49	270.15	785.403	14,080,143.3	27.87
	증감율	40.36	27.11	53.32	-1.74	43.06	23.62	-1.92p	증감율	15.28	27.36	64.87	10.15	34.15	3.92p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001	13,888,185	220.30	218.18	52,000	266.12	5,510,355.3	39.82	2001	40,106,835	178.70	171.96	28.96	23,655,011.3	58.98
	2006	18,332,941	311.31	368.45	81,300	225.50	7,247,011.6	39.53	2006	48,532,915	210.43	246.34	28.39	28,682,952.8	59.10
	증감율	32.48	41.31	68.87	56.35	-15.26	31.52	-0.29p	증감율	21.01	17.76	43.25	-1.98	21.26	0.12p
건설업	2001	51,730,381	183.60	186.74	1,822,000	28.39	13,879,261.2	26.83	2001	22,405,452	171.00	182.1	38.70	15,656,929.9	69.88
	2006	60,564,387	204.04	274.34	1,884,808	32.13	17,460,712.8	28.83	2006	30,389,250	202.21	246.29	43.46	23,190,036.7	76.31
	증감율	17.08	11.13	46.91	3.45	13.18	25.80	2.00p	증감율	35.63	18.25	35.25	20.76	48.11	6.43p
도매 및 소매업	2001	61,576,495	151.40	155.16	3,980,000	15.47	9,378,100.2	15.23	2001	21,002,941	175.70	173.51	50.85	3,465,485.3	16.50
	2006	67,052,600	183.49	215.53	3,697,816	18.13	10,567,489.8	15.76	2006	25,936,163	197.04	263.7	49.02	5,235,057.3	20.40
	증감율	8.89	21.20	38.91	-7.09	17.20	12.67	0.53p	증감율	23.58	12.15	51.98	18.67	52.79	3.9p

〈표 계속〉

2. 자격(면허)과 서비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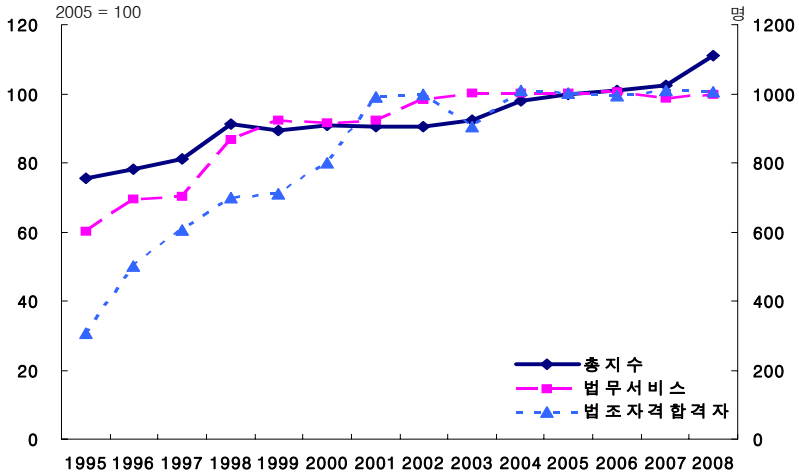
자격(면허)을 통한 직업규제는 해당 서비스의 종사자 수를 제한하고, 이로 인하여 직무수행자의 소득이 증가하며, 결국 서비스 가격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분야 자격(면허)의 서비스 가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발급된 면허의 취득자 규모가 작아야 한다. [그림 4-4]와 [그림 4-5]는 대표적으로 규제된 직무분야인 법조자격 합격자 수와 세무회계자격 합격자 수의 변화추이 및 물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합격자 규모가 많지 않은 구간(2000년 전후)에서 서비스 가격은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합격자 수의 규모가 크게 증가된 이후 평균물가상승률은 낮은 증가를 보인다. 이는 적절하게 노동공급(면허발급)이 제한될 경우 노동공급자의 소득이 증가되고, 서비스 가격은 상승한다는 선행연구와 모형(Kleiner, 2006)에 지지되는 내용이다. 초기 제시된 모형상의 메커니즘을 따라가면, 우리나라 전문면허 서비스의 양적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질적 접근성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로서는 노동공급의 증가로 서비스 질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다.

우리나라 전문면허의 양적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인력, 사법고시 합격자 수, 공인회계사 등은 2000년대 이후 1990년 이전과 비교하여 사전선발의 인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증설, 학과증설로 인하여 대학졸업자 수 자체가 증가된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수요 증가 및 양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검정시험의 사전합격 인원의 상한선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 이후 일부 전문면허의 직무분야를 제외한다면 자격이 서비스 가격을 높인다는 최근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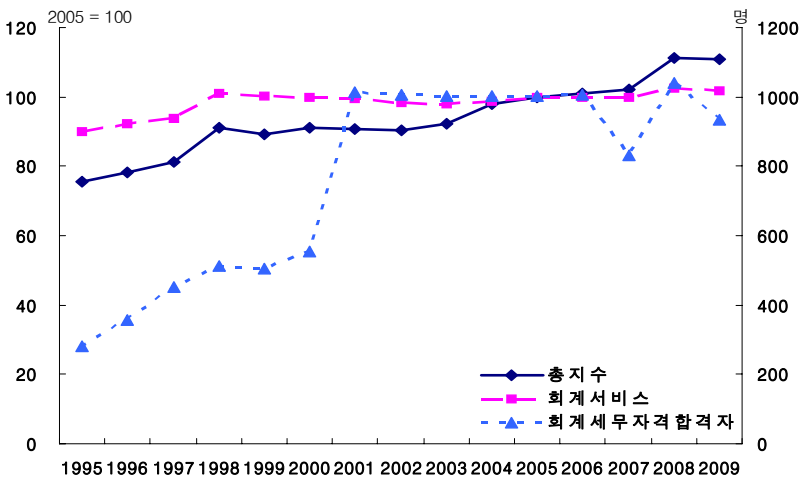
둘째, 높은 대학진학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높은 대학진학률은 전문자격(면허)의 양적인 절대 규모를 증가시킨다. 상대적으로 평균학력이 낮은 국가들과 비교하

여보면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자 수의 상대적 규모가 증가되기 때문에 시험 위원회에 사전선발인원 규모를 증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림 4-4] 법무 관련 생산자물가지수와 법조시험 합격자 추세(200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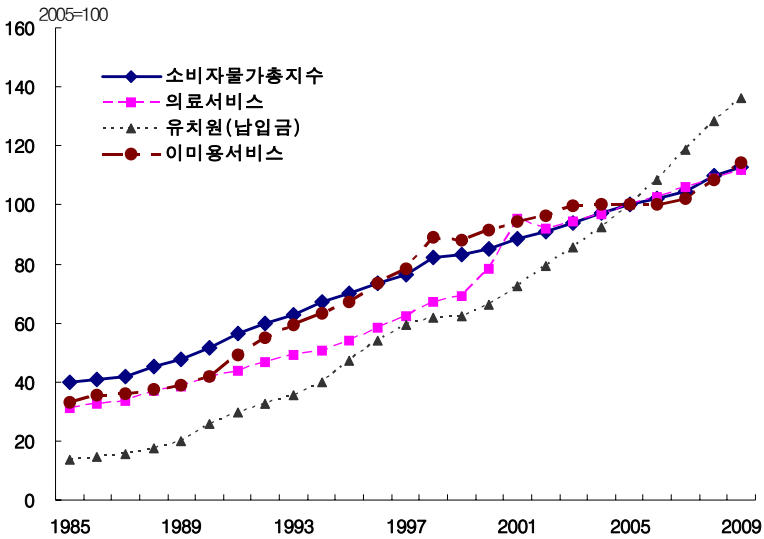


[그림 4-5] 회계 관련 생산자물가지수와 관련시험 합격자 추세(2005년 기준)



[그림 4-6]은 세부분야별로 통계자료가 허용하는 범주 하에서 면허관련 지수와 소비자 물가상승률(2005년=100)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면허로서 규제가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유치원(납입금), 이·미용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소비자물가 총지수와 주요 서비스지수 추세(2005년 기준)



제 5 장

자격종목별 경제적 효과(사례연구: 사회복지, 보육, 사서)

김상진 · 김상호

제1절 개요

자격의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앞서 제시된 것처럼 자격의 경제적 효과가 기존 모형([그림 2-2] 참조) 사례를 통한 증명이고, 둘째 개별 자격종목에 대한 분석(틀)의 제시를 통한 다른 부처 국가자격의 효과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효과측정의 방법을 포함한다. 현재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대량의 자료가 없으므로, 설문조사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³²⁾

자격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노동공급자측면과 노동수요자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노동수요자의 경우 소비자측면과 기업측면이 있으나, 기업측면의 경우 해당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측면을 대변할 응답자를³³⁾ 찾기가

32) 이 연구는 부처 국가자격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시범적 연구이다. 따라서 향후 좀 더 단순하고 손쉽게 평가하기 위한 설문문항 및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 및 함의들을 통하여 후속 연구에서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3)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자를 조사하거나, 소규모사업체의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허(또는 면허성 자격)의 경우 응답자가 대부분 자격취득자를 채용하므로 자격취득자가 아닌 사람과 비교하여 응답하기 어렵다. 둘째,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서비스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라는 부분의 측정이 주관적이다. 셋째, 경제적 효과의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검정체계 등에 관련된 실용적인 개선사항을 기업조사로 파악하기 어렵다. 개별 종목별 경제적 효과의 궁극적 목적은 검정체계의 개선을 통한 자격검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조사로 진행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격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기업조사는 기업의 인사담당자, 고용주 등을 포함한 전문가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장의 종목별 경제적 효과분석은 자격취득자조사, 수요자조사, 전문가조사로 진행한다. 1차 취득자조사는 2010년 9월에 진행되었다. 2차조사는 수요자조사, 전문가조사이며, 2010년 10월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무시험검정이 이루어지는 부처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1급(시험검정),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정사서1급, 정사서2급, 준사서, 보육교사1급, 보육교사2급, 보육교사3급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격종목들을 선정한 이유는 검정체계상의 특성이 동일하고, 대부분 무시험검정이며, 노동공급의 부족이 없는 자격종목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노동공급이 충분히 공급된 경우 소비자의 질적 질이 감소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교육연계자격(과정이수자격)이 검정자격(시험자격)보다 자격의 질 관리에 있어서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험검정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1급과 다른 자격종목들을 비교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³⁴⁾

이 조사의 설문은 특정 부처 국가자격들을 위한 조사가 아니므로 모든 부처 국가자격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앞의 제1장에

34)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는 공동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교육·직업연계 강화이다. 따라서 교육연계자격(과정이수자격)과 검정자격의 성과를 비교하는 현실적 의미가 크다.

서 제시한 것처럼 개별부처가 스스로 경제적 효과(효용성)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표 5-1> 부처 국가자격의 효과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대상	조사 목표 및 내용
자격취득자 (2010년 9월) 최근 3년 이내 해당 자격종목 취득자	경제적 지대(가설: 경제적 지대가능성 없음) · 고용·소득 평가, 기타 노동시장 성과 · 취득과정 및 비용, 직업규제성 · 검정체계 개선사항
소비자조사 (2010년 10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	양적·질적 접근성(가설: 양적 좋음, 질적 나쁨) · 소비자 만족도 · 양적·질적 접근성
전문가조사 (2010년 10월) 유관교수, 고용주, 연구자, 관련 공무원, 유관협회 등	양적·질적 평가(가설: 양적 좋음, 질적 좋음) · 전문성, 양적·질적 접근성 · 법규제성 · 검정체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2절 국가자격 취득자조사

국가자격 취득자조사는 총 450명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자격은 부처별 국가자격에서 사회복지사 1~3급, 정사서 1~2급, 준사서, 보육교사 1~3급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득자조사의 경우 해당 자격종목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의 사람으로 제한하였다.³⁵⁾ 즉, 자격취득자들을 3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위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95명, 여성이 3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사 자격의 특성상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자격이기 때

35) 설문조사 자격취득자를 최근 3년 이내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경력변화가 발생되어 자격취득의 효과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고적조사임을 감안할 때, 응답자가 올바른 응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에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가 139명으로 가장 많으며, 30대, 20대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40대, 30대, 20대순이며, 사서는 40대, 20대, 30대순이고 보육교사는 30대, 40대, 20대순으로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346명, 임시근로자 73명, 일용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격별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은 2, 3년제 대졸이 가장 많고, 4년제 대학, 고졸, 대학원이상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졸 이하도 4명 포함되어 있다.

<표 5-2> 자격의 경제적 효과 취득자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자격종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성별	남성	15	19	17	14	16	9	1	2	2	95
	여성	35	31	33	36	34	41	49	48	48	355
전 체		50	50	50	50	50	50	50	50	50	450
연령	20대 미만	0	0	0	0	0	14	0	6	5	25
	20세~29세	6	1	1	0	40	19	4	16	5	92
	30세~39세	21	11	6	12	7	7	20	20	19	123
	40세~49세	15	13	21	30	2	10	22	8	18	139
	50세~59세	7	23	15	8	1	0	4	0	3	61
	60세 이상	1	2	7	0	0	0	0	0	0	10
전 체		50	50	50	50	50	50	50	50	50	45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7	48	44	46	9	18	48	43	43	346
	임시근로자	2	1	4	4	27	21	1	6	7	73
	일용근로자	0	0	0	0	0	1	0	0	0	1
	전 체	49	49	48	50	36	40	49	49	50	420
학력	중졸이하	0	0	4	0	0	0	0	0	0	4
	고졸	1	8	22	0	0	0	4	16	37	88
	2, 3년제 대졸	24	33	17	0	0	31	16	23	8	152
	4년제 대졸	18	7	7	3	48	19	25	10	5	142
	석·박사 및 대학원졸	7	2	0	47	2	0	5	1	0	64
	전 체	50	50	50	50	50	50	50	50	50	45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취득자격과 전공계열과의 관계는 <표 5-3>과 같다. 대부분 자격증 관련 전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전공자가 가장 많으며, 정사서 및 준사서는 문헌정보전공자, 그리고 보육교사는 유아교육전공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는 의료서비스 관련 전공, 정사서 및 준사서는 공학관련 전공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전공이 높게 나타났다. 이 직무분야의 경우 절대적인 직업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가 높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사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으며, 직업과 전공의 일관성이 높다. 학력과 자격과 직업과의 일관성은 사서, 사회복지사, 보육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교육·자격·노동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노동시장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표 5-3> 취득자격과 전공계열과의 관계

(단위: 명)

자격종목 전공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문헌정보	0	0	0	34	45	29	0	0	0	108
사회복지	40	32	5	0	0	0	10	5	1	93
유아교육	0	1	1	0	0	1	31	23	0	57
교육	1	0	0	1	1	0	3	0	0	6
의료서비스	4	2	3	0	0	0	1	0	2	12
기타	4	7	15	15	4	20	1	6	10	82
합계	49	42	24	50	50	50	46	34	13	358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조사 자격과 응답자의 자격별 평균 업무기간 및 평균임금은 <표 5-4>와 같다. 자격관련 업무기간은 대부분 자격의 급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보다 2급 자격이 더 오랫동안 자격관련 업무

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 역시 급수가 높은 자격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사서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보다 1급과 2급의 평균임금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사서 1급 자격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1급과 보육교사 1급 자격보다 평균임금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사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직종효과와 학력·근속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³⁶⁾.

<표 5-4> 자격별 평균 업무기간 및 평균임금

(단위: 명, 년, 만 원)

특성, 구분	자격종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자격 관련 업무 기간	빈도	50	49	50	47	31	33	50	50	50	410
	평균	11.05	14.10	8.25	15.97	1.94	1.59	11.91	3.22	1.59	8.18
임 금	빈도	47	47	45	49	36	40	46	49	50	409
	평균	203.83	194.68	160.73	342.24	157.78	136.63	173.78	118.73	100.96	177.84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자격·면허 취득자의 취득 동기는 <표 5-5>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고용과 자기개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기개발의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고용, 소득 및 승진이, 마지막으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정사서의 경우 정사서 1급 자격은 자기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정사서 2급과 준사서는 고용에

36) 일반적인 노동공급자 측면의 소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각 종목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산업·직종효과 외에도 검정체계가 매우 달라 근속효과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사서 1급은 최소 9년 이상의 경력 또는 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1급과 보육교사 1급은 학력 및 경력요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따라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산업·직종효과를 통제할 가운데 매칭을 통해 상호 비교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우수하나, 비교집단 구성을 위해 대량의 표본이 필요하며, 면허성이 높을수록 비교집단 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드러난 종목별 소득은 단순한 임금수준의 파악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더 높은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는 전체적으로 자기개발보다는 고용에 더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자격 등급별로 동기를 살펴보면 등급이 높아질수록 고용보다는 자기개발에 더 높은 동기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격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조사의 자격종목들은 일정한 경력이 있어야만 각 자격의 1급 취득 자격이 갖춰지기 때문에 각 자격의 1급의 경우 고용보다는 자기개발의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난다. 즉, 1급의 경우 재직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등급의 경우 고용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표 5-5> 자격·면허 취득자의 취득 동기

(단위: 명, %)

항목	자격 종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고용		16 (32.0)	11 (22.0)	19 (38.0)	3 (6.0)	43 (86.0)	37 (74.0)	25 (50.0)	41 (82.0)	46 (92.0)	241 (53.6)
소득 및 승진		6 (12.0)	3 (6.0)	8 (16.0)	7 (14.0)	1 (2.0)	2 (4.0)	4 (8.0)	1 (2.0)	0 (0.0)	32 (7.1)
자기개발		26 (52.0)	33 (66.0)	18 (36.0)	39 (78.0)	5 (10.0)	11 (22.0)	21 (42.0)	8 (16.0)	4 (8.0)	165 (36.7)
기타		2 (4.0)	3 (6.0)	5 (10.0)	1 (2.0)	1 (2.0)	0 (0.0)	0 (0.0)	0 (0.0)	0 (0.0)	12 (2.7)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주: 기타의 항목은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취득자격과 직무(직업)내용의 관련성은 <표 5-6>과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치 및 매우 일치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검정자격(전공제한 없는 시험선발)의 직무일치도가 대략 50%안팎임(김상호, 2009: 279)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교육·직업의 일치를 보이는

것이다. 이 조사 자격은 일정한 교육과정(대학 또는 관련교육시설)에서 관련 직무에 대한 과목 또는 훈련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연계자격(과정이수자격)과 직무일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5-6> 취득자격과 직업(직무)내용의 관련성

(단위: 명, %)

자격 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거의 일치 하지 않음.	0 (0.0)	0 (0.0)	0 (0.0)	5 (10.0)	7 (17.9)	7 (14.3)	0 (0.0)	0 (0.0)	0 (0.0)	19 (4.3)
일치 않음.	2 (4.0)	4 (8.0)	1 (2.0)	1 (2.0)	3 (7.7)	10 (20.4)	1 (2.0)	0 (0.0)	0 (0.0)	22 (5.0)
보통	2 (4.0)	4 (8.0)	1 (2.0)	8 (16.0)	3 (7.7)	9 (18.4)	1 (2.0)	1 (2.0)	0 (0.0)	29 (6.6)
일치	35 (70.0)	26 (52.0)	33 (66.0)	25 (50.0)	18 (46.2)	10 (20.4)	23 (46.0)	26 (52.0)	40 (80.0)	236 (53.9)
매우 일치함.	11 (22.0)	16 (32.0)	15 (30.0)	11 (22.0)	8 (20.5)	13 (26.5)	25 (50.0)	23 (46.0)	10 (20.0)	132 (30.1)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39 (100.0)	49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38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취득자격의 성격인 경제활동에서의 중요도와 자격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의 절대적 직업자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활동의 보조적 자격증, 특정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순으로 나타났다. 즉, 동업종에서 동 자격들은 필수적인 자격인 면허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표 5-7>참고). 자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격 또는 특정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자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정사서 1급의 경우 특정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교양자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자격종목이더라도 급수가 달라지면 자격종목이 가지는 효과 및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7> 취득자격의 성격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입직 절대적	16 (32.0)	20 (40.0)	29 (58.0)	0 (0.0)	29 (58.0)	18 (36.0)	27 (54.0)	34 (68.0)	40 (80.0)	213 (47.3)
입직 보조적	18 (36.0)	13 (26.0)	8 (16.0)	1 (2.0)	9 (18.0)	31 (62.0)	10 (20.0)	9 (18.0)	8 (16.0)	107 (23.8)
직무능력 인증	12 (24.0)	16 (32.0)	10 (20.0)	34 (68.0)	11 (22.0)	0 (0.0)	12 (24.0)	7 (14.0)	1 (2.0)	103 (22.9)
자기개발	4 (8.0)	1 (2.0)	3 (6.0)	15 (30.0)	1 (2.0)	1 (2.0)	1 (2.0)	0 (0.0)	1 (2.0)	27 (6.0)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자격취득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중요하다. 이는 취득비용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며, 간접비용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西村公子 외(2010)는 취득기간을 비용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경우 교육연계자격종목의 투입비용이 높게 나타나며, 검정자격이 과소평가된다³⁷⁾.

자격 취득에 대한 수험기간 및 취득비용은 <표 5-8>과 같다. 우선 자격 취득에 대한 수험기간은 자격의 등급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37) 먼저, <표 5-7>과 <표 5-8>은 교육연계자격종목이 아닌 검정자격을 염두에 두고 설문문항을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자격종목마다 교육과의 연계성 정도가 다르며, 다양한 형태로 검정 체계가 이루어지므로 회고적 조사에 의존한 조사기법에 의하여 자격취득비용을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 만약 가능하다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조사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시험산업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구방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교한 조사문항 및 기업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취득과정상의 투입 기간 및 비용은 이러한 관점에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있다. 자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과 2급은 약 3년의 수험기간을 보이고 있는 반면 3급은 1년의 수험기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사서 및 준사서 역시 1급과 2급은 각각 4.42년과 3.79년으로 약 4년의 수험기간을 보인 데 비해 준사서는 1.72년으로 수험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역시 1급과 2급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3급의 수험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취득의 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격의 등급이 낮을수록 취득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규교육 비용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규교육비용이 높은 자격은 비용이 낮게 나타나고, 개별 교육기관(훈련기관 및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회복지사 3급, 보육교사 3급, 그리고 준사서는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정규교육을 제외한 자격 학습시간의 비중을 살펴보면 각 자격의 등급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보다 2급에서 개인 학습시간이 많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정규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3급, 보육교사 3급, 그리고 준사서가 개인 학습시간이 높은 것은 그 자격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8> 자격 취득에 대한 수험기간 및 취득비용

(단위: 년, %, 만 원)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수험기간	3.27	3.02	1.02	4.42	3.79	1.72	3.08	1.96	1.02	2.59
취득비용	35.10	62.20	191.00	0.00	3.06	178.10	54.20	109.64	235.00	96.69

주: 수험기간은 정규교육시간을 포함하고 자격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수험기간을 의미하며, 학습시간의 비중은 정규교육과정(대학, 고등학교 등)을 제외한 학습시간의 비중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취득비용은 자격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정규 교육비는 제외함.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원 등의 교육 참여여부와 교육일수는 각 자격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2급을 제외한 1급과 3급은 교육 참여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사서 및 준사서의 경우에는 교육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3급을 제외한 1급과 2급은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집체훈련과 인터넷통신훈련의 교육일수는 집체훈련의 교육일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보다는 높은 등급의 교육일수가 짧게 나타났다(<표 5-9>참조).

<표 5-9>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참여여부와 교육일수

(단위: 명, %, 개월)

자격 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예	34 (68.0)	19 (38.0)	49 (98.0)	0 (0.0)	3 (6.0)	17 (34.0)	23 (46.0)	23 (46.0)	49 (98.0)	217 (48.2)
아니오	16 (32.0)	31 (62.0)	1 (2.0)	50 (100.0)	47 (94.0)	33 (66.0)	27 (54.0)	27 (54.0)	1 (2.0)	233 (51.8)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집체 훈련	1.35	11.26	8.78	-	12.00	14.12	5.00	9.96	12.00	8.75
통신 훈련	5.15	1.89	0.00	-	0.00	0.00	0.00	1.57	0.00	1.14

주: 1. 여기서는 정규교육(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 외에 학원, 훈련기관, 각종센터 운영 훈련과정의 참여여부를 말함.

2. 집체훈련과 인터넷통신훈련의 교육일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계산한 평균일수임.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자격취득 수험과정을 통한 직무수행력 향상정도는 <표 5-10>과 같다. 조사자격의 경우, 모두 취득과정의 수험학습이 직무수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그렇지 않다’가 30%로, ‘그렇다’의 36%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의견이 양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격의 등급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 5-10> 자격취득 수험과정을 통한 직무수행력 향상 정도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거의 그렇지 않다.	1 (2.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4)
그렇지 않다.	15 (30.0)	11 (22.0)	0 (0.0)	1 (2.0)	1 (2.0)	1 (2.0)	1 (2.0)	0 (0.0)	0 (0.0)	30 (6.7)
보통	14 (28.0)	9 (18.0)	0 (0.0)	14 (28.0)	8 (16.0)	2 (4.0)	3 (6.0)	3 (6.0)	2 (4.0)	55 (12.2)
그렇다	18 (36.0)	24 (48.0)	38 (76.0)	29 (58.0)	39 (78.0)	47 (94.0)	40 (80.0)	44 (88.0)	42 (84.0)	321 (71.3)
매우 그렇다	2 (4.0)	6 (12.0)	12 (24.0)	5 (10.0)	2 (4.0)	0 (0.0)	6 (12.0)	3 (6.0)	6 (12.0)	42 (9.3)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자격취득에 가장 도움이 된 학습은 <표 5-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정규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원 및 훈련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은 실무연수, 2급은 정규교육, 그리고 3급은 학원 및 훈련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사서 및 준사서의 경우 모두 정규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는 1급과 2급에서 정규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급은 학원 및 훈련기관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1> 자격취득에 가장 도움이 된 학습

(단위: 명, %)

항목	자격종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정규교육	10 (20.0)	26 (52.0)	2 (4.0)	44 (88.0)	41 (82.0)	34 (68.0)	28 (56.0)	27 (54.0)	1 (2.0)	213 (47.3)			
실무연수	24 (48.0)	13 (26.0)	1 (2.0)	5 (10.0)	8 (16.0)	0 (0.0)	12 (24.0)	3 (6.0)	3 (6.0)	69 (15.3)			
학원 및 훈련기관	2 (4.0)	11 (22.0)	43 (86.0)	0 (0.0)	1 (2.0)	16 (32.0)	10 (20.0)	20 (40.0)	46 (92.0)	149 (33.1)			
자율학습	14 (28.0)	0 (0.0)	4 (8.0)	1 (2.0)	0 (0.0)	0 (0.0)	0 (0.0)	0 (0.0)	0 (0.0)	19 (4.2)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자격의 고용 및 임금 효과는 <표 5-12>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조사자격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직장에 입사하였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자격 취득 후 변화가 없거나 직무관련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시설장, 부서장, 팀장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취득 후 더 높은 근무평점을 받게 되었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선 “자격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직장에 입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자격의 고용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무평점이 높아지고, 시설장 및 부서장의 직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직접적인 임금효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격별로 앞서 제시한 고용효과는 등급이 낮을수록 높으며, 임금효과는 자격의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표 5-12> 자격의 고용효과와 임금효과

(단위: 명, %)

항목 \ 자격종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관련 있는 직장에 입사	6 (1.2)	2 (0.4)	9 (1.7)	0 (0.0)	25 (4.9)	4 (0.8)	23 (4.5)	39 (7.6)	47 (9.1)	155 (30.1)
자격과 관련한 창업	1 (0.2)	1 (0.2)	7 (1.4)	0 (0.0)	0 (0.0)	0 (0.0)	7 (1.4)	0 (0.0)	0 (0.0)	16 (3.1)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관련 높은 직무 부여받음.	4 (0.8)	1 (0.2)	1 (0.2)	3 (0.6)	0 (0.0)	18 (3.5)	0 (0.0)	0 (0.0)	0 (0.0)	27 (5.2)
고용형태 향상됨.	0 (0.0)	4 (0.8)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0)
승진	2 (0.4)	1 (0.2)	0 (0.0)	0 (0.0)	0 (0.0)	0 (0.0)	1 (0.2)	0 (0.0)	0 (0.0)	4 (0.8)
수당을 지급받음.	0 (0.0)	1 (0.2)	4 (0.8)	2 (0.4)	1 (0.2)	0 (0.0)	3 (0.6)	3 (0.6)	1 (0.2)	15 (2.9)
더 높은 근무평점을 받음.	33 (6.4)	29 (5.6)	6 (1.2)	7 (1.4)	1 (0.2)	0 (0.0)	3 (0.6)	1 (0.2)	0 (0.0)	80 (15.5)
창업한 회사의 매출액등이 증가됨.	1 (0.2)	3 (0.6)	2 (0.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 (1.2)
기타와 같은 보상을 받음.	0 (0.0)	0 (0.0)	0 (0.0)	0 (0.0)	1 (0.2)	0 (0.0)	0 (0.0)	1 (0.2)	0 (0.0)	2 (0.4)
시설장, 부서장등의 직무를 수행 하게 됨.	45 (8.7)	1 (0.2)	2 (0.4)	25 (4.9)	0 (0.0)	0 (0.0)	20 (3.9)	0 (0.0)	0 (0.0)	93 (18.1)
변화가 없거나 직무관련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	0 (0.0)	7 (1.4)	18 (3.5)	21 (4.1)	22 (4.3)	28 (5.4)	7 (1.4)	6 (1.2)	2 (0.4)	111 (21.6)
합계	93 (18.1)	50 (9.7)	50 (9.7)	58 (11.3)	50 (9.7)	50 (9.7)	64 (12.4)	50 (9.7)	50 (9.7)	515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13>과 같다. 취득자격이 현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취득 자격·면허증이 취업에 절대적 필수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용효과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비록 적은 비중이지만 “취득자격이 취업 시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사서 및 준사서의 경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13> 취득자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취업 절대적 조건	38 (76.0)	39 (78.0)	31 (62.0)	35 (70.0)	33 (66.0)	17 (34.0)	46 (92.0)	48 (96.0)	48 (96.0)	335 (74.4)
개업 시 필요	2 (4.0)	6 (12.0)	5 (10.0)	0 (0.0)	0 (0.0)	0 (0.0)	1 (2.0)	0 (0.0)	0 (0.0)	14 (3.1)
취업 우대	6 (12.0)	2 (4.0)	5 (10.0)	0 (0.0)	4 (8.0)	5 (10.0)	3 (6.0)	1 (2.0)	2 (4.0)	28 (6.2)
취업 시 도움 못됨.	0 (0.0)	1 (2.0)	7 (14.0)	3 (6.0)	1 (2.0)	5 (10.0)	0 (0.0)	0 (0.0)	0 (0.0)	17 (3.8)
취업 시 거의 도움 못됨.	4 (8.0)	0 (0.0)	0 (0.0)	4 (8.0)	11 (22.0)	13 (26.0)	0 (0.0)	0 (0.0)	0 (0.0)	32 (7.1)
해당사항 없음.	0 (0.0)	2 (4.0)	2 (4.0)	8 (16.0)	1 (2.0)	10 (20.0)	0 (0.0)	1 (2.0)	0 (0.0)	24 (5.3)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취득자격이 현업에 미치는 혜택(도움)은 <표 5-14>와 같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이다. 따라서 조사자격이 현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교육, 학원 및 훈련시설에서 일정수준의 기간과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특성과 교육과정이 현장위주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4> 자격취득이 현업에 미치는 혜택(도움)

(단위: 명, %)

자격 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거의 도움이 안 된다.	0 (0.0)	0 (0.0)	0 (0.0)	5 (10.0)	7 (14.0)	12 (24.0)	0 (0.0)	0 (0.0)	0 (0.0)	24 (5.3)
도움이 안 된다.	2 (4.0)	2 (4.0)	1 (2.0)	0 (0.0)	2 (4.0)	5 (10.0)	1 (2.0)	0 (0.0)	0 (0.0)	13 (2.9)
보통	3 (6.0)	8 (16.0)	5 (10.0)	10 (20.0)	13 (26.0)	10 (20.0)	2 (4.0)	2 (4.0)	0 (0.0)	53 (11.8)
도움이 된다.	26 (52.0)	23 (46.0)	29 (58.0)	22 (44.0)	18 (36.0)	17 (34.0)	24 (48.0)	24 (48.0)	29 (58.0)	212 (47.1)
매우 도움이 된다.	19 (38.0)	17 (34.0)	15 (30.0)	13 (26.0)	10 (20.0)	6 (12.0)	23 (46.0)	24 (48.0)	21 (42.0)	148 (32.9)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이직과 전직에 대한 의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득 자격을 활용하여 이직 및 전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5> 참조). 특이한 것은 자격등급이 높을수록, 취득자격·면허를 활용한 이직·전직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자격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취득자격을 활용하여 이직 및 전직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는 취득자격을 활용하여 이직 또는 전직할 의향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보육교사와 정사서 및 준사서는 취득자격을 활용하여 이직 및 전직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고용변화 발생 시 취득자격·면허를 활용한 이·전직 의향

(단위: 명, %)

항목 \ 자격 종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거의 그렇지 않다.	8 (16.0)	4 (8.0)	2 (4.0)	9 (18.0)	2 (4.0)	0 (0.0)	6 (12.0)	2 (4.0)	0 (0.0)	33 (7.3)
그렇지 않다.	15 (30.0)	28 (56.0)	9 (18.0)	12 (24.0)	10 (20.0)	4 (8.0)	7 (14.0)	2 (4.0)	1 (2.0)	88 (19.6)
보통	2 (4.0)	6 (12.0)	3 (6.0)	7 (14.0)	4 (8.0)	3 (6.0)	9 (18.0)	17 (34.0)	18 (36.0)	69 (15.3)
그렇다.	10 (20.0)	11 (22.0)	31 (62.0)	18 (36.0)	30 (60.0)	41 (82.0)	12 (24.0)	17 (34.0)	19 (38.0)	189 (42.0)
매우 그렇다.	15 (30.0)	1 (2.0)	5 (10.0)	4 (8.0)	4 (8.0)	2 (4.0)	16 (32.0)	12 (24.0)	12 (24.0)	71 (15.8)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조사 자격 취득자의 대우 및 수혜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자격의 경우 자신이 받는 대우 및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자격에 대한 우대(법적 우대 가산점 등)요인 미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면허 취득자의 과잉배출”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자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취득자격·면허에 대한 우대요인 미흡”, “자격면허 취득자의 과잉 배출”, “낮은 임금 및 예산 책정”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사서 및 준사서는 “취득자격·면허에 대한 우대요인 미흡”, “취득자격관련 산업의 침체(경기적 요인에 의한 산업수요 감소)”, “자격면허 취득자의 과잉 배출”순, 보육교사는 “취득자격·면허에 대한 우대요인 미흡”, “자격면허 취득자의 과잉 배출”, “취득자격관련 산업의 침체(경기적 요인에 의한 산업수요 감소)”순으로 나타났다.

<표 5-16> 자격취득자의 노력·능력대비 대우 수혜 정도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거의 그렇지 않다.	1 (2.0)	4 (8.0)	1 (2.0)	0 (0.0)	4 (8.0)	5 (10.0)	3 (6.0)	9 (18.0)	11 (22.0)	38 (8.4)
그렇지 않다.	41 (82.0)	32 (64.0)	25 (50.0)	19 (38.0)	29 (58.0)	30 (60.0)	27 (54.0)	25 (50.0)	17 (34.0)	245 (54.4)
보통	4 (8.0)	6 (12.0)	16 (32.0)	18 (36.0)	8 (16.0)	7 (14.0)	9 (18.0)	10 (20.0)	17 (34.0)	95 (21.1)
그렇다.	4 (8.0)	5 (10.0)	8 (16.0)	12 (24.0)	7 (14.0)	4 (8.0)	11 (22.0)	6 (12.0)	5 (10.0)	62 (13.8)
매우 그렇다.	0 (0.0)	3 (6.0)	0 (0.0)	1 (2.0)	2 (4.0)	4 (8.0)	0 (0.0)	0 (0.0)	0 (0.0)	10 (2.2)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다음으로 자격·면허 취득과정의 산업현장 직무내용 반영 정도는 <표 5-17>과 같다. 조사 결과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검정내용이 산업현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과정이수자격이 아닌 검정자격인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교육과 산업현장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³⁸⁾.

여기서 산업현장의 직무수행내용에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검정방법에 있어서 실기검정이 미흡하다.”,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격검정이 너무 쉽게(예: 무시험 자격부여 등) 이루어진다.”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사서 및 준사서, 그리고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검정이 너무 쉽게(예: 무시험 자격부여 등) 이루어진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8) 현재 교육연계자격(과정이수자격증)이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최소한의 규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이수의 다른 자격종목보다 산업현장성이 떨어지는 것은 검정자격의 효율성을 의심케 한다.

<표 5-17> 자격·면허 취득과정의 산업현장 직무내용 반영 정도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거의 적절하지 않다	6 (12.0)	2 (4.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 (1.8)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6 (32.0)	3 (6.0)	1 (2.0)	4 (8.0)	14 (28.0)	3 (6.0)	2 (4.0)	2 (4.0)	1 (2.0)	46 (10.2)
보통	5 (10.0)	13 (26.0)	6 (12.0)	28 (56.0)	1 (2.0)	11 (22.0)	9 (18.0)	14 (28.0)	9 (18.0)	96 (21.3)
대체로 적절하다	22 (44.0)	28 (56.0)	42 (84.0)	18 (36.0)	35 (70.0)	36 (72.0)	36 (72.0)	32 (64.0)	39 (78.0)	288 (64.0)
매우 적절하다	1 (2.0)	4 (8.0)	1 (2.0)	0 (0.0)	0 (0.0)	0 (0.0)	3 (6.0)	2 (4.0)	1 (2.0)	12 (2.7)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취득 국가자격 및 면허가 국민 및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적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는 <표 5-18>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취득 국가자격 및 면허가 공공의 이익에 대체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은 문항특성상 예측된 결과이나, 그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록 절대 값은 큰 의미가 없더라도 상대적인 비교는 일반적인 상식적 범주 안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다”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에는 국가자격·면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적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5-18> 취득 국가자격 및 면허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거의 그렇지 않다.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1 (0.2)
그렇지 않다.	3 (6.0)	4 (8.0)	1 (2.0)	1 (2.0)	2 (4.0)	5 (10.0)	0 (0.0)	0 (0.0)	1 (2.0)	17 (3.8)
보통	4 (8.0)	11 (22.0)	1 (2.0)	22 (44.0)	12 (24.0)	9 (18.0)	1 (2.0)	11 (22.0)	1 (2.0)	72 (16.0)
그렇다.	35 (70.0)	20 (40.0)	36 (72.0)	27 (54.0)	35 (70.0)	35 (70.0)	39 (78.0)	32 (64.0)	42 (84.0)	301 (66.9)
매우 그렇다.	8 (16.0)	15 (30.0)	12 (24.0)	0 (0.0)	1 (2.0)	0 (0.0)	10 (20.0)	7 (14.0)	6 (12.0)	59 (13.1)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자격의 법규제성에 관련된 자격·면허 취득자의 배타적 직무수행 타당성은 <표 5-19>와 같다. 이 설문에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자격·면허 취득자만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타당 또는 매우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설문 결과 역시 응답자가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절대적 비교보다 상대적 비교가 시사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9> 자격·면허 취득자의 배타적 직무수행 타당성

(단위: 명, %)

항목 \ 자격종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거의 타당하지 않다.	0 (0.0)	0 (0.0)	0 (0.0)	1 (2.0)	2 (4.0)	0 (0.0)	0 (0.0)	0 (0.0)	0 (0.0)	3 (0.7)
타당하지 않다.	1 (2.0)	3 (6.0)	0 (0.0)	0 (0.0)	2 (4.0)	13 (26.0)	0 (0.0)	0 (0.0)	0 (0.0)	19 (4.2)
보통	3 (6.0)	3 (6.0)	2 (4.0)	15 (30.0)	14 (28.0)	13 (26.0)	0 (0.0)	6 (12.0)	2 (4.0)	58 (12.9)
타당하다.	30 (60.0)	23 (46.0)	26 (52.0)	29 (58.0)	26 (52.0)	7 (14.0)	25 (50.0)	24 (48.0)	35 (70.0)	225 (50.0)
매우 타당하다.	16 (32.0)	21 (42.0)	22 (44.0)	5 (10.0)	6 (12.0)	17 (34.0)	25 (50.0)	20 (40.0)	13 (26.0)	145 (32.2)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또한 실질적으로 현재 취득한 자격·면허증 없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이 없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5-20> 참조). 이는 이 자격과 직무(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20> 현업에서 비자격(무면허)자의 유사직무 수행 정도

(단위: 명, %)

항목 \ 자격종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매우 많다.	0 (0.0)	1 (2.0)	0 (0.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2 (0.4)
많다.	4 (8.0)	4 (8.0)	5 (10.0)	4 (8.0)	0 (0.0)	26 (52.0)	0 (0.0)	0 (0.0)	1 (2.0)	44 (9.8)
보통	4 (8.0)	5 (10.0)	15 (30.0)	10 (20.0)	5 (10.0)	8 (16.0)	2 (4.0)	3 (6.0)	0 (0.0)	52 (11.6)
없다.	30 (60.0)	25 (50.0)	18 (36.0)	14 (28.0)	10 (20.0)	15 (30.0)	28 (56.0)	27 (54.0)	20 (40.0)	187 (41.6)
거의 없다.	12 (24.0)	15 (30.0)	12 (24.0)	22 (44.0)	35 (70.0)	0 (0.0)	20 (40.0)	20 (40.0)	29 (58.0)	165 (36.7)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그러면 현재 동 자격증 취득 후 경제활동 비종사자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5-21>과 같다. 응답을 살펴보면 “많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산업과 직종의 특성이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자격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공급 통제에 특징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앞서 제시된 “현재 취득한 자격·면허증 없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이 “없다”나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자격에 대한 법적·전문적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자격의 합격률이 현재 시장의 성장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는 자격을 통하여 초과 공급되는 노동력을 생산하는 것보다 산업의 크기와 성장률을 고려한 균형 노동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1> 자격·면허 취득자의 경제활동 비종사자의 수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매우 많다.	10 (20.0)	4 (8.0)	0 (0.0)	0 (0.0)	0 (0.0)	1 (2.0)	0 (0.0)	3 (6.0)	4 (8.0)	22 (4.9)
많다.	30 (60.0)	32 (64.0)	17 (34.0)	3 (6.0)	24 (48.0)	42 (84.0)	24 (48.0)	28 (56.0)	27 (54.0)	227 (50.4)
보통	7 (14.0)	7 (14.0)	16 (32.0)	8 (16.0)	19 (38.0)	3 (6.0)	19 (38.0)	17 (34.0)	19 (38.0)	115 (25.6)
없다.	1 (2.0)	2 (4.0)	5 (10.0)	17 (34.0)	6 (12.0)	3 (6.0)	2 (4.0)	1 (2.0)	0 (0.0)	37 (8.2)
거의 없다.	2 (4.0)	5 (10.0)	12 (24.0)	22 (44.0)	1 (2.0)	1 (2.0)	5 (10.0)	1 (2.0)	0 (0.0)	49 (10.9)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이 자격의 취득자격·면허분야의 공급 인력 규모는 <표 5-22>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많다”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다”가 24%로 나타나 산업수요보다 많다는 의견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절하다”가 15.6%로 나타났다.

<표 5-22> 취득 자격·면허분야의 공급 인력규모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			사서			보육교사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3급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다.	18 (36.0)	21 (42.0)	8 (16.0)	1 (2.0)	43 (86.0)	7 (14.0)	5 (10.0)	3 (6.0)	2 (4.0)	108 (24.0)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많다.	23 (46.0)	17 (34.0)	40 (80.0)	29 (58.0)	6 (12.0)	38 (76.0)	21 (42.0)	27 (54.0)	24 (48.0)	225 (50.0)
적절하다.	7 (14.0)	7 (14.0)	2 (4.0)	19 (38.0)	1 (2.0)	3 (6.0)	14 (28.0)	9 (18.0)	8 (16.0)	70 (15.6)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부족하다.	1 (2.0)	5 (10.0)	0 (0.0)	1 (2.0)	0 (0.0)	2 (4.0)	10 (20.0)	11 (22.0)	16 (32.0)	46 (10.2)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1 (2.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합계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50 (100.0)	45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설문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제3절 전문가조사 및 소비자조사 분석결과

국가자격 서비스 수요자 의견조사는 총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국가자격 전문가조사는 총 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서비스 의견조사 및 전문가조사 대상은 사회복지사(1급~3급), 정사서(1급~2급) 및 준사서, 보육교사(1급~3급)이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서비스 수요자 의견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표 5-23>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39명, 여성이 1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 자격의 수요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가 46명으로, 40세~49세의 45명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많으나 이 서비스의 수요자는 전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59명(61.5%), 자영업자가 20명(20.8%), 임시근로자가 13명(13.5%), 무급가족종사자가 2명(2.1%), 일용직과 고용주가 각각 1명(1%)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60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 대졸 59명(39.3%), 그리고 2, 3년제 전문대졸, (석/박사) 대학원졸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가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표 5-23>의 하단부와 같다. 전문가조사의 경우, 보육 42명(34.7%), 사서 40명(33.1%), 사회복지 39명(32.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 직업은 1급 소지자가 39명(32%)으로 가장 높았으며, 협회종사자 32명(26.2%), 시설장·시설관리자 31명(25.4%), 교수 11명(9%), 해당부처공무원 5명(4.1%), 자격취득관련 교육훈련 강사 4명(3.3%)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20년 이상이 41명(33.9%)으로 가장 많으며 10년~15년 미만 30명(24.8%), 5년~10년 미만 24명(19.8%), 15년~20년 미만 21명(17.4%), 5년 미만 5명(4.1%)순으로 나타났다.

<표 5-23> 자격의 경제적 효과 서비스 수요자·전문가조사 응답자특성

(단위: 명, %)

조사 대상	구분	빈도 수	퍼센트 (%)	
서비스 수요자 조사	성별	남성	39	26.0
		여성	111	74.0
	전 체		150	100.0
	연령	20세~29세	46	30.7
		30세~39세	38	25.3
		40세~49세	45	30.0
		50세~59세	21	14.0
	전 체		150	100.0
	현 직장에서 중사상 지위	상용	59	61.5
		임시	13	13.5
		일용	1	1.0
		고용주	1	1.0
		자영업자	20	20.8
		무급가족종사자	2	2.1
	전 체		96	100.0
	최종학력	고졸	60	40.0
2, 3년제 전문대졸		25	16.7	
4년 대졸		59	39.3	
(석/박사) 대학원졸		6	4.0	
전 체		150	100.0	
관련분야	사회복지	39	32.2	
	보육	42	34.7	
	사서	40	33.1	
	전 체		121	100.0
직업	교수	11	9.0	
	시설장, 시설관리자	31	25.4	
	협회종사자	32	26.2	
	자격취득관련 교육 훈련강사	4	3.3	
	해당부처공무원	5	4.1	
	1급소지자	39	32.0	
전 체		122	100.0	
경력	5년미만	5	4.1	
	5년~10년미만	24	19.8	
	10년~15년미만	30	24.8	
	15년~20년미만	21	17.4	
	20년 이상	41	33.9	
전 체		121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자격·면허 취득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표 5-24>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의 자격·면허 취득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경험 정도는 이 자격 종목에서 전체적으로 “보통”과 “자주 접한다”가 각각 38%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견에서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취득자조사 “취득 자격·면허분야의 공급 인력규모”의 결과 값에서 자격 취득자들이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견이 전체 74%를 차지한 것과 일치한다.

반면, 이 종목의 전문가들이 직무교육 수행·연구·평가 등의 일을 수행한 적이 있는지에 관련된 조사내용은 <표 5-24>와 같다. 즉, 사회복지사의 경우 직무교육 외 수행 정도가 “자주 수행한다”(56.4%), “매우 자주 수행한다”(41%)로 나타난 반면, 사서의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다”(40%)와 “보통”(20%)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보통”(3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자주 수행한다”(28.6%)와 “수행하지 않는다”(26.2%)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아 사서의 경우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와는 달리 보수교육과 같은 형태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5-24> 자격·면허취득자 제공의 서비스 경험(직무교육 외 수행)

(단위: 명, %)

항목	서비스 수요자조사				전문가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거의 접하지 않는다.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	3 (6.1)	0 (0.0)	0 (0.0)	3 (2.0)	0 (0.0)	3 (7.1)	8 (20.0)	11 (9.1)
접하지 않는다. (수행하지 않는다.)	10 (20.4)	9 (18.0)	2 (3.9)	21 (14.0)	0 (0.0)	11 (26.2)	16 (40.0)	27 (22.3)
보통	23 (46.9)	11 (22.0)	23 (45.1)	57 (38.0)	1 (2.6)	13 (31.0)	8 (20.0)	22 (18.2)
자주 접한다. (자주 수행한다.)	12 (24.5)	25 (50.0)	20 (39.2)	57 (38.0)	22 (56.4)	12 (28.6)	6 (15.0)	40 (33.1)
매우 자주 접한다. (매우 자주 수행한다.)	1 (2.0)	5 (10.0)	6 (11.8)	12 (8.0)	16 (41.0)	3 (7.1)	2 (5.0)	21 (17.4)
합계	49 (100.0)	50 (100.0)	51 (100.0)	150 (100.0)	39 (100.0)	42 (100.0)	40 (100.0)	121 (100.0)

주: 1) ()안의 항목은 전문가조사 설문문항임.

2) χ^2 값은 서비스수요자조사 24.56, 전문가조사 61.88 임.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자격·면허의 전문성 인증에 대한 의견은 <표 5-25>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전문성 확보 인증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는 전체의 56.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1.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서비스 수요자들은 전반적으로 국가자격과 면허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취득자조사의 “자격·면허 취득과정의 산업현장 직무내용 반영 정도”에서 조사된 내용과 일치한다. 즉, 취득자조사에서 자격 취득과정 및 검정내용의 산업현장 직무수행에 대한 조사 결과 세 자격에서 모두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검정내용이 산업현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응답한 결과로 “자격·면허의 전문성 인증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조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모두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강하게 긍정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이 사회복지사의 경우 71.8%, 보육교사의 경우 95.3%, 사서의 경우 90%로 이 질문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보다 전문가가 더 강하게 긍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5> 자격·면허의 전문성 인증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서비스 수요자조사				전문가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그렇지 않다.	1 (2.0)	0 (0.0)	6 (11.8)	7 (4.7)	6 (15.4)	1 (2.4)	0 (0.0)	7 (5.8)
보통	12 (24.5)	13 (26.0)	22 (43.1)	47 (31.3)	5 (12.8)	1 (2.4)	4 (10.0)	10 (8.3)
그렇다.	31 (63.3)	32 (64.0)	22 (43.1)	85 (56.7)	14 (35.9)	27 (64.3)	29 (72.5)	70 (57.9)
매우 그렇다.	5 (10.2)	5 (10.0)	1 (2.0)	11 (7.3)	14 (35.9)	13 (31.0)	7 (17.5)	34 (28.1)
합계	49 (100.0)	50 (100.0)	51 (100.0)	150 (100.0)	39 (100.0)	42 (100.0)	40 (100.0)	121 (100.0)

주: χ^2 값은 서비스수요자조사 17.55, 전문가조사 19.85 임.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표 5-26>은 자격·면허가 가지는 직무 전문성(직무의 복잡도, 영향력, 중요도, 자율성)에 대한 서비스 수요자 의견과 전문가 의견의 평균값 등을 나타낸 표이다.

<표 5-26> 자격·면허의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자격 종목	서비스 수요자조사			전문가조사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사회복지사	5.57	49	1.155	7.79	39	1.056
보육교사	5.20	50	1.565	6.69	42	1.423
사서	4.24	51	1.607	6.38	40	.925
합계	4.99	150	1.557	6.94	121	1.299

주: χ^2 값은 서비스수요자조사 44.01, 전문가조사 48.48 임.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자격·면허 취득자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보육, 사서 서비스의 접근용이 정도에 대한 수요자 의견조사 결과는 <표 5-27>과 같다. 서비스 수요자들은 세 자격 모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사회복지사는 44.9%, 보육교사는 62%, 사서는 49%로 나타났다. 이는 취득자조사에서 “취득 자격·면허분야의 공급 인력규모”에 대한 응답 결과와 일치한다. 즉, 취득자들은 공급 인력규모를 산업수요보다 많다고 응답함으로써 초과 공급된 인력의 영향으로 인해 서비스 수요자들이 이 서비스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취득자의 대부분이 “취득 국가자격 및 면허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공공적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서비스 수요자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또한 <표 5-27>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자격에서 모두 서비스 수요자조사와 동일하게 “보통”과 “그렇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그렇다”라는 의견이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서의 경우는 72.5%, 그리고 보육교사의 경우는 57.1%로 나타났다.

<표 5-27> 자격·면허 취득자 서비스의 접근용이 정도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서비스 수요자조사				전문가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1 (2.0)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그렇지 않다.	5 (10.2)	1 (2.0)	2 (3.9)	8 (5.3)	0 (0.0)	3 (7.1)	3 (7.5)	6 (5.0)
보통	17 (34.7)	13 (26.0)	17 (33.3)	47 (31.3)	2 (5.1)	12 (28.6)	8 (20.0)	22 (18.2)
그렇다.	22 (44.9)	31 (62.0)	25 (49.0)	78 (52.0)	32 (82.1)	24 (57.1)	29 (72.5)	85 (70.2)
매우 그렇다.	4 (8.2)	5 (10.0)	7 (13.7)	16 (10.7)	5 (12.8)	3 (7.1)	0 (0.0)	8 (6.6)
합계	49 (100.0)	50 (100.0)	51 (100.0)	150 (100.0)	39 (100.0)	42 (100.0)	40 (100.0)	121 (100.0)

주: χ^2 값은 서비스수요자조사 8.44, 전문가조사 15.84임.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표 5-28>은 자격·면허의 직무전문성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소득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이다. <표 5-28>에 의하면 서비스 수요자들은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그리고 사서 종사자들의 소득이 보통이라는 의견이 57%,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28%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요자들은 이 서비스 제공자들의 임금수준을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취득자조사에서 “자격취득자의 노력·능력 대비 대우 수혜 정도”를 묻는 의견에는 “그렇지 않다”(54.4%)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서비스 수요자들과 서비스 공급자들이 각기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조사 내용 또한 <표 5-28>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전문가 응답자의 76.9%가 종사자들의 소득 적절성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보육교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52.4%), “보통”(42.9%)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서의 경우 “그렇다”(40%), “보통”(37.5%)로 응답하였다.

<표 5-28> 자격·면허 직무전문성 대비 종사자의 소득 적절성

(단위: 명, %)

항목 \ 자격종목	서비스 수요자조사				전문가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4 (8.0)	0 (0.0)	4 (2.7)	0 (0.0)	0 (0.0)	0 (0.0)	29 (24.0)
그렇지 않다.	11 (22.4)	22 (44.0)	9 (17.6)	42 (28.0)	6 (15.4)	22 (52.4)	1 (2.5)	63 (52.1)
보통	31 (63.3)	22 (44.0)	33 (64.7)	86 (57.3)	30 (76.9)	18 (42.9)	15 (37.5)	19 (15.7)
그렇다.	7 (14.3)	1 (2.0)	9 (17.6)	17 (11.3)	2 (5.1)	1 (2.4)	16 (40.0)	10 (8.3)
매우 그렇다.	0 (0.0)	1 (2.0)	0 (0.0)	1 (0.7)	1 (2.6)	1 (2.4)	8 (20.0)	0 (0.0)
합계	49 (100.0)	50 (100.0)	51 (100.0)	150 (100.0)	39 (100.0)	42 (100.0)	40 (100.0)	121 (100.0)

주: χ^2 값은 서비스수요자조사 25.41, 전문가조사 62.50 임.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표 5-29>은 국가자격 및 면허 취득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대한 질문으로, 수요자들은 이 자격의 서비스 가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56.7%)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높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6%를 차지했다. 이는 취득자조사 설문 문항 “자격취득자의 노력·능력대비 대우 수혜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즉, 취득자 입장에서는 취득자의 노력이나 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자격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같은 자격 서비스의 가격수준이 “보통”이거나 “높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는 수요자 의견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 역시 자격·면허 취득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 수준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62%)하였다.

<표 5-29> 자격·면허 취득자의 서비스가격 수준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서비스 수요자조사				전문가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매우 낮다.	0 (0.0)	0 (0.0)	1 (2.0)	1 (0.7)	1 (2.6)	1 (2.4)	0 (0.0)	2 (1.7)
낮다.	10 (20.4)	2 (4.0)	11 (21.6)	23 (15.3)	16 (41.0)	6 (14.3)	7 (17.5)	29 (24.0)
보통	29 (59.2)	22 (44.0)	34 (66.7)	85 (56.7)	18 (46.2)	25 (59.5)	32 (80.0)	75 (62.0)
높다.	10 (20.4)	24 (48.0)	5 (9.8)	39 (26.0)	4 (10.3)	9 (21.4)	1 (2.5)	14 (11.6)
매우 높다.	0 (0.0)	2 (4.0)	0 (0.0)	2 (1.3)	0 (0.0)	1 (2.4)	0 (0.0)	1 (0.8)
합계	49 (100.0)	50 (100.0)	51 (100.0)	150 (100.0)	39 (100.0)	42 (100.0)	40 (100.0)	121 (100.0)

주: χ^2 값은 서비스수요자조사 29.62, 전문가조사 20.09 임.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표 5-30>은 국가자격 및 면허 취득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서비스 수요자들은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그리고 사서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7%이며,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7.3%이다. 이는 서비스 수요자가 전반적으로 이 자격 취득자의 서비스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취득자조사에서 수행한 “취득 자격과 직업(직무)내용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나타난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 즉 취득자격과 현재 직무(직업)내용 관련성에 대해 자격 취득자들은 전체적으로 일치 및 매우 일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취득 자격의 직무 일치도가 높아 자격 취득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조사 역시 <표 5-30>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 역시 자격 취득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 만족을 “높다”(47.9%), “보통”(39.7%)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5-30> 자격·면허 취득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자격을종목 항목	서비스 수요자조사				전문가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낮다.	0 (0.0)	1 (2.0)	2 (3.9)	3 (2.0)	2 (5.1)	10 (23.8)	1 (2.5)	13 (10.7)
보통	21 (42.9)	28 (56.0)	24 (47.1)	73 (48.7)	12 (30.8)	18 (42.9)	18 (45.0)	48 (39.7)
높다.	27 (55.1)	21 (42.0)	23 (45.1)	71 (47.3)	25 (64.1)	14 (33.3)	19 (47.5)	58 (47.9)
매우 높다.	1 (2.0)	0 (0.0)	2 (3.9)	3 (2.0)	0 (0.0)	0 (0.0)	2 (5.0)	2 (1.7)
합계	49 (100.0)	50 (100.0)	51 (100.0)	150 (100.0)	39 (100.0)	42 (100.0)	40 (100.0)	121 (100.0)

주: χ^2 값은 서비스수요자조사 5.76, 전문가조사 19.56 임.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표 5-31>은 서비스 수요자조사와 전문가조사 시 동일한 설문 문항에 대한 조사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표 5-31> 서비스 수요자·전문가조사 비교분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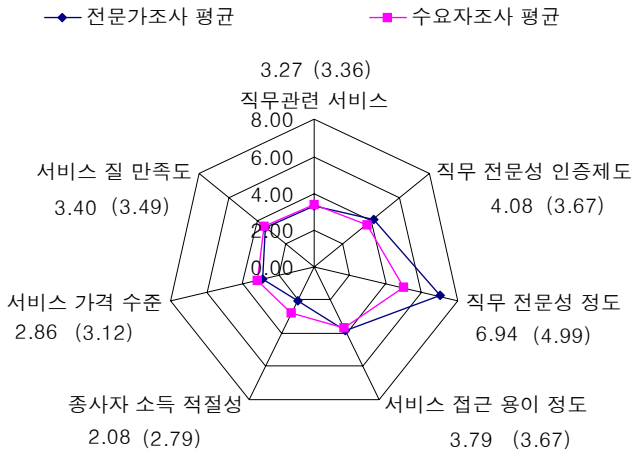
구분	서비스 수요자조사		전문가조사		t 값 (유의수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관련 서비스	3.36	0.89	3.27	1.24	-0.67 (0.503)
직무 전문성 인증제도	3.67	0.68	4.08	0.77	4.71 (0.000)
직무 전문성 수준	4.99	1.55	6.94	1.29	11.018 (0.000)
서비스 접근용이 정도	3.67	0.76	3.79	0.63	1.365 (0.173)
종사자 소득 적절성	2.79	0.69	2.08	0.85	-7.547 (0.000)
서비스 가격 수준	3.12	0.69	2.86	0.66	-3.134 (0.002)
서비스 질 만족도	3.49	0.57	3.40	0.70	0.009 (0.256)

주: 서비스 수요자조사의 관측치는 121이며, 전문가조사의 관측치는 150임.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동일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및 소비자 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해당 서비스의 인증제도의 필요성, 서비스의 전문성수준, 서비스 종사자의 적절성 소득, 서비스 가격수준 등과 관련한 설문에 전문가와 소비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서비스의 접근성 정도 및 서비스 질의 만족도는 두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비록 무시험 자격부여이지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교육연계자격(과정이수 자격)이 서비스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자격제도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5-1]은 전문가집단과 소비자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1]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I) 전문가·수요자 조사 평균분석



주: ()은 전문가조사 평균값

다음 <표 5-32>~<표 5-39>는 취득자의 고용·임금효과, 검정체계, 제도일반에 대한 전문가조사의 내용만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 5-32>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자격·면허가 취득자의 노력 및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분

석·정리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사서의 경우는 1급을 제외한 2급과 준 사서에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된 것을 볼 수 있다.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면허 취득자의 과잉 배출”과 “취득자격·면허관련 지식·스킬의 전문성 및 현장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면허 취득자의 과잉 배출”과 “취득자격·면허에 대한 우대(법적 우대, 가산점 등)요인 미흡”이 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를 <표 5-16>의 취득자조사와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의 경우 전문가들이 오히려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2> 자격취득자의 노력·능력대비 대우 수혜 정도(전문가 조사)

(단위: 명, %)

자격종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전혀 그렇지 않다.	5 (12.8)	8 (20.5)	9 (23.1)	17 (40.5)	16 (39.0)	15 (36.6)	2 (5.0)	0 (0.0)	0 (0.0)	72 (19.9)
그렇지 않다.	29 (74.4)	28 (71.8)	27 (69.2)	21 (50.0)	23 (56.1)	23 (56.1)	23 (57.5)	11 (27.5)	13 (32.5)	198 (54.8)
보통	4 (10.3)	3 (7.7)	3 (7.7)	3 (7.1)	0 (0.0)	2 (4.9)	4 (10.0)	11 (27.5)	14 (35.0)	44 (12.2)
그렇다.	1 (2.6)	0 (0.0)	0 (0.0)	1 (2.4)	2 (4.9)	1 (2.4)	10 (25.0)	18 (45.0)	13 (32.5)	46 (12.7)
매우 그렇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	0 (0.0)	0 (0.0)	1 (0.3)
합계	39 (100.0)	39 (100.0)	39 (100.0)	42 (100.0)	41 (100.0)	41 (100.0)	40 (100.0)	40 (100.0)	40 (100.0)	361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자격·면허취득이 관련 직무분야로의 고용(취업, 재취업,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표 5-33>과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분야는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3급, 사서 1급으로 나타났으며 사서 2급과 준사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사회복지사 2급과 3급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5-33> 자격·면허취득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단위: 명, %)

항목 \ 자격종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1 (2.6)	4 (10.3)	0 (0.0)	0 (0.0)	1 (2.4)	0 (0.0)	0 (0.0)	1 (2.5)	7.00 (1.9)
그렇지 않다.	7 (17.9)	23 (59.0)	23 (59.0)	4 (9.5)	7 (17.1)	6 (14.6)	3 (7.5)	3 (7.5)	9 (22.5)	85.00 (23.5)
보통	8 (20.5)	9 (23.1)	7 (17.9)	9 (21.4)	3 (7.3)	5 (12.2)	17 (42.5)	19 (47.5)	21 (52.5)	98.00 (27.1)
그렇다.	21 (53.8)	5 (12.8)	4 (10.3)	25 (59.5)	21 (51.2)	20 (48.8)	20 (50.0)	18 (45.0)	9 (22.5)	143.00 (39.6)
매우 그렇다.	3 (7.7)	1 (2.6)	1 (2.6)	4 (9.5)	10 (24.4)	9 (22.0)	0 (0.0)	0 (0.0)	0 (0.0)	28.00 (7.8)
합계	39 (100.0)	39 (100.0)	39 (100.0)	42 (100.0)	41 (100.0)	41 (100.0)	40 (100.0)	40 (100.0)	40 (100.0)	361.00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다음은 자격·면허 시험내용이 산업현장의 수행직무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표이다. <표 5-34>에 따르면 사서를 제외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는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많은 전문가 분들이 답변을 한 반면 사서의 경우 “대체로 적절하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의 경우 그 이유를 사회복지사의 경우 “검정방법에 있어서 실기검정이 미흡하다.”라는 의견과 “자격검정이 너무 쉽게(예: 무시험 자격부여 등) 이루어진

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검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와 “전문자격·면허(예: 심시간호사, 아동간호사 등)가 아닌 포괄적 자격·면허부여(예: 간호사 등)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이 설문에 관련된 몇 가지 개방형 설문(open ended question)의 결과들을 요약·정리하면 무시험검정이 가지는 문제점, 포괄적 자격부여가 가지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분야별 세분화의 요구가 많았으며, 사서의 경우 보건의로, 법률, 과학기술 등과 같은 주제 분야의 주제사서 도입 의견이 많았다.

이 설문결과를 <표 5-17>의 취득자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의 경우 전문가 및 취득자 간에 커다란 의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취득자의 경우 자격·면허취득과정 및 검정내용이 산업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함께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안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34> 자격·면허 취득과정의 산업현장 직무내용 반영(전문가조사)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거의 적절하지 않다.	0 (0.0)	3 (7.7)	2 (5.1)	2 (4.8)	1 (2.4)	5 (11.9)	0 (0.0)	1 (2.5)	2 (5.0)	16 (4.4)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19 (48.7)	27 (69.2)	29 (74.4)	14 (33.3)	17 (40.5)	21 (50.0)	13 (32.5)	11 (27.5)	13 (32.5)	164 (45.2)
보통	5 (12.8)	3 (7.7)	2 (5.1)	10 (23.8)	9 (21.4)	6 (14.3)	1 (2.5)	4 (10.0)	5 (12.5)	45 (12.4)
대체로 적절하다.	15 (38.5)	6 (15.4)	6 (15.4)	16 (38.1)	15 (35.7)	10 (23.8)	26 (65.0)	24 (60.0)	20 (50.0)	138 (38.0)
합계	39 (100.0)	39 (100.0)	39 (100.0)	42 (100.0)	42 (100.0)	42 (100.0)	40 (100.0)	40 (100.0)	40 (100.0)	363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다음은 현재의 자격·면허의 직업(직무)전문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취득의 난이도 정도를 묻는 내용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서비스 수요자 의견은 <표 5-35>와 같다. 이 표에는 사회복지, 보육, 사서분야의 전문가, 서비스 수요자 의견의 평균값이 나타나있다. 두 집단의 인식차이가 높다는 것은 검정체계가 잘못될 가능성을 높음을 의미한다. 사서의 경우 전문가조사와 소비자조사의 점수가 낮다. 이는 전문가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를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35> 자격·면허의 직업 전문성을 고려한 취득 난이도

(단위: 명)

구분	사회복지		보육		사서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문가조사	5.28	1.36	6.05	1.61	6.10	1.17	5.82	1.43
소비자조사	5.57	1.15	5.20	1.56	4.24	1.61	4.99	1.56
차이	-0.29	-	0.85	-	1.86	-	0.82	-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현재 국가자격·면허가 국민 및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적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표 5-36>과 같다. 이 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전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전문가 들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공정을 보였다. 이는 사서의 직무서비스가 노동시장 및 기술변화에 따라 공공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표 5-18>의 취득자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전문가들이 이 서비스의 중요성과 공공적 이익기여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5-36> 취득 국가자격(면허)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전문가조사)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거의 그렇지 않다.	0 (0.0)	0 (0.0)	1 (2.6)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2 (0.6)
그렇지 않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	1 (0.3)
보통	0 (0.0)	1 (2.6)	1 (2.6)	2 (4.8)	3 (7.1)	7 (16.7)	0 (0.0)	0 (0.0)	6 (15.0)	20 (5.5)
그렇다.	26 (66.7)	25 (64.1)	25 (64.1)	25 (59.5)	23 (54.8)	20 (47.6)	39 (97.5)	40 (100.0)	33 (82.5)	256 (70.5)
매우 그렇다.	13 (33.3)	13 (33.3)	12 (30.8)	15 (35.7)	16 (38.1)	14 (33.3)	1 (2.5)	0 (0.0)	0 (0.0)	84 (23.1)
합계	39 (100.0)	39 (100.0)	39 (100.0)	42 (100.0)	42 (100.0)	42 (100.0)	40 (100.0)	40 (100.0)	40 (100.0)	363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전문가들이 생각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격·면허취득자만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묻는 의견조사 내용은 <표 5-37>과 같다. 표 내용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전 분야에 걸쳐 자격·면허취득자만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매우 타당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규제의 당위성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전문가 및 취득자 모두 절대적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서의 경우 절대적 당위성이 다른 자격종목과 비교하여 낮은 자기 평가를 보였다.

<표 5-37> 자격·면허 취득자의 배타적 직무수행 타당성(전문가조사)

(단위: 명, %)

자격종목 항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거의 타당하지 않다.	0 (0.0)	0 (0.0)	1 (2.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8)
타당하지 않다.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1 (0.8)
보통	0 (0.0)	0 (0.0)	0 (0.0)	0 (0.0)	0 (0.0)	3 (7.1)	0 (0.0)	0 (0.0)	6 (15.0)	9 (7.4)
타당하다.	1 (2.6)	1 (2.6)	2 (5.1)	16 (38.1)	23 (54.8)	22 (52.4)	32 (80.0)	40 (100.0)	33 (82.5)	57 (47.1)
매우 타당하다.	38 (97.4)	38 (97.4)	36 (92.3)	26 (61.9)	19 (45.2)	16 (38.1)	8 (20.0)	0 (0.0)	1 (2.5)	53 (43.8)
합계	39 (100.0)	39 (100.0)	39 (100.0)	42 (100.0)	42 (100.0)	42 (100.0)	40 (100.0)	40 (100.0)	40 (100.0)	121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표 5-38>은 자격·면허와 관련하여 공급된 인력규모의 적절성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표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전 분야에 걸쳐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많다.”라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보육교사의 경우 그 서비스인력의 공급규모가 부족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이는 <표 5-22>의 취득자조사와 같다.

일반적으로 응답자가 설문응답에 있어서, 자기이익(self-interest)을 반영하려는 경향을 감안하여 상대적인 관점에서 수치를 비교하여야 될 것이다.

<표 5-38> 취득 자격·면허분야의 공급 인력규모(전문가조사)

(단위: 명, %)

항목	자격종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1급	2급	준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다.	0 (0.0)	3 (7.7)	2 (5.1)	1 (2.4)	5 (11.9)	6 (14.3)	0 (0.0)	1 (2.5)	4 (10.0)	1 (0.8)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많다.	28 (71.8)	34 (87.2)	35 (89.7)	15 (35.7)	25 (59.5)	23 (54.8)	18 (45.0)	28 (70.0)	33 (82.5)	61 (50.4)			
적절하다.	9 (23.1)	2 (5.1)	2 (5.1)	24 (57.1)	9 (21.4)	7 (16.7)	17 (42.5)	8 (20.0)	1 (2.5)	50 (41.3)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부족하다.	2 (5.1)	0 (0.0)	0 (0.0)	2 (4.8)	3 (7.1)	6 (14.3)	4 (10.0)	3 (7.5)	2 (5.0)	8 (6.6)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2.5)	0 (0.0)	0 (0.0)	1 (0.8)			
합계	39 (100.0)	39 (100.0)	39 (100.0)	42 (100.0)	42 (100.0)	42 (100.0)	40 (100.0)	40 (100.0)	40 (100.0)	121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표 5-39>는 국가자격·면허와 관련된 자격·면허제도가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가장 많은 반면 보육교사의 경우 3급에 한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고, 1급과 2급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사서의 경우 “보통” 또는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9> 국가자격·면허 제도의 긍정적 운영 정도

(단위: 명, %)

항목 \ 자격종목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합계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준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1 (2.6)	0 (0.0)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0 (0.0)
그렇지 않다.	26 (66.7)	30 (76.9)	31 (79.5)	12 (28.6)	13 (31.0)	16 (38.1)	11 (27.5)	7 (17.5)	10 (25.0)	49 (40.5)
보통	6 (15.4)	4 (10.3)	4 (10.3)	18 (42.9)	17 (40.5)	15 (35.7)	14 (35.0)	17 (42.5)	17 (42.5)	38 (31.4)
그렇다.	7 (17.9)	4 (10.3)	4 (10.3)	10 (23.8)	12 (28.6)	10 (23.8)	15 (37.5)	16 (40.0)	13 (32.5)	32 (26.4)
매우 그렇다.	0 (0.0)	0 (0.0)	0 (0.0)	2 (4.8)	0 (0.0)	0 (0.0)	0 (0.0)	0 (0.0)	0 (0.0)	2 (1.7)
합계	39 (100.0)	39 (100.0)	39 (100.0)	42 (100.0)	42 (100.0)	42 (100.0)	40 (100.0)	40 (100.0)	40 (100.0)	121 (100.0)

자료: 국가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원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제4절 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자격(면허)취득자의 경제적 효과

이 조사를 통하여 자격취득자의 고용·소득과 관련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용과 관련한 효과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다만,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의 경우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동 자격종목들의 경우 경력자를 대상으로 승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우대·활용법령 상의 1급에 있어서 고용관련 우대·활용법령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격(면허)이 고용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다른 등급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상위등급의 고용효과는 있으나, 하위 등급의 고용

효과는 없다(이 효과는 사실상 경력에 따른 근속효과로 보임).

소득효과와 경우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① 각종 조사(취득자조사, 전문가조사 등)결과 ②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조사자료 활용한 결과(propensity score matching으로 추정) ③ 미국·일본과의 종사자 임금을 비교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홉 종목 모두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는 없다. 외국과 비교하여, 이들 자격종목의 상대적인 소득규모가 높지 않거나, 절대적 소득수준이 낮다[<표 5-41> - <표 5-42> 참조³⁹⁾].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는 무시험검정(사회복지사 1급 제외)으로 노동공급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의 양적 접근이 쉬우며, 교육연계자격(과정 이수자격)이므로 자격취득자 직무능력을 담보하고 있다. 다만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전문성에 따른 소득상의 절대적 처우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격종목이 가지는 산업적 특성 및 직종 특성의 결과로 보인다.

둘째, 1급의 경우에는 자격취득에 따른 소득효과가 있으나, 하위 등급의 경우 불분명하다. 이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하여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직무 간(사회복지, 보육, 사서), 자격등급 간에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사회복지사1급과 같이 검정시험을 보는 경우 자격(취득)에 따른 소득효과가 발생되며, 시설장 또는 창업 등이 가능한 보육교사 1급의 경우 소득효과가 발생된다. 사서의 경우 소득효과는 불분명하다[<표 5-4> 및 <표 5-42> 참조⁴⁰⁾]. 사서1급의 경우 소득효과가 발생된다면 이는 자격취득의 효과라기보다 근속효과 및 산업효과일 것이다.

39) 먼저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취득자 또는 직무종사자의 직무범위가 다르므로, 단순한 명칭을 통한 비교검토는 통계적 오류를 만들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직업에 있어서 국가간 비교를 잘못하고 있다.

40) 성향점수 매칭에 요구되는 유효관측치의 부족으로 인한 자료상의 한계로 사서의 경우 1·2급이 구분되지 않아 정확한 1급의 효과를 추정할 수 없었다.

다음은 소득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국가비교 및 성향점수 매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표 5-40>은 한·미·일의 직무를 비교한 것이다. 이는 국가 간의 자격취득자의 직무범위 및 수준이 다르므로, 명칭에 따른 단순비교는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41>은 국가 간 직무범위를 인지한 가운데 각종 분류상의 직업수행자의 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및 사서의 경우 미국이 상대적으로 소득 및 고용규모가 크지만 보육교사의 경우 일본이 고용규모 및 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육교사의 소득이 높은 곳은 공공부문에서 다수의 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5-40> 사회복지사·보육교사·사서 직업의 한·미·일 직무 비교

구분	직업명	직무개요(직무범위)
한국	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계획 수립·집행 • 육체적·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 도움 제공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복지서비스(조사, 상담, 지도) 업무 수행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위한 교육방법 연구, 적용 •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 제공 •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 형성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의 열람 및 대출, 장서보관 관련 업무 • 각종 문화 활동 기획·실시 • 독서지도, 지역문고 지원
미국	Social Wor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객에 도움 • 자녀나 배우자 학대를 포함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 도움 • 건강 관련 분야의 복지서비스 제공
	Child Care Wor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개설 • 언어개발, 사회적 기술 향상, 과학적 및 수학적 개념 인지 등의 학습 • 덜 조직화된 접근방법
	Libraria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서비스: 고객이 필요한 정보 안내 • 기술서비스: 도서입수 및 목록작성 • 행정서비스: 도서관의 관리와 기획 감독

<표 계속>

구분	직업명	직무개요(직무범위)
일 본	사회복지시설 개호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복지 시설에 입소하거나 통소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호·개호·원조 • 고용자의 상황에 따라 신체 시중이나 생활 전반의 원조 •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의 발달 단계나 개성을 고려한 생활 지도
	보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일상생활 습관을 아이에게 가르침. •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유아 교육 • 놀이를 통해 언어능력, 운동능력, 지적능력을 기름.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이용자 편의제공 • 도서관 자료 분류·관리 • 이용자별로 도서관의 이벤트나 특집 기획

자료: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분류정보집
 2. BL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6-2007
 3. Career Matrix, <http://cmx.hrsys.net/TOP/>

<표 5-41> 사회복지사·보육교사·사서 직업의 국가 간 소득비교

(단위: 만 원, 달러, 만 엔, 명)

한국			미국			일본		
명칭	월 소득	취업자 수	명칭	월 소득	취업자 수	명칭	월 소득	취업자 수
사회복지사	173.3	48,501	Social Workers	3,463	642,000	사회복지시설개호직원	25.36	234,920
보육교사	96.8	211,833	Child Care Workers	1,524	1,301,900	보육사	27.37	419,296
사서	250.4	7,146	Librarians	4,481	159,900	사서	33.27	240,232

자료: 1. 한국고용정보원(2007-2008), 직업지도. (사서: 2007 통계청)
 2.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10-2011
 3. Career Matrix, <http://cmx.hrsys.net/TOP/>

매칭(matching)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실험단위를 파악하여 실험그룹(treatment group)과 대조그룹에 각각 하나씩 할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매칭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한 쌍의 실험단위를 찾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몇 가지 적절한 변수를 선택하여 그 변수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값을 취하는 경우를 매칭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매칭방법에는 크게 반경매칭법,

최근접매칭법, 평균매칭법, 층화매칭법, 다변량매칭법, 성향점수매칭법⁴¹⁾ 등이 있다(김상호, 2010).

<표 5-42>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의 소득효과

(단위: 명, %)

자격 명	구분	성향점수 매칭 ⁴²⁾								
		매칭 전				매칭 후				
		처리집단		비교집단		처리집단		비교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회복지사 1급	임금	190만원	63.38	166만원	115.12	192만원	68.42	178만원	85.30	
	시간당	주 40시간 기준	11,046원	-	9,651원	-	11,162원	-	10,348원	-
		실 근로시간 기준	9,681원	-	8,761원	-	9,872원	-	9,340원	-
사회복지사 2급	임금	151만원	33.51	166만원	115.12	147만원	34.89	188만원	81.30	
	시간당	주 40시간 기준	8,779원	-	9,651원	-	8,546원	-	10,930원	-
		실 근로시간 기준	7,130원	-	8,761원	-	7,348원	-	9,715원	-
보육교사 1급	임금	139만원	106.30	70.54만원	129.17	133만원	86.44	96.62만원	51.42	
	시간당	주 40시간 기준	8,081원	-	4,069원	-	7,732원	-	5,581원	-
		실 근로시간 기준	6,367원	-	3,240원	-	6,439원	-	4,533원	-
보육교사 2급	임금	105만원	39.76	70.54만원	129.17	105만원	41.25	85만원	40.55	
	시간당	주 40시간 기준	6,104원	-	4,069원	-	6,104원	-	4,941원	-
		실 근로시간 기준	4,883원	-	3,234원	-	4,854원	-	4,123원	-

<표 계속>

- 41) 성향점수매칭(PS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상호(2010)을 참고하기 바란다.
 42) 성향점수 매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비모수적 매칭방법을 이용한 면허증 소득 효과 분석을 위해 페어 매칭(pair greedy matching)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처리집단에 가장 적합한 비교집단 한 개를 선택하는 것으로 매칭을 위해 프라빗(probit) 확률값인 $P(x) = p(d=1|x) = \Phi(x' \alpha)$,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사용한다. 이 성향점수를 사용하여 처리집단(treatment group)과 비교집단(controller group) 간의 절대차이가 캘리퍼(caliper)보다 작은 것을 매칭이 된 집단(성향점수가 최근 접한 것을 선택)으로 설정한다. 성향 점수를 통한 소득효과 추정 시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다.

$$|\pi(x_j) - \pi(x_i)| < caliper$$

자격 명	구분	성향점수 매칭 ⁽²⁾							
		매칭 전				매칭 후			
		처리집단		비교집단		처리집단		비교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서 1급 · 2급	임금	205만원	118.77	257만원	161.75	206만원	123.79	234만원	139.99
	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	11,918원	-	14,941원	-	11,976원	-	13,604원	-
	실 근로 시간 기준	11,188원	-	12,844원	-	11,277원	-	12,867원	-

주: 1.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 40시간×4.3)
실 근로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 실 근로시간×4.3)
2. 지면상의 관계로 성향점수 매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록으로 처리함.
3. 성향점수에 사용된 매칭대상 및 캘리퍼값 등은 지면관계상 부록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6),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조사.

2. 자격(면허) 수요자의 경제적 효과

우리는 앞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초기 모형상의 제 가정에 대한 확인을 시도하였다. 즉, 양적 서비스가 확대된 경우 소득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서비스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적 서비스가 높은 경우 소비자에게 미치는 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소비자 효과를 수요자조사를 통하여 보고자 한다.

자격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하여, 교육·훈련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부여가 되는 부처 국가자격을 선정하여,

여기서 $\pi(x_j)$ 는 처리집단의 공변량, $\pi(x_i)$ 는 비교집단의 공변량이다. 한편 그룹의 평균값 차이인 평균 처리효과 추정치는 각각 아래의 식과 같다. 먼저 평균처리효과는

$$N_u^{-1} \sum_{i \in T_u} (y_i - y_{mi})$$

이다. 여기서 i 는 처리집단, m 은 비교집단이며 y_{mi} 는 처리집단 i 와 가장 근접한 매칭(matching)을 한 비교집단을 말하며, N_u 는 처리집단의 수, T_u 는 처리집단이 포함된 그룹을 의미한다. 처리효과에 대한 표준 편차는 아래의 식과 같다.

$$SD_P = \left[\frac{1}{N_u} \sum_{i \in T_u} \{ (y_i - y_{mi}) - \overline{(y_i - y_{mi})} \}^2 \right]^{1/2}$$

이 자격들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격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자격종목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정사서 1급, 정사서 2급, 준사서 등 총 9종목을 선정하였다. 이들 자격종목의 공통된 특징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및 경력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격증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격증이 사실상의 졸업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⁴³⁾.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앞서 연구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취득자 설문조사, 전문가조사, 수요자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조사 및 소비자조사 모두 해당 자격종목이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기제로 인정하였으나, 그 직무가 가지는 전문성의 정도(복잡도, 영향력, 독자성 등)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소비자와 전문가 간의 격차가 컸다. 전문가의 경우 해당 직무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라고 응답한 반면 소비자는 해당 직무서비스의 전문성을 높게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종사자의 소득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경우 강한 부정을 보였으나, 소비자는 조금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는 전문가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전문성이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게 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자조사 및 전문가조사 모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질은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교육연계자격(과정이수자격)의 경우 비록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해당 자격(면허)의 발급이 많아질지라도 소비자의 순 질은 감소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과정이수의 경우 1-2회의 필기 시험(test) 검정이 아닌 다수의 교육, 실습 등의 과정을 거쳐 발급되는 자격으로 취득기간 및 비용이 높으므로 자격취득과정에서 일정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을 통한 숙련형성(skills formation)이 발생하는 것

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격종목들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자격증서의 부여를 통하여, 우대·활용법령의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으로 보인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숙련과 낮은 수준의 숙련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격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평가하였다.

3. 자격종목별 경제적 효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

이 연구는 자격취득자조사, 전문가조사,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사1-3급, 보육교사 1-3급, 사서1-2급, 준사서 자격종목의 경제적 효과 및 제도상의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전문가회의, 문헌검토를 통하여 자격종목개선방향을 논의하여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무시험검증의 경우 소비자의 양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노동공급자의 신호기능과 숙련저축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위등급의 경우 분야별 세분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자격이 가진 신호·선별기능 및 가치저장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서의 경우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 기술변화 등에 적응하기 위하여 주제별 사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검정(예: 포트폴리오 심사, 구두테스트 등)을 통하여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육교사 1급, 정사서 1급과 같은 근속에 따른 자동적 승급의 경우 단기간에 자격취득자를 공급하기가 쉽지만, 서비스 질적 질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노동공급이 보장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완장치(보수교육강화, 심사강화 등) 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서 질적 강화란, 보육의 경우 아동보호의 관점이 아닌 교육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서의 경우 기술진보에 전문·세분화된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서비스 질의 괴리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김상호

제1절 결론

1. 자격(면허)제도의 경제적 효과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 유인체제(incentive system)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뿌리 깊은 학문숭상과 학벌주의가 존재하는 경우 효과적인 자격(면허)제도의 운영은 자원배분 및 활용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 즉, 근로자의 감추어진 행동을 차단하고, 학력보다 현장중심의 능력이 중시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격(면허)제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원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전문면허의 경우 고용·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증가된 소득은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가설에 지지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라의 경우 2000년 이전 전문면허(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노동공급량이 많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서비스 가격이 증가하지만, 합격정원이 대폭 증가된 경우에는 서비스 가격의 증가율은 감소하였다.⁴⁴⁾

둘째, 전반적인 자격취득자의 임금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격취득자 비율증가가 경제전반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 산업별 자격취득자 비율과 1인당 실질부가가치 창출과의 관계성은 불명확하다. 즉, 적절한 직업규제는 시장에 긍정적이나, 과도한 직업규제는 시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추론된다. 예를 들어, 면허로서 노동공급이 엄격히 제한되거나 직업규제성이 높은 운수업, 기타공공 및 개인수리업 등의 경우에는 높은 자격(면허)부여가 국민총생산(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과 같이 자격증이 많은 산업의 경우에는 자격취득자의 증가가 국민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사례연구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의 경제적 효과

사례연구에 선정된 사회복지사 1-3급, 보육교사 1-3급, 정사서 1-2급, 준사서는 대부분 교육과 연계된 무시험 부처 국가자격이다. 이러한 자격종목들은 경쟁을 제한하는 직업진입장벽(occupational barrier of entry)으로서의 기능은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 및 제시된 모형으로 볼 때, 노동공급자(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지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지 않을 것이며, 수요자의 양적 서비스 접근성도 좋을 것이다.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에서 자격취득자가 경제적 지대가 발생되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자격취득자조사, 수요자·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앞서 제시된 의문

44) 최근 노동 공급의 증가로 서비스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양적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및 미국과 등의 국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전문면허의 취득자비율은 여전히 낮다.

사항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 자격종목의 경우 자격(면허)취득자의 고용·소득효과는 없거나 낮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선행연구 및 제시된 모형과 같이 서비스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양적 접근성의 만족도도 높았다.

둘째, 양적 접근성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서비스(질의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조사, 전문가조사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교육연계자격의 경우 양적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질적 수준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공급을 제한할 수 없는 형태의 자격종목은 기존 자격취득자의 만족도(임금, 고용, 근로조건) 등은 감소한 반면, 소비자 만족도는 높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효과가 파악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자격(면허)의 경제적 효과가 노동공급자(자격취득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위험한 접근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제2절 정책제언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면허제도는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public interest)적 목적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업무 독점적 직종면허(변호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는 노동공급자의 경제적 지대를 발생시키며, 산업발전을 위한 국민총생산에 도움을 주지 못 할 우려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격증(certification)은 품질인증(quality assurance)이라는 순기능을 통하여 국민총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면허신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신설된 면허의 경우 체계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통하여 소비자의 양적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⁴⁵⁾

잘못된 직업규제는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규제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불과 100년 전, 반상제도로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하였으며, 지금도 인도는 카스트제도의 잔재로 신분제에 따른 직업규제가 이루어진다. 잘못된 제도하에서는 폰 노이만도 약국점원이 될 수 있으며, 장영실도 역사적 기록에서 사라질 수 있다.

지금도 우리는 잘못된 직업규제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잠재된 인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면허부여를 고려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과 함께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인간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면허제도는 인간을 갈등(직무영역 분쟁, 독점적 지대 추구)하게 한다. 만약 새로운 면허 신설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면허신설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면허신설이 필요하다면, 체계적인 인력수급 계획과 함께 소비자의 양적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처 국가자격신설 등은 보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격·면허관리위원회(신설)가 판단하여야 한다.

45) 전문면허 취득자의 총량적 수를 규제하는 검정방법은 폐지하고, 국가기술자격과 같이 일정수준(점수)에 도달한 사람에게 자격(면허)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면허와 같은 직업규제는 그 규제 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면허된 직종의 경우 교육훈련과 연계된 철저한 인력수급 계획을 통하여 수요자의 양적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즉 면허의 경우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도록 국가가 지속적으로 평가·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자격·면허관리위원회 신설

배 경 : 면허 부여의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면허부여의 과정·절차는 개별 부처에게 일임.

필요성 : 현재 부처 자율적으로 자격·면허가 신설되고 있으므로 객관성, 타당성 확보가 미흡하며, 다른 부처 국가자격과의 일관성, 관리상의 어려움을 야기

주요업무 : ① 자격·면허의 신설, 폐지, 변경 등의 업무 ② 면허 취득자의 직무영역 간의 다툼발생 시 분쟁조정 ③ 검정·관리상의 조정: 현재 부처 국가자격의 경우 사용용어, 관할영역, 검정 관련 통계작성 및 제공 등에 있어서 총괄기능이 미흡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예: 자격·면허 발급현황 등)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임.

기대효과 : 자격·면허부여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직업선택 자유의 보장 기능 강화), 자격·면허의 질 관리 가능, 정책수립의 기초통계 제공,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적 통제 등

SUMMARY

Economic Effect of Qualification in Korea (I)

Sang-Ho Kim, Jong-Sung Park, Sang-Jin Kim

1. Study background

This study is on economic effect of certification & license system focus on national certification and license by ministries in Korea. Still now, other research papers have been focused on national technical certification or private certification because of lack of data and difficulties of research methodology. Generally we are applying the quasi-experiment methodology for the research of certifications. But we can't apply this methodology for licenses because we cannot consist of comparative group correspond to treatment group. And we can't gather the data easily related the information of licensed practitioners.

2. Study 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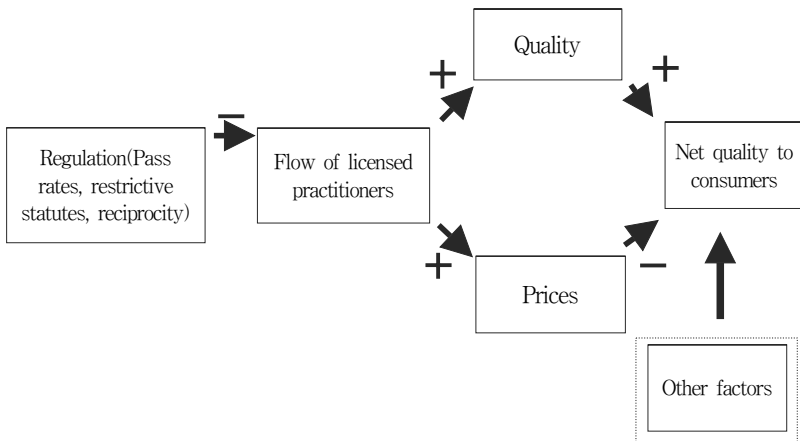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we'll study for economic effect of qualification system in Korea. For example, we'll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GDP(or price index and so on) and Qualification.

The other we'll make case study for some certifications organized by ministries. This study will suggest the framework of evaluation for national license and certification by ministries. Until now we didn't study on effect of national license and certification especially impact of consumers.

3. Study model and evaluation framework

This study have adopted Kleiner's study model for analysis. This model told us what gains and what lost from licensing occupations. Figure 1 is the study model. This model analyze whether the net quality to consumer have a positive or negative relation. That is the ultimate aim objective in this study. Table 1 is The evaluation framework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qualifications and licenses.

[Figure 1] Regulation's Impact on Net Quality



Source: Kleiner(2006: 49)

Is this ensuring quality or restricting competition?

<Table 1> The evaluation framework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qualifications and licenses

	Target Group	Goal Area	Indicators	etc
Labor Supplier	Practitioners	Employment-Effects Income Effects Other Effects	Net Employment Effects Net Income Effects	All Vocational-Certifications & Licenses
Labor Demander	Firms	Labor (Prices) Productivity (Quality)	Accessibility of Labor (Regulation) Input/Output Per Capita Labor Productivity	All Vocational-Certifications & Licenses -National Technical-Certifications, National Certifications -Licenses -Semi Licenses
	Consumers	Accessibility (Prices) Satisfaction (Quality)	Service Availability Appropriate Service-Pricing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All Vocational-Certifications & Licenses -Certifications and Licenses Related Service Sector -Licenses -Semi Licenses

4. The case studies of the economic effect on the qualification (license) for the social workers, librarian, and childcare teachers.

The surveys that are investigated the having persons, service consumers, and related experts of the qualification for the social workers, librarian and childcare teachers, show as follows.

First of all, the qualification in the having ample supply of labor has a little effect of the income and employment. Thus it is appear that service price is not raise, and accessibility satisfaction is high.

Second, in the survey of experts, despite high accessibility in quantity, the quality of the service is not low. Thus, when the quantity of service on the qualification (license) will be increased, the approach must be careful.

Third, if the qualification (license) can't be control the supply of labor, the qualified person's satisfaction is de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consumer's satisfaction is increased. Thus, the economic effect on qualification (license) depends on how you see it.

5. The economic effect of the qualification (license) system

We analyzed the effectiveness though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whether the qualification (license) system affect on the economics in Korea.

First of all, from a qualified (licensed) persons' point of view,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license) have a very positive effect on income and employment.

Second, the consumers think that service prices are going up along with the qualified practitioners' income. In other word, the service suppliers are passed the cost onto consumers.

Third, It is a rather obscure the relations between the qualified persons'ratio in each industries and the real value-added per person.

Finally, we can deduce that the proper occupational regulations are positive in market but the excessive regulations are negative.

6. Policy Proposal

The authority that is giving a license is restricted the freedom of occupational option constitutionally. And this authority has only a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 Thus, we propose the “Qualification and License Management Commission” with having the professionalism and objectivity better than the each government department.

The main task of the Qualification and License Management Commission is as follows. 1. To make and abolish the qualification and license, 2. To coordinates between the qualified persons’ duties, 3. To manage each qualified examination and the issuable size of the license and certification.

The expected effectiveness of QLMC (Qualification and License Management Commission) is below. First, it can be secure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the freedom of occupation option is guaranteed). Second, it can be manage the quality of qualification and license. Third, it can be provide the statistical information for policy making.

<부 록>

[부표 1] 한·일 부처 국가자격 비교

구분	한국 자격명(일본 자격명)	비고*
경영, 회계, 사무	공인노무사(사회보험노무사), 세무사(세리사)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 관세사(통관사), 행정사(행정서사), 주책관리사(덴선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물류관리사, 가맹 사업거래상담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보세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금융, 보험, 부동산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감정 평가사, 공인중개사, 환지사
교육 및 연구	보건교사(보건의사), 사서교사(학교도서관사서교유) 영양교사(교유, 양호·영양교유)	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평생교육사, 보건의 교육사, 한국어교원
법률 관련	변리사(변리사), 변호사(사법시험), 법무사(사법서사)	
보건 의료	의사·전문의(의사국가시험), 수의사(수의사) 치과 의사(치과 의사), 방사선사(진단방사선기사) 응급구조사(구급구명사), 위생사(위생관리사(1, 2종)) 의지·보조기기사(의지장구사), 약사(약제사) 간호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간호사(간호사) 작업치료사(작업요법사), 임상병리사(임상검사기사) 치과위생사(치과위생사), 조산사(조산사) 영양사(관리영양사), 안마사(안마, 맞사지 지압사)	한 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물 리치료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의료관리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 의	보육교사(보육사),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문화예술 의	박물관·미술관학예사(학예원, 학예원보) 사서(사서, 사서보)	무대예술전문인, 문화재수리기술사, 문화재 수리기능자
운전 및 운송	운송용조종사(정기운송용조종사), 항공사(항공사) 항공기관사(항공기관사), 도선사(수선인) 운항사(운항관리자(항공))	자동차운전강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 동차운전면허, 화물운송종사자격, 택시운전 자격,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운항관 리사, 항공교통관제사, 구명정수,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 항해사, 철도차량운전면허
영업, 판매		유통관리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환경, 안전관리	산업안전지도사(노동안전컨설팅)	산업위생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 교육사, 교통안전관리사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 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경륜선수·심판, 경쟁선 수·심판, 동력수상레저기구조명면허
건설		건축사, 산림토목기술사
기계, 가공, 정비		항공공장정비사, 항공정비사
화학, 에너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 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방사선취급주입 자),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원자로 주입기술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핵연료물질 취급자면허(핵연료취급주입자)	
정보, 통신	아마추어무선기사(아마추어무선기사), 통신사(전기통 신주입기술자), 무선통신사(종합무선통신사, 해상· 항공·육상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해상, 항공, 육상)
식품, 가공		주조사
농림, 해양, 수산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검사원, 영림기술 자, 수산질병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주: *는 일본자격과 대응되지 않는 한국자격임.

[부표 2] 사회복지사 1급(성향점수 매칭)

(단위: 명, %)

	매칭 전				매칭 후				
	처리집단		비교집단		처리집단		비교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임금	190만원	63.38	166만원	115.12	192만원	68.42	178만원	85.30	
시간당	주 40시간 기준	11,046원	-	9,651원	-	11,162원	-	10,348원	-
	실 근로시간 기준	9,681원	-	8,761원	-	9,872원	-	9,340원	-
성별더미	0.33	0.47	0.34	0.47	0.32	0.47	0.36	0.49	
결혼더미	0.55	0.50	0.69	0.46	0.50	0.51	0.45	0.51	
학력연수	16.10	0.78	14.00	2.96	16.00	0.87	15.82	0.85	
정규직더미	0.95	0.22	0.72	0.45	0.91	0.29	0.91	0.29	
임금근로더미	1.00	0.00	0.95	0.20	1.00	0.00	1.00	0.00	
근로시간	45.64	9.11	44.06	17.49	45.23	9.34	44.32	5.69	
연령	31.87	7.77	44.39	13.03	34.00	9.07	33.09	9.64	
근속기간	5.72	4.77	7.18	8.41	6.55	5.37	6.05	7.14	
경력	6.79	6.152	13.30	11.47	6.55	5.37	7.82	7.43	

주: 1.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40시간×4.3)]

2. 실 근로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 실 근로시간×4.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6),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조사.

[부표 3] 사회복지사 2급(성향점수 매칭)

(단위: 명, %)

	매칭 전				매칭 후				
	처리집단		비교집단		처리집단		비교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임금	151만원	33.51	166만원	115.12	147만원	34.89	188만원	81.30	
시간당	주 40시간 기준	8,779원	-	9,651원	-	8,546원	-	10,930원	-
	실 근로시간 기준	7,130원	-	8,761원	-	7,348원	-	9,715원	-
성별더미	0.34	0.48	0.34	0.47	0.33	0.48	0.29	0.46	
결혼더미	0.47	0.50	0.69	0.46	0.48	0.51	0.57	0.50	
학력연수	15.59	2.03	14.00	2.96	15.10	2.18	15.90	2.21	
정규직더미	1.00	0.00	0.72	0.45	1.00	0.00	1.00	0.00	
임금근로더미	1.00	0.00	0.95	0.20	1.00	0.00	1.00	0.00	
근로시간	49.25	14.89	44.06	17.49	46.52	13.23	45.00	7.68	
연령	31.75	7.65	44.39	13.03	33.81	8.30	34.10	7.31	
근속기간	4.03	5.19	7.18	8.41	4.95	5.96	5.38	5.49	
경력	6.31	6.25	13.30	11.47	7.90	6.94	8.48	6.93	

주: 1.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40시간×4.3)]

2. 실 근로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 실 근로시간×4.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6),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조사.

[부표 4] 보육교사 1급(성향점수 매칭)

(단위: 명, %)

	매칭 전				매칭 후				
	처리집단		비교집단		처리집단		비교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임금	139만원	106.30	70.54만원	129.17	133만원	86.44	96.62만원	51.42	
시간당	주 40시간 기준	8,081원	-	4,069원	-	7,732원	-	5,581원	-
	실 근로시간 기준	6,367원	-	3,240원	-	6,439원	-	4,533원	-
성별더미	0.01	0.11	0.03	0.17	0.03	0.16	0.03	0.16	
결혼더미	0.51	0.50	0.62	0.48	0.56	0.50	0.56	0.50	
학력연수	14.66	1.21	11.28	2.47	14.03	1.27	13.78	1.57	
정규직더미	0.72	0.45	0.18	0.38	0.44	0.50	0.50	0.50	
임금근로더미	0.77	0.41	0.81	0.39	0.67	0.47	0.69	0.46	
근로시간	50.77	15.44	50.23	21.14	48.03	10.73	49.25	14.73	
연령	33.27	8.76	50.03	14.81	38.50	10.27	35.58	10.12	
근속기간	5.75	5.11	3.45	3.75	7.19	6.06	3.72	4.15	
경력	6.93	5.47	9.28	8.93	8.19	7.05	7.25	6.27	

주: 1.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40시간×4.3)]

2. 실 근로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 실 근로시간×4.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6),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조사.

[부표 5] 보육교사 2급(성향점수 매칭)

(단위: 명, %)

	매칭 전				매칭 후				
	처리집단		비교집단		처리집단		비교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임금	105만원	39.76	70.54만원	129.17	105만원	41.25	85만원	40.55	
시간당	주 40시간 기준	6,104원	-	4,069원	-	6,104원	-	4,941원	-
	실 근로시간 기준	4,883원	-	3,234원	-	4,854원	-	4,123원	-
성별더미	0.00	0.00	0.03	0.17	0.00	0.00	0.00	0.00	
결혼더미	0.67	0.47	0.62	0.48	0.61	0.49	0.58	0.50	
학력연수	13.51	1.37	11.28	2.47	13.45	1.34	13.70	1.42	
정규직더미	0.64	0.48	0.18	0.38	0.64	0.48	0.73	0.45	
임금근로더미	0.72	0.45	0.81	0.39	0.73	0.45	0.79	0.41	
근로시간	50.00	14.96	50.33	21.14	50.30	13.10	47.94	13.78	
연령	34.08	6.30	50.03	14.81	333.85	6.76	33.58	7.00	
근속기간	4.03	3.46	3.45	3.75	3.91	3.60	3.97	4.64	
경력	8.03	5.43	9.28	8.93	7.73	5.82	7.85	5.46	

주: 1.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40시간×4.3)]

2. 실 근로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 실 근로시간×4.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6),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조사.

[부표 6] 사서 1급·2급(성향점수 매칭)

(단위: 명, %)

		매칭 전				매칭 후			
		처리집단		비교집단		처리집단		비교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임금		205만원	118.77	257만원	161.75	206만원	123.79	234만원	139.99
시간당	주 40시간 기준	11,918원	-	14,941원	-	11,976원	-	13,604원	-
	실 근로시간 기준	11,188원	-	12,844원	-	11,277원	-	12,867원	-
성별더미		0.17	0.38	0.74	0.44	0.19	0.40	0.19	0.40
결혼더미		0.43	0.50	0.78	0.41	0.43	0.50	0.48	0.51
학력연수		16.09	1.12	14.46	2.09	16.00	1.09	15.52	1.53
정규직더미		0.70	0.47	0.78	0.41	0.71	0.46	0.67	0.48
임금근로더미		1.00	0.00	0.87	0.34	1.00	0.00	1.00	0.00
근로시간		42.61	5.47	46.53	11.73	42.48	5.58	42.29	3.64
연령		35.13	9.02	41.11	10.41	34.52	8.91	36.19	8.79
근속기간		9.78	8.29	10.07	8.60	9.14	8.15	9.05	8.40
경력		10.09	8.32	15.07	9.70	9.48	8.22	12.43	9.45

주: 1.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40시간×4.3)]

2. 실 근로시간기준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주 실 근로시간×4.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6),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조사.

[부표 7] 분석 결과

자격 명	사회복지사 1급
매칭 직업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사회단체활동가,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
매칭 전 대상 (매칭 후 표본)	45명 (22명)
자격설명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동 자격은 필기과목으로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가 있다. 사회복지사 1급의 매칭율은 49%이며, 캘리퍼는 0.08이다.
자격 명	사회복지사 2급
매칭 직업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사회단체활동가,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
매칭 전 대상 (매칭 후 표본)	44명 (21명)
자격설명	동 자격은 필기과목으로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가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의 매칭율은 48%이며, 캘리퍼는 0.03이다. 전공 일치도는 처리집단이 높다. 처리집단의 경우 응답자의 73.7%가 매우일치라고 응답한 반면, 비교집단은 47.1%가 매우일치라고 응답하였다.

<표 계속>

자격 명	사서1·2급
매칭 직업	출판 및 자료편집 사무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출판물기획전문가, 총무사무원
매칭 전 대상 (매칭 후 표본)	25명 (21명)
자격설명	<p>동 자격은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 교육기관의 사서자격 교육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도서관협회 장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게 된다. 분석에는 사서1급 22명, 사서2급 3명을 포함하여 매칭을 하였다. 사서1·2급의 매칭율은 84%이며, 캘리퍼는 0.007이다. 동 종목은 비교적 폭넓게 적용하였으므로 소프트 매칭(soft matching)이라는 한계가 있다.</p>
자격 명	보육교사 1급
매칭 직업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및 보육사
매칭 전 대상 (매칭 후 표본)	188명 (36명)
자격설명	<p>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며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합격기준은 승급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보육교사가 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교육이수, 유관자격 소지자(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영유아보육법 참조). 따라서 엄청난 초과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격이다. 보육교사 1급의 매칭율은 19%이며, 캘리퍼는 0.06이다.</p>

[부표 8] 부처별 국가자격 정보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1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법률(개정)	중소기업진흥 에 관한 법률(개정)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의 진단·지도 사업을 통해 개별 기업의 경영안전과 기술혁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근대화과 육성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2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동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산업화와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불평등 고용계약,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 노동시간, 노동절비,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법지식이 부족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행정기관의 중간에 서서 노동관계업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
3	기술지도사 기술지도사 법률(개정)	중소기업진흥 에 관한 법률(개정)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의 진단·지도 사업을 통해 개별 기업의 경영안전과 기술혁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근대화과 육성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4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이 법은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사회에서 기업이 작성 공시하는 재무보고가 적합기준에 일치되어 신뢰할 수 있게 작성 보고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독립적인 회계 감사인이 필요하게 됨.
5	관세사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관세사법 시행령	이 법은 관세사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근대국가의 출현과 함께 국고수입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의 역할을 하고 있음. 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수출입물품에 관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통관에 관한 제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게 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6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조세의 종류와 납세지수가 늘어나고, 법인제, 각종기업 등 경영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에 납세자가 부담한 과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구제해주는 직무수 수행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행정관청간의 조세마찰을 방지하며, 징세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7	행정사법	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인들이 민원행정과 관계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됨. 그러므로 민원행정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
8	물류정책 기본법, 물류정책 기본법시행령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물류정책은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하며,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물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성 검토 및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자본 창업자로서의 특성상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낮아, 가맹사업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가능한 전문 상담사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10	감정사	이 법은 향만운송 사업법 및 사업법 시행령	이 법은 향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향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물의 종류, 양 등이 다양해지면서 향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향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제도를 제정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11	김량사	항만운송 사업법 시행령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물의 종류, 양 등이 다양해지면서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제도를 제정함.
12	김수사	항만운송 사업법 시행령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물의 종류, 양 등이 다양해지면서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제도를 제정함.
13	보세사	관세법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보세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자격을 도입했으며, 특히 88년도 올림피의 성공적인 안보 감시를 위해서 도입한 취지가 큼.
14	주택관리사	주택법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경영하여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모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15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공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 자격화하고, 일경구도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도모.
16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이 법은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에 관한 제반 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전문요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험료의 산출, 책임준비금의 적립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 계산 확인 등을 담당하는 보험전문인 자격을 도입하였음.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17	보험중개사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이 법은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 상품 개발 및 가격자유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음.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이전에 우리나라 모집조직의 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모집조직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는데 이후 '95년 11월 OECD보험위원회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국내수용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97년 4월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였음.
18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이 법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간의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함.
19	감정평가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평가는 각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업무에 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그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한 토지평가사(건설부주관)와 1973년 '감정평가사(관련법률)에 근거한 공인감정사(재무부주관)로 감정평가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함.
20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는 무질서한 부동산 거래를 바로잡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21	환지사	농어촌 정비법 및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이 법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가개량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및 그에 대한 보상 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들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 고 공정한 농가개량사업을 수행하고자 자격이 제정됨.
22	정교사	초·중등 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등학교 정교사 : 해당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올바른 교 육관을 소지하고 적절한 교수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초등학교 정교사 : 6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의 성격형성과 태 도함양,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자질을 갖 추는데 초등학교 교육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학습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 도를 제정함 3. 특수학교 정교사 :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 상자들은 통상의 일반교육으로는 기대하는 교육효과를 낼 수 없 기 때문에 장애학생들만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등이 필 요함. 그러므로 특수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또한 실제 실습 과정을 거친 전문 인력을 통해 특수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자 격제도의 목적이 있음 4. 유치원 정교사 : 유아기의 경험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음. 이들 유아기의 아동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 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기 위해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음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23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교원양성과정을 마치고 나온 정교사만으로는 교원 수급을 맞출 수 없어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교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도입함.
24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환경위생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학생의 건강관찰 및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중요함. 이에 따라 간호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학생들의 양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25	사서교사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및 교사들의 학습·조사·연구 등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고 교사로서 자질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독서 및 자료이용을 지도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함.
26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중·고등학교, 실업 및 예체능계 교육은 지식전달과 함께 기술 중심의 실습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이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실무기술을 갖춘 교사로 하여금 실기교육을 담당케 하고 실습에 필요한 실험기기, 도구 및 재료를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고양시킬 목적에서 도입함.
27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시기로 이들이 학교내외의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은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소정의 전문상담과정을 이수한 교사로 하여금 학생상담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목적이 있음.
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이 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격한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른 유능한 기능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종 직업훈련원에서 유수인력의 기능화 및 재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요원이 필요하게 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29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과 기술혁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평생교육을 통하여 향상 자신을 인마하여 야 함. 이에 따라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적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함
30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31	한국어교원	국어기본법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예판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기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영양교사	초·중등교육법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1급, 2급)을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3	변리사	변리사법	이 법은 변리사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하게 됨.
34	변호사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이 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가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범영역이 확대되면서 법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됨. 하지만 법 자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서 이런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이에 따라 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에서 대리인 역할과 법정에서의 변론 및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지원함으로써 법정행 대상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게 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35	법무사 법무사법 시행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이 법은 법무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진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구성원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갈등·분쟁이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해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법 자체가 어렵고 법 질서가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 법을 집행하는 쪽과 법 집행 대상 사이에서 법 집행 업무를 지원하여 법무행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 대상자들이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에 관련되거나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
36	의사	의료법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여야 하며, 소명의식도 갖고 있어야 함.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 하여금 의료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37	전문 한의원	의료법(전문 의의수련및자 격인정등에 관한규정)	이 영은 의료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 하여금 전공관련 수련과정을 거쳐 의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38	치과의사	의료법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치아의 건강을 돌보고 이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자격을 제정함.
39	한의사	의료법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의학은 옛부터 치료와 질병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점에서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이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한방치료를 통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의학의 전공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40	약사	약사법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물질이나 약을 오용하면 인명의 손실을 야기하거나 질병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 하여금 처방 및 조제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됨.
41	한약사	약사법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물질로서, 크게 양약과 한약으로 분류됨. 이 중 한약 및 한약조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으로 하여금 한약의 처방 및 조제를 담당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격을 제정함.
42	한약업사	약사법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약의 조제 및 판매를 일정한 지역 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제정함.
43	한약 조제사	약사법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약의 조제 및 판매를 일정한 지역 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제정함.
44	간호사	의료법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질병과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간호요원의 필요성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면허제도를 제정함.
45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이 규칙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정물사·침사 및 구사의 자격·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 및 의원을 포함한 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진료업무가 거듭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의 치료 및 의료업무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46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법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질환자의 격리·수용보다는 사회복지와 예방, 그리고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제정함.
47	수의사	수의사법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은 의학적으로 인간과 거의 같은 해부학적·생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질병을 전염시키기도 함.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가축을 돌보는 일이 필요하게 됨.
48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무기록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체장애자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보조수준으로 출발하였지만, 의료서비스의 전문화·세분화 및 다양성 요구로 인하여 물리치료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할 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49	방사선사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무기록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술은 현대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과폭량이나 노출량 등을 잘못 조절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기기와 그 사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50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로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 요계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행사건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속출하였으나 환자의 안전환 구조 및 현장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구조사 자격을 제정함.
51	의지· 보조기 기사	장애인 복지법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지보조기의 제조·개조·수리 또는 신체의 장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지·보조기기사라고 함. 이러한 업무는 장애인들의 기능향상과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을 돕기 위해서 재활의 다른 분야와 함께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제도로 제정 함.
52	임상 병리사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 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무기록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의학의 발전과 함께 임상병리검사기술도 첨단화·다양화·세분화되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상병리검사 업무가 갖는 높은 비중과 그에 따른 해당 업무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요청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53	직업치료사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료기록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 기계화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재활에 종사할 전문인력인 요구됨.
54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법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질환자의 격려·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그리고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 양성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제정함.
55	치과기공사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료기록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과기공이 치과의료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늘어나는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됨.
56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료기록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강건강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구강보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예민한 구조를 가진 치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만 함. 이에 따라 구강건강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치아 및 구강구조와 그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하게 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57	안경사 외기기사용에 관련법률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 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 의무에 관한 기 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무기록사), 시력보정용 안 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 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과학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 주변에는 시력을 손상시키는 환 경적인 요소가 산재해 있어 나쁜 시력을 지닌 사람의 수가 증가하 고 있음. 이 때문에 나쁜 시력을 교정하여 선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안경에 관 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 하게 됨.	
58	안마사 안마사에 관련규칙 (의료법)	이 규칙은 의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 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설소의 시설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각장애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간단한 서비스 문화를 형성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61조에 의거해서 자격제도를 도입함.	
59	영양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양사에관한 규칙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가 발달하고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병원은 물론 학교, 사업 체 등에서의 단체급식이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의 영양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양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식품학, 영양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요구되던 서 영양사 자격이 시행됨.	
60	위생사 위생사등에 관련법률	이 법은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 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위생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함.	
61	의료관리자 선원법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 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운항 중 선원의 건강관리, 보건지도, 선내위생 및 식품관리를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운항 중에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선 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도입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62	의무기록사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 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 의무에 관한 기 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무기록사), 시력보정용 안 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 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기록은 환자에게 일관성있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이자 환자치료를 담당한 여러 치료자들 사이의 의사전달도구가 되며, 환 자에게 제공된 의료의 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기본자료로 사용됨. 또한 병원통계를 제공하여 병원행정 및 국가보건행정에 기여하게 됨. 이와 같이 의무기록은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무기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게 됨.
63	조산사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신기간 동안 산모의 심리적·신체적 관리는 태어날 아기의 인격 형성과 신체발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의사의 업무를 보 조해 주는 전문인으로 하여금 의사의 업무를 돕고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료활동이 필요하게 되어 자격을 제정함.
64	보육교사	영유아 보육법	이 법은 영유아를 자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 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까지는 일정 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 었다. 그러나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검증과 보 육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자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65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사업법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 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적 지식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 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 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66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 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 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질환자의 격리·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그리고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에 관련된 자에 따라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 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 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제정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67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문제를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필요성 점차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나, 청소년 문제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이 없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중심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화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됨. 또한 기존의 청소년상담실, 사회기관 등의 종사자들의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68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복지와 교류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됨.
69	무대예술 전문인	공연법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진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공립 및 민간공연장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이에 무대기계·조명·음향분야 무대에출전문인 국가자격제의 도입을 통하여 무대에출분야 전문인력 확충과 저변 확대를 기하고자 공연법 제14조에서 동 자격제도를 도입함.
70	문화재수리 기술자	문화재보호법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수리 인력의 질적인 저정수준을 확보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자격제도를 도입함.
71	문화재수리 기능자	문화재보호법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수리 인력의 질적인 저정수준을 확보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자격제도를 도입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72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이 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대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 박물관과 미술관들에 있어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제의 도입을 통하여 박물관, 미술관에 근무하는 학예진 종사인력의 질적향상을 해소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으로 인정함으로써 학예사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서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울러 전문화에서 교육기관의 질적양적 확대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73	사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이 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가 급변할수록 수없이 많은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매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돕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정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됨. 이에 공인된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고자 함.
74	자동차운전 강사	도로교통법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속히 늘어나는 운전기능인을 교육하고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으로 자격제도를 제정함.
75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속히 늘어나는 운전기능인을 교육하고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으로 자격제도를 제정함.
76	자동차운전 면허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및 소방장비 관리규칙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가지 건설기계나 소방장비를 취급해야만 하는 시기에 건설기계와 소방장비와 같은 특수 장비에 대한 전문기능이 필요하다.
77	화물운송 종사자격	도로교통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78	택시운전 자격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중립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택시 공급역시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전문적인 운전자가 필요하게 되었음.
79	사업용 조종사	항공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기 장비들이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승객이나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기 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80	운송용 조종사	항공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기 장비들이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승객이나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기 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81	자기용 조종사	항공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기 장비들이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승객이나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항공기 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82	운항관리사	항공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고의 사전예방과 안전운항으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항공기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격제도를 제정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83	항공교통 관계사	항공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행기는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키는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 및 재산손실을 가져옴. 따라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양성이 요구됨.
84	항공기관사	항공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행기는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켜 주는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함. 따라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기장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
85	항공사	항공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상의 도로와 같이 항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지는 불가능하지만 항공기는 일정한 항로를 따라서 운항되어야 함. 따라서 전체관측이나 지형 관측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와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함.
86	구명정수	선원법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복무, 근로조건에의 기준, 직업안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선과 다수의 승무원이 탑승한 대형선박에서 비상시 구명 활동을 전문인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도입함.
87	기관사	선박직원법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 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 초부터 대외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정책에 힘입어 해상을 통한 운송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음. 해상운송산업은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해운서비스로서 선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이 선박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임함으로써 해기사 자격을 제정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88	도선사	도선법	이 법은 도선사의 면허와 도선구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 있어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발달에 따른 수출입 교역량의 증대는 해운송사업의 발달을 가져오고, 이는 해상교통량의 증가를 유발시켰음. 따라서 복잡해져 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운영과 새로운 항로개척 등 전문적인 해상교통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함.
89	소형선박 조종사	선박직원법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 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의 항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박운항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선원법으로 해기사 자격을 제정함.
90	운항사	선박직원법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 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기술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선박이 자동화됨으로써 탑승무원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다양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됨. 이에 따라 대형 자동화 선박에서 항해, 기관, 통신분야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해기사 양성 필요하게 되어 자격제도를 제정함.
91	위험화물 적재선박 승무원	선원법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을 통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석유, 액화가스, 화학물 등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의 운항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에 위험물 적재선박의 안전안 운항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선내의 위험물 관리와 운항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도입함.
92	항해사	선박직원법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 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대외교역상품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해운산업이 발달하였음. 이에 따라 선박의 항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박운항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선원법으로 항해사 자격을 제정함.
93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핵심요원인 기관사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양성·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게 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94	유통관리사	유통산업발전법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유통회사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자격제도로써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능력에 객관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95	경매사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이 법은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은 범죄적인 기상 등의 이유로 생산이 불규칙하고 수요가 갑자기 늘었을 때 대량생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농수산물에 있어서 경매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안정시키고 합리적 인 가격형성을 꾀하며 경매를 행하는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 신뢰도 제고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함.
96	경비지도사	경비법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물건에 대한 위험방지업무, 신변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요원, 호송경비요원, 경호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비업의 활성화 및 경비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이 자격제도가 도입되었음.
97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 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장내의 자율안전관리자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대형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장 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기 때 문에 산업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게 됨.
98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 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장내의 자율안전관리자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대형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장 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기 때 문에 산업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게 됨.
99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소방기술인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거 소방설비기사 1·2급 및 소방설비기술사를 매년 배 출하고 있으나 그 숫자가 적고 소방 전문 고급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제도를 도입하게 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100	소방안전 교육사	소방기본법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101	교통안전 관리자	교통안전법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그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을 발달시키고자 발전한 교통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막대한 상태에 있음. 이러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사회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자격제도가 실시됨.
102	국내여행 안내사	관광진흥법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확대로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국내 여행지의 지리,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소지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국내여행안내원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여행객들의 이해를 돕고 알차고 보람된 여행이 되도록 자격제도를 도입함.
103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진흥법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능력, 역사, 지리, 인문상식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재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도입함.
104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능력, 역사, 지리, 인문상식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재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도입함.
105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능력, 역사, 지리, 인문상식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재에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도입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106	호텔 서비스사	관광진흥법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호텔은 객실제공을 비롯해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하나의 서비스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용객들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호텔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정신과 호텔에 대한 지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도입정함.
107	경기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규칙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민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숙련된 경기지도능력과 체계적인 체육이론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대표선수를 비롯해 소속팀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체육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자격제도를 도입함.
108	생활체육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규칙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민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수준향상과 여가문화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체육이론 및 실기능력을 갖춘 유능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이 요구되어 자격제도를 제정함.
109	경륜·조정·심판	경륜·조정법 및 경정법, 경륜·조정법 시행령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여가의 활용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륜 및 경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경륜과 경정의 경기력 향상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심판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음.
110	경정·심판	경륜·조정법 및 경정법, 경륜·조정법 시행령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여가의 활용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륜 및 경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경륜과 경정의 경기력 향상시키고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심판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음.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111	동력수상 래저기구 조정면허	수상래저 안전법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 래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여가의 활용을 높이고 있 으며, 특히, 수상레저에 대한 참여는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 래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이 필요하다.
112	건축사	건축사법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공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건축사의 인력부족 해소 및 건축 설계와 시공을 전담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및 기술 을 갖춘 우수한 건축사를 확보하기 위함.
113	산림토목 기술자	산림법	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 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은 우리에게 목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지구능력에 의한 수원함양, 토사유출 및 붕괴방지에 의한 국토보존, 산업화 및 공업 화로 야기되는 대기오염을 정화시켜주며 사람에게 필요한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임야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영림계획에 의 한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소득사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산림토목(임도, 사방, 화재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에 대한 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됨.
114	항공공장 정비사	항공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 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 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 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기는 사고에 의한 엄청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 단한 점검과 수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첨단기계공학의 산물인 항 공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많은 경험과 기술, 일정 한 자격을 겸비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비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사고의 사전예방과 안전운항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115	항공정비사	항공법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 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 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 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매번 비행할 때마다 또 중간점검 에서 그리고 정기점검에서 복잡한 비행기를 점검할 수 있는 지식 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자격제도를 규정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116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원자력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으로부터 인류와 그 환경을 지키고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됨. 이에 따라 방사선이 인체를 통과할 때 생체조직의 원자와 분자들을 분해하거나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 또는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함.
11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원자력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범위도 넓어져 농림분야에서는 품종개량, 식품의 장기간 저장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공업분야에서는 비파괴검사와 생산공정의 품질관리 등에 이용되고 있음. 이에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기본지식 및 안전취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안전을 기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음.
11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원자력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선은 인체를 비루한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등 의료 및 산업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용 목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할 때 이것의 취급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소지한 의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안전성을 높이고자 면허제도를 제정하였음.
119	원자로조종 감독자면허	원자력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은 화학에너지 자원의 한계성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생활 수준과 산업발전을 위해 가장 신뢰성 있는 에너지 생산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을 원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므로 운전과정 중에 방사성 물질이 발생함. 이에 따라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관리하고 방사능 유흡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면허제도 제정이 필요하게 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120	원자로조종 사면허	원자력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 공급구조도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전 중에 사소한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발전소는 자동 정지되기 때문에 평소 운전기술 및 기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임. 이에 원자로의 운전제어, 시설구조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원자로의 예비운전 시운전의 절차 및 조작에 관한 실기능력을 소지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면허제도를 제정함.
121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	원자력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가동하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는 우리들을 정련·변환·농축시켜 만드는 것으로 사용 후에도 다시 재사용이 가능함. 이러한 핵연료를 생산·취급하는 과정, 특히 원자로내에서 연소시킨 핵연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이기고자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원자력법으로 면허제도를 제정함.
122	핵연료물질 취급자면허	원자력법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용원자로의 건설증가 등 원자력산업의 발전으로 인체를 포함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많은 주의가 요구됨.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의 대부분은 재활용되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함.
123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법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첨단과학분야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첨단무선 통신장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리와 통신기술의 진문화를 위하여 전파법으로 무선종사자 자격을 규정함.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124	통신사	선박직위법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 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행위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발달에 따라 해상을 통하여 운송하는 대외교역상품의 물동량이 증가함으로써 해운산업이 발달함, 해운산업의 발달은 선박의 통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선박운항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선원법으로 통신사 자격을 제정함.
125	무선통신사	전파법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첨단과학장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첨단무선 통신장비는 복잡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리와 통신기술의 진문화를 위하여 전파법으로 무선통신사 자격을 규정함.
126	주조사	주세법, 주조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주세법 제5조, 7의 규정에 의하여 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업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주조와 관련된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주류의 제조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이 필요하게 됨.
127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많은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로 원산지를 둔감시켜 농산물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등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128	농산물 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식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은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품질 및 공정거래에 대한 전문기양성 및 활용이 증대되었음.

<표 계속>

No	자격증명	관련법령	법의 목적	도입취지
129	영림기술자	산림법	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은 우리에게 목재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지능력에 의한 수원함양, 토사유출 및 붕괴방지에 의한 국토보존, 산림화 및 공업화로 야기되는 대기오염을 정화시켜주며 사람에게 필요한 공기를 제공함으로써 산림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자로 하여금 임야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소득사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함.
130	수산질병 관리자	기르는어업 육성법	이 법은 수산생물의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며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의 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식어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고밀도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수산생물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88년 이후 부정대 등 국내 대학에서 어병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500여명 이상 배출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 자격증이 없어 인력활용은 물론 학문 사정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음. 이에 따라 어병 전문가에 대한 본격적인 육성을 통해 양식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꾀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됨.
131	가축인공 수정사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수정은 우수한 품종의 종자확득, 일정량의 정액으로 다수를 수태시킬 수 있어 가축 개량이 용이하고, 자연교배보다 높은 수태율, 자연교배에 의한 각종 전염성질환 예방 등의 장점이 있음. 그러나 미숙한 가축인공수정 기술은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고 질병을 급속도로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함.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 (I) 설문조사

공통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의 경제적 효과 (I)’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 연구는 개별 부처 국가자격 가운데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국가자격 분야 기존 자격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격제도의 운영 성과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개별 국가자격 종목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별 부처 국가자격 분야와 관련된 자격·면허에 대한 귀하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의 고귀한 답변은 국가자격·면허 분야의 바람직한 자격정책 구축 및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에 부쳐질 것이며, 연구에 필요한 통계분석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 : (주) 텔서치
실사책임 : 김영희 실장
연락처 : (TEL) 031-8022-8001, (FAX) 02-6234-0205
이메일 : licence@telsearch.co.kr

I. 취득자 자격관련 정보

- 현재 소지한 자격·면허의 취득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
 ② 개업 및 창업
 ③ 승진
 ④ 소득증대
 ⑤ 자기개발
 ⑥ 인간 네트워크 형성 등
 ⑦ 기타
- 귀하는 현재 취득한 국가자격·면허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업(직무)내용에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거의 일치하지 않음
 ② 일치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일치
 ⑤ 매우 일치함
- 현재 취득한 자격의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활동(입직)을 위한 절대적 직업자격·면허증
 ② 경제활동(입직)을 위한 보조적 직업자격·면허증
 ③ 특정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증
 ④ 자기개발을 위한 교양자격
 ⑤ 기타_____

II. 자격 취득과정

- 정규교육시간을 포함한 자격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수험기간(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 자격취득을 위한 수험기간(시간) 가운데 정규교육과정(대학, 고등학교 등)을 제외한 학습시간의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예: 정규교육제의 학습시간의 비중(자격증 학원 연수(실무, 어학, 보수 등), 수강, 수험서 학습시간 등의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귀하는 국가자격·면허 취득을 위하여 정규교육비 외의 취득 비용(학원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교통비, 검정수수료, 연수비 등)은 모두 얼마입니까? _____만원
- 귀하는 국가자격·면허 취득을 위하여 정규교육(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등)외에 학원수강, 훈련기관, 각종센터(문화센터, 여성회관, 복지센터 등) 등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통신, 인터넷 포함)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만약, 다닌 적이 있었다면, 그 기관의 형태는?
 ① 집체훈련(직접 수강강좌) _____개월
 ② 인터넷·통신훈련 _____개월
- 귀하는 국가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수험학습과정 속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 등)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가장 도움이 된 학습은?
 ① 정규교육
 ② 실무연수(보수포함)
 ③ 학원 및 훈련기관
 ④ 자율학습
 ⑤ 기타

**III. 자격 취득의 경제적 효과
(고용효과, 임금효과)**

1. 현재 취득한 국가자격·면허와 관련된 직장
에 입사한 시점은 언제 입니까? 국가자격·면
허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변화된 내용 가운
데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나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과 조금
이라도 관련이 있는 직장에 입사를 하였다.
② 취득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자격과 관련된
창업을 하였다.
③ 취득 후 2년 이내에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
로 이직을 할 수 있었다.
④ 취득 후 2년 이내에 취득자격·면허와 관련성
이 높은 직무(부서이동 포함)를 부여 받았다.
⑤ 취득 후 2년 이내에 고용형태(예: 비정규직
→정규직)가 향상되었다.
⑥ 취득 후 2년 이내에 승진을 할 수 있었다.
⑦ 취득 후 자격·면허관련 수당을 지급받게 되
었다.
⑧ 취득 후 더 높은 근무평정을 받게 되었다.
⑨ 취득 후 창업한 회사의 매출액 등이 증가되
었다.
⑩ 취득으로 인하여 기타_____ (예: 학점
인정, 연수기회)와 같은 보상을 받았다.
2. 취득자격이 현재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
엇입니까?
① 취득자격·면허증은 취업의 절대적 필수
조건임.
② 취득자격·면허증은 개업을 위해서 필요
하였음.
③ 취득자격·면허증은 절대적 수단은 아니
었으며, 취업 시 우대(예: 가산점 등) 된
것 같음.
④ 취득자격·면허증이 취업 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⑤ 취득자격·면허증이 취업 시 거의 도움
이 되지 못하였음.
⑥ 해당사항 없음.
3. 취득자격이 지금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 하십니까?
① 거의 도움이 안된다.
② 도움이 안된다.
③ 보통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4. 향후 고용에 변화가 생길 경우, 취득자격·면허
를 활용하여 이직·전직하실 생각이십니까?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귀하는 취득한 자격·면허가 취득자의 노력
및 능력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소득, 임금 등의 금전적 측면)
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5-1. 만약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① 자격·면허 취득자의 과잉배출
② 취득자격·면허관련 지식·스킬의
전문성 및 현장성 부족
③ 취득자격관련 산업의 침체(경기
적 요인에 의한 산업수요 감소)
④ 취득자격·면허에 대한 우대(법적
우대, 가산점 등)요인 미흡
⑤ 취득자격과 유사 자격·면허가
존재
⑥ 현재 직무와 관련성이 낮음
⑦ 기타_____

IV. 자격검정의 적절성

1. 귀하가 취득한 자격·면허의 시험내용은 산
업현장의 수행직무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거의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1-1.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
엇입니까?
① 검정방법에 있어서 실기검정이 미흡하
다.
② 응시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③ 너무 어렵게 자격검정(부여)이 이루어
진다.
④ 너무 쉽게 자격검정(예: 무 시험자격
부여 등) 이루어진다.
⑤ 시험과목에 부적절한 시험과목이 있다.
⑥ 출제되는 문제에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⑦ 자격등급설정의 적절하지 못하다.
⑧ 전문자격·면허(예: 심사간호사, 아동간
호사 등)가 아닌 포괄적 자격·면허부
여(예: 간호사 등)이다.
⑨ 기타_____

V. 취득 국가자격·면허와 법적 규제성

1. 현재 취득한 국가자격·면허가 국민 및 국가 발전을 위한 공공적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거의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1-1.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②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엔 국가자격·면허의 수준이 너무 낮다.
- ③ 해당 국가자격·면허의 검정내용과 실제 직업(무) 수행간의 차이가 크다.
- ④ 면허보다는 자격으로 완화하여 운영한다.

2. 귀하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자격·면허취득자만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거의 타당하지 않다.
- ② 타당하지 않다.
- ③ 보통.
- ④ 타당하다.
- ⑤ 매우 타당 하다.

VI. 자격·면허취득 규모의 적절성

1. 현재 취득한 자격·면허소지자 가운데 경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많다.
- ③ 보통.
- ④ 없다.
- ⑤ 거의 없다.

2. 현재 취득한 자격·면허증이 없이 해당 직무(업)를 수행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습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많다.
- ③ 보통.
- ④ 없다.
- ⑤ 거의 없다.

3. 현재 취득한 자격·면허와 관련하여 공급된 인력규모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다.
- ②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많다.
- ③ 적절하다.
- ④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약간 부족하다.
- ⑤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

VII. 기타 인적사항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미만
- ② 20세~29세
- ③ 30세~39세
- ④ 40세~49세
- ⑤ 50세~59세
- ⑥ 6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2,3년제 대졸
- ④ 4년 대졸
- ⑤ (석/박사) 대학원졸

4. 귀하의 최종 학력에서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전공명: _____

5. 귀하는 귀하가 취득한 ○○(국가자격·면허)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신 총 기간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관련분야 일한 기간: _____년 _____개월

6. 귀하께서 현 직장에서 받으시는 월 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영업자/고용주분들은 월 평균 매출에서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후 월 평균 _____만원

⇒ **자영업자/고용주분들은 설문종료**

7. 귀하의 현 직장에서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근로자
- ③ 일용근로자

8. 귀하가 현 직장에 처음으로 입사한 년도와 월은 언제입니까? 현 직장을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 입사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_____년 _____월

9. 귀하가 재직 중인 사업체의 종사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직원 포함)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4명
- ② 5~9명
- ③ 10~29명
- ④ 30~99명
- ⑤ 100~299명
- ⑥ 300명 이상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I) :
전문가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공통

ID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의 경제적 효과(I)**’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로서 1997년 개원 이래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 및 직업연구, 진로교육 등에 관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기관은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자격의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자격의 경제적 효과(I))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 연구 목적은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 및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로서, 1차 년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사서 1급, 사서 2급, 준사서** 등의 개별부처 운영의 **국가자격 문제점 및 효과(경제적 효용성)**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합니다.

이에 연구대상 국가자격을 취득하신 귀하의 고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국가자격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향후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될 것입니다. 국가자격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분의 소중한 응답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에 필요한 통계분석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자격연구실
연구책임자: 김상호 박사

조사대행기관: 텔서치
실사책임: 이승천 사장
실사담당자: 김영희 이사
연락처: (TEL) 031-8022-8025, (FAX)
이메일: godpia@hanmail.net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 분석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조사대상 국가자격 기초 정보

※ 설문 응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검토 후 설문지 작성 바랍니다.

▣ 직무 내용 및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분		내 용	비고
자격 명		사회복지사	
직무내용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자격체제	종목	사회복지사	법 제11조
	등급	1급, 2급, 3급	
제도 운영 부서	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과	
자격취득 요건		※2002년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자격기준 해당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며, 2003년부터는 1급에 한해서 자격시험을 시행함. ○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3급 자격기준: 무시험 검정으로 관련 학과 졸업 및 학점 이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의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영 제2조 별표1
검정	시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영 제3조
	연간 검정횟수	1회 이상	
검 정 방 법		필기시험	영 제3조
검 정 과 목		○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	영 제3조 별표2
시험면제사항		없음	
합 격 기 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영 제3조

■ 직무 내용 및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분		내 용	비고
자격 명		보육교사	
직무내용		이제까지는 일정 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었음. 그러나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검증과 보충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자격으로 도입하기로 함.	
자격체제	종목	보육교사	법 제21조
	등급	1급, 2급, 3급	
제도운영 부서	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자격관리사무국	
자격취득 요건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며,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응시자격 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 21조 [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영 제17조
검정	시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연간 검정횟수	상시	
검정 과 목		없음	
검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별표 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영 제17조
시험면제사항		없음	
합격 기준		승급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영 제17조

■ 직무 내용 및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분	내 용		비고
자격 명	사서		
직무내용	사회가 급변할수록 수없이 많은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매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용을 돕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정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됨. 이에 공인된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고자 함.		
자격체계	종목	사서	법 제6조
	등급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제도운영 부 서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자격취득 요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도서관학 내지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거나 사서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검정	시행기관	한국도서관협회	
	연간 검정횟수	1회	
검 정 방 법	무시험 검정		
취 득 방 법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당해 학교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의 사서자격 교육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기관 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도서관협회 장에게 해당 자격증을 교부 신청함		규칙 제3조

A-4. ○○직무와 관련한 자격·면허 취득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A-5. ○○자격·면허 취득자의 직무전문성에 비추어 직업 수행자들의 소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A-6.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 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 ② 낮다.
- ③ 보통
- ④ 높다.
- ⑤ 매우 높다.

A-7. ○○직무와 관련한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 ② 낮다.
- ③ 보통
- ④ 높다.
- ⑤ 매우 높다.

B. 자격 취득의 경제적 효과 (고용효과, 임금효과)

B-1. 귀하는 ○○ 자격·면허가 취득자의 노력 및 능력, 직무전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소득, 임금 등의 금전적 측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수가 있는 경우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1급					2급					3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B-1-1. 만약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①, ②, ③ 응답)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급의 경우? () 2급의 경우? () 3급의 경우? ()

- ① 자격·면허 취득자의 과잉 배출
- ② 취득자격·면허관련 지식·스킬의 전문성 및 현장성 부족
- ③ 취득자격관련 산업의 침체(경기 적 요인에 의한 산업수요 감소)
- ④ 취득자격·면허에 대한 우대(법적 우대, 가산점 등)요인 미흡
- ⑤ 취득자격과 유사 자격·면허가 존재
- ⑥ 기타_____

B-2. 귀하는 ○○ 자격·면허취득이 관련 직무분야 고용(취업, 재취업,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수가 있는 경우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1급					2급					3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C. 자격검정(체계)의 적절성

C-1. 현재의 ○○ 자격·면허의 시험내용은 산업현장의 수행직무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시험 검정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과목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1급					2급					3급				
거의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거의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거의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대체로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각 급수별(1급, 2급, 3급)로 응답 바랍니다.

☞C-1-1.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①, ②, ③ 응답)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급의 경우? ()	2급의 경우? ()	3급의 경우? ()
-------------	-------------	-------------

- ① 검정방법에 있어서 실기검정이 미흡하다.
- ② 응시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 ③ 너무 어렵게 자격검정(부여)이 이루어진다.
- ④ 너무 쉽게 자격검정(예: 무 시험자격부여 등) 이루어진다.
- ⑤ 시험과목에 부적절한 과목이 있다.
- ⑥ 출제되는 문제에 현장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⑦ 자격등급설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 ⑧ 전문자격·면허(예: 심사간호사, 아동간호사 등)가 아닌 포괄적 자격·면허부여(예: 간호사 등)이다.
- ⑨ 기타_____

C-2. 현재의 ○○ 자격·면허의 직업(직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 취득의 난이도 정도**는 어디쯤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수가 있는 경우 중간 급수를 기준으로 표기 바랍니다.)

취득 난이도	←—————→									
	매우 쉬움									매우 어려움
	1	2	3	4	5	6	7	8	9	10
예시 자격·면허	운전면허				공인 증개사					변호사
답변란										

C-3. 귀하는 현재의 ○○국가자격·면허를 **검정체계(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급설정 등)**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급수별로 서술 바랍니다.)

1급 (의견 서술)	2급 (의견 서술)	3급 (의견 서술)

예시) 현장업무의 도움정도, 검정방법의 실기강화, 불필요한 검정과목 예시, 추가 검정과목, 응시자격 요건, 등급추가·통합 및 삭제, 무시험검정 폐지, 연수 후 발급, 사후관리 및 보수교육, 합격기준, 분야별 전문 자격제도 도입.	예시) 현장업무의 도움정도, 검정방법의 실기강화, 불필요한 검정과목 예시, 추가 검정과목, 응시자격 요건, 등급추가·통합 및 삭제, 연수 후 발급, 사후관리 및 보수교육, 합격기준, 분야별 전문 자격제도 도입, 무시험검정 폐지하고 시험검정 도입, 자격의 유효기한 명시, 자격부여절차 간소화, 유사자격과의 통합·변경·신설.	예시) 자격종목 폐지, 현장업무의 도움정도, 검정방법의 실기강화, 불필요한 검정과목 예시, 추가 검정과목, 응시자격 요건, 등급추가·통합 및 삭제, 무시험검정 폐지, 연수 후 발급, 사후관리 및 보수교육, 합격기준, 분야별 전문 자격제도 도입.
---	---	--

주: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자격취득자 조사에서 많이 거론된 문제점임.

D. 취득 국가자격 · 면허와 법적 규제성

D-1. 현재 ○○ 국가자격 · 면허가 국민 및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적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수가 있는 경우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1급					2급					3급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D-1-1. 만약 그렇지 않다고(①, ②, ③ 응답)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급의 경우? () 2급의 경우? () 3급의 경우? ()

- 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 ②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엔 국가자격 · 면허의 수준이 너무 낮다.
- ③ 해당 국가자격 · 면허의 검정내용과 실제 직업(직무) 수행간의 차이가 크다.
- ④ 면허보다는 자격으로 완화하여 운영한다.

D-2. 귀하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자격 · 면허취득자만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수가 있는 경우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1급					2급					3급				
거의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거의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거의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D-3. 현재 ○○ 자격·면허와 관련하여 공급된 인력규모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수가 있는 경우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1급					2급					3급				
산업수요보다			산업수요보다		산업수요보다			산업수요보다		산업수요보다			산업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 으로 많다	공급 이 약간 많다	적절 하다	공급이 약간 부족하 다	공급이 매우 부족하 다	공급이 절대적 으로 많다	공급 이 약간 많다	적절 하다	공급이 약간 부족하 다	공급이 매우 부족하 다	공급이 절대적 으로 많다	공급 이 약간 많다	적절 하다	공급이 약간 부족하 다	공급이 매우 부족하 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 자격 · 면허제도 일반

E-1. 귀하는 현재의 ○○국가자격 · 면허와 관련하여 동 **자격 · 면허제도가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수가 있는 경우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1급					2급					3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E-1-1. 위와 같이 응답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여 주십시오. (각 급수별로 서술하여 주시고 예시 외의 다른 이유는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1급 (의견 서술)	2급 (의견 서술)	3급 (의견 서술)
<p>예시) 자격소지 비경활자 다수 존재, 합격률 관리, 재취업 도움 정도, 비자격보유자의 진입 가능성, 자격검정의 현장성, 전문자격으로 종목 세분화, 민간자격으로 전환, 자격취득자 우대 · 활용법령, 실무검정 강화, 면허로 전환, 자격증으로 전환, 민간자격으로 전환, 취업도움정도, 승진도움정도, 현장 구인기관 자격취득자 평가 등, 무시험검정 폐지하고 시험검정 도입, 자격의 유효기한 명시, 자격부여 절차 간소화, 유사자격과의 통합 · 변경 · 신설 등</p>	<p>예시) 자격소지 비경활자 다수 존재, 합격률 관리, 재취업 도움 정도, 비자격보유자의 진입 가능성, 자격검정의 현장성, 전문자격으로 종목 세분화, 민간자격으로 전환, 합격률 관리, 자격취득자 우대 · 활용법령, 실무검정 강화, 면허로 전환, 자격증으로 전환, 민간자격으로 전환, 취업도움정도, 승진도움정도, 현장 구인기관 자격취득자 평가 등, 무시험검정 폐지하고 시험검정 도입, 자격의 유효기한 명시, 자격부여 절차 간소화, 유사자격과의 통합 · 변경 · 신설 등</p>	<p>예시) 자격소지 비경활자 다수 존재, 합격률 관리, 재취업 도움 정도, 비자격보유자의 진입 가능성, 자격검정의 현장성, 전문자격으로 종목 세분화, 민간자격으로 전환, 합격률 관리, 자격취득자 우대 · 활용법령, 실무검정 강화, 면허로 전환, 자격증으로 전환, 민간자격으로 전환, 취업도움정도, 승진도움정도, 현장 구인기관 자격취득자 평가 등, 무시험검정 폐지</p>

주: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자격취득자 조사에서 많이 거론된 문제점임.

E-2. 귀하는 현재의 ○○국가자격·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급수별로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1급 (의견 서술)	2급 (의견 서술)	3급 (의견 서술)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 (I) : 자격 취득자 서비스
의견조사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

공통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의 경제적 효과(I)’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로서 1997년 개원 이래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 및 직업연구, 진로교육 등에 관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기관은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자격의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자격의 경제적 효과(I))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 목적은 국가자격의 경제적 효과 및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로서, 1차 년도에는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보육교사 1급·2급·3급, 사서 1급·2급, 준사서 등의 직무 서비스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

이에 직무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국가자격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향후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될 것입니다. 국가자격의 발전을 위해 귀하의 소중한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에 필요한 통계분석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권 대 봉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자격연구실
연구책임자: 김상호 박사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B4. ○○직무와 관련한 자격·면허 취득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B5. ○○자격·면허의 직무전문성에 비추어 관련 직무 종사자들의 소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B6.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 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 ② 낮다.
- ③ 보통
- ④ 높다.
- ⑤ 매우 높다.

B7. ○○직무와 관련하여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
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 ② 낮다.

- ③ 보통
- ④ 높다.
- ⑤ 매우 높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강순희·김안국·박성재·김주섭·김승택·김덕호·정주연·박충렬(2003).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고영선 외(2009).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권혜자(2009). 『국가기술자격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 김상호(2009). 「자격·면허증의 취득자 우대·활용법령과 직업규제 - 국가 기술자격을 중심으로」, 『한국직업교육학회』~제28권 제3호 45~60쪽.
- _____(2010a). 「자격취득자의 소득 및 노동이동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2010b).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면허 취득의 소득효과」,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3권 제2호 111~134쪽.
- 김안국·강순희(2004).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취업·임금효과」, 『노동 경제논집』, 제27권 제1호 1~25쪽.
- 김영용(1997).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 김현수·김상호·박종성(2008).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효과」, 『공학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15~23쪽.
- 김현수·이동임·김덕기·최영호(2007). 『자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기성·김용민(1997). 「인적자본의 효율적 축적과 활용을 위한 제언」, 『산업관계연구』~제8권 31~60쪽.
- 박종성(2004). 「환경분야 자격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종성·이무춘(2005). 「환경분야 자격이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효과 분석」, 『환경교육』, 제18권 제1호 55~69쪽.
- 박천수(2010). 「대학생의 자격취득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직업

- 능력개발연구』. 제13권 제2호 91~110쪽.
- 서창교(2000). 『국가기술자격의 효과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소병희(1996). 『공공선택론의 이해와 정책분야의 응용』, 『한국정책학회보』 제5권 제2호 267~292쪽.
- 신해용(1994). 『공공선택의 재정경제학』, 세명서관.
- 이동임·김덕기(2001).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도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동임·김상호(2005). 『자격분류를 활용한 자격의 임금효과분석에 관한 시범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4권 제3호 23~44쪽.
- 이동임 외(2009). 『2008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병희(2003). 『자격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4호 25~48쪽.
- 이병희·김주섭·박성재·류장수(2004). 『자격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준(2006). 『자격증이 임금,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9권 제2호 145~169쪽.
- 어수봉 외(2010). 『2009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동일(2009). 『자격과 자격생태계, 그리고 직업집단의 이해: 국가기술자격의 도입, 1974-2004』, 『한국사회학』, 제43집 제2호 166~202쪽.
- 최유성 외(2009). 『국가의 검정금지종목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경제경영연구원(2008). 『2007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 한국경제경영연구원.
- 한국은행(2008). 『2005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Akerlof, George A.(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s of Economics*.

- Vol.84 No.3, pp. 488~500.
- Angrist, Joshua D. and Jonathan Guryan(2008), “Does Teacher Testing Raise Teacher Quality? Evidence from State Certification Requirement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27, pp. 483~503.
- Arlene Holen(1978), “The Economics of Dental Licensing”, Public Research Institute, pp. 1~61.
- Arrow, Kenneth(1971), 『Essays in the Theory of Risk-Bearing』, Chicago, Illinois. Markham Publishing Co.
- B. Peter Pashigian(1979), “Occupational Licensing and The Interstate Mobility of Professional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22 No.1, pp. 1~25.
- Becker, Gray S.(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70 No.5, pp. 8~49.
- Carl Shapiro(1986), “Investment, Moral Hazard, and Occupational Licensing”,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53 No.5, pp. 843~862.
- Carroll, L. Sidney & Gaston, Robert J.(1981), “Occupational Restrictions and the Quality of Service Received: Some Evidence”,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47 No.4, pp. 1959~1976.
- Cox, Carolyn & Foster, Susan(1990), 『The Costs and Benefits of Occupation Regulation』, Bureau of Economics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 Freeman, Ricard B.(1975), “Legal Cobwebs : A Recursive Model of the Market for New Lawyer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57 No.2, pp. 171~179.
- Friedman, Milton(196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TC Declaratory Ruling Concerning the Sale of Contact Lenses(2002), 『State of Connecticut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onnecticut Board of Examiners for Opticians』, The staff of the Office of Policy Planning and the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Gary M. Andersona, Dennis Halcoussisa, Linda Johnston, M.D.b & Anton D. Lowenberg(2000), “Regulatory barriers to entry in the healthcare industry: the case of alternative medicine”,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40, pp. 485~502.

Grossman, Michael(1972), “The Demand for Health: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endricks, Wallace(1977), “Regulation and Labor earnings”,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8 No.2, pp. 483~496.

John E. & Kwoka, Jr.(1984), “Advertising and the Price and Quality of Optometric Servic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4 No.1, pp. 211~216.

John R. Schroeter, Scott L. Smith & Steven R. Cox(1987), “Advertising and Competition in Routine Legal Service Marke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36 No.1, pp. 49~60.

Kleiner Morris M.(2000), “Occupational Licens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4 No.4, pp. 189~202.

_____ (2006), 『Licensing Occupations : Ensuring Quality or Restricting Competition?』, Upjohn.

Kleiner Morris M. & Robert S. Gay, Karen Greene(1982), “Barriers to Labor Migration: The Case of Occupational Licensing”,

- Industrial Relations*, Vol.21 No.3, pp. 383~391.
- Kleiner Morris M. & Daniel L. Petree(1985), “Unionism and Licensing of Public School Teachers: Impact on Wages and Educational Outpu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05-322.
- Kleiner Morris M. & Kudrle, Robert T.(2000), “Does Regulation Affect Economic Outcomes? The Case of Dentistr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43 No.2, pp. 547~582.
- Kleiner Morris M. & Ham, Hwikwon(2005), “Regulation Occupations: Does Occupational Licensing Increase Earnings and Employment Growth?”, NBER Working Paper.
- Kleiner Morris M. & Krueger B. Alan(2008). “The Prevalence and Effects of Occupational Licensing”. *NBER working paper*.
- Lee Benham(1972), “The Effect of Advertising on The Price of Eyeglasses”, Vol.15 No.2, pp. 337~352.
- Lee Benham & Alexandra Benham(1975), “Regulating Through The Professions: A Perspective on Information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18 No.2, pp. 421~447.
- Maurizi, Alex(1974), “Occupational Licensing and Public Interes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2 No.2, pp. 399~413.
- Mincer, Jacob(1962), “On-the-job training: Costs, Returns and Some Implic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Moore, Willam J. & Pearce, Douglas K. & Wilson, Mark R.(1981), “The Regulation of Occupations and The Earnings of Wonme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6 No.3, pp. 366~383.
- Muzondo, Timothy R. & Pazderka, Bohumir(1980), “Occupational Licensing and Professional Incomes in Canada”,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13 No.4, pp. 659~667.

- Richard J. & Cebula(1998), "Does Lawyer Advertising Adversely Influence The Image of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An Alternative Perspective And New Emprical Eviden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27 No.2, pp. 503~516.
- Robert J. Thornton & Andrew R. Weintraub(1979), "Licensing in The Barbering Profess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32 No.2, pp. 242~249.
- Rottenberg, Simon(1982), "Occupational Licensing and Regulat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36 No.1.
- Shepard, Lawrence(1978), "Licensing Restrictions and the Cost of Dental Car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21 No.1, pp. 187~201.
- Sidney L. Carroll & Robert J. Gaston(1981), "Occupational Restrictions and the Quality of Service Received: Some Evidence", *Wouthern Economic Journal*, Vol.47 No.4, pp. 959~976.
- Sjaastad, L.A.(1962), "The Cost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Spence, Michael(1973), "Job Market Signa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Steven R. Cox, Allan C. Deserpa & William C. Canby, Jr.(1982), "Consumer Information and The Pricing of Legal Services",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30 No.3, pp. 305~318.
- Stigler, G. J.(1961),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_____ (1962), "Information in the Labor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_____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anagement Science.

Summers, Adam B.(2007), “Occupational Licensing: Ranking the States and Exploring Alternatives,” Reason Foundation.

Timothy R. Muzondo & Bohumir Pazderka(1980), “Occupational Licensing and Professional Incomes in Canada”,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 Revue canadienne d’Economie*, Vol.13 No.4, pp. 659~667.

西村 公子・松本 真作・鎌倉 哲史・吉田 修・佐藤 舞・岩脇 千裕・阿形 健司・松本 純平(2010). 『我が国における職業に関する資格の分析—Web免許資格調査から— (第1分冊)』. 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121-1.

_____ (2010). 『我が国における職業に関する資格の分析—Web免許資格調査から— (第2分冊)』. 労働政策研究報告書 No.121-2.

阿形 健司(1998). 『職業資格の効果分析の試み』. 教育社会学研究第63集: 177~197.

_____ (2010). 『職業資格の効用をどう捉えるか』. 日本労働研究雑誌 特集・プロフェッショナルの労働市場. No.594, pp. 20~27.

■ 저자 약력

- 김상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박종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김상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자격의 경제적 효과 (I)

· 발행연월일	2010년 12월 30일 인쇄 2010년 12월 31일 발행
· 발행인	권대봉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인쇄처	(주)범신사 (02)720-9786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144-9 94320 978-89-6355-146-3 (세트)

